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440-11

2016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간사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6년도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무수단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하였고, 사이버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안보 지킴이'로서 군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방위사업 체질 개선 등 국방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인권 존중과 기강이 확립된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독자적인 국방역량 강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민정경찰 운용을 통해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큰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출범시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전술훈련 위주 부대 훈련과 과학화훈련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군대 기풍을 정착시켰습니다. 아울러 군사법제도 개선, 병영시설 현대화, 군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장병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병영문화의 기틀을 만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방규제도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관료적인 풍토와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정예강군 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 등 비핵화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은 물론 사이버공격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관계를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문화 분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하여 한국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병 의식개혁을 통한 병영문화 혁신,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환경 조성, 군수혁신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경영을 실현하고 국민 편익을 존중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가 어려운 때일수록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의연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진력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을 자행한다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2016 국방백서」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위협 변화, 지난 4년간의 국방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양한 국방관련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한 민 구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2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18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32
제2절 국방정책 34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40
제2절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45
제3절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49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53
제5절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6
제6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 65
제7절 실전적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72

제4장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86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94
제3절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101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109
제5절 국방정보화 발전 118
제6절 국방군수혁신 추진 121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30
제2절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136
제3절 해외파병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150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제1절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164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168

제7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제1절 병영문화 혁신 174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179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187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192
제5절 국민 편익 증진 197

부록

특별부록

1.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210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213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219
4.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222
5.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5
6.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28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32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34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35
4. 남북 군사력 현황 236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37
6.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38
7.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39
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0
9. 남북 군사관계 일지 24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1
1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3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54
1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5
14.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9
15.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63
16.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64
17.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6
18. 병사 봉급 추이 267
19.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68
20. 국방기구도 269
21.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271
22.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3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2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18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2016년 4월)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1] 개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인공도서 건설 등을 추진하며 해양 관할권 강화를 지속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2])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필리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3])을 포함하여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역내 안보 위협을 심화시켰다.

유럽 지역에서는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들이 난민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유럽으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셍겐(Schengen) 협정」[4]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추구하고자 한 통합의 기본정신이 도전을 받게

1)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하였으며, 미·중 상호 간 핵심이익이나 전략적 중요한 사안은 상호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2)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4)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1985년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5개국이 룩셈부르크 셍겐에서 체결하였으며,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발효되었음.

되었다. 유럽연합은 2015년 9월 난민 12만 명의 28개국 분산 수용을 포함한 난민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10월에는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리비아,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 난민 발생국에 대한 경제 및 개발 지원 추진에 합의하는 등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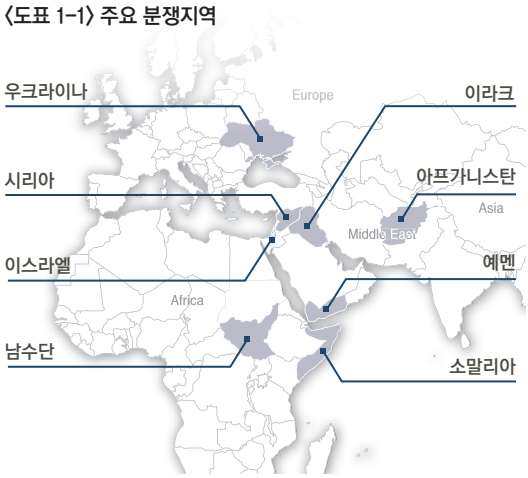
그러나 프랑스, 벨기에, 터키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의 유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유럽 국가들도 통제를 강화하는 등 유럽은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2015년 2월 제2차 민스크 휴전 합의[5]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16년 9월 우크라이나 정부군, 반군, 러시아간 '3자 접촉그룹' 회의를 통해 '교전 완전중단 시범지역'을 설치하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중동 지역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종파 간 갈등, 국가 공권력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과 반군 세력 간에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ISIL[6] 간에 모술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란은 2015년 7월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7]과 핵 합의를 통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걸프 지역 국가들과 종파적·정치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뿌리 깊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 종족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남수단에서는 2016년 7월 연립정부 내 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유혈사태로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말리 등에서는 보코하람, 알샤바브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표 1-1〉 주요 분쟁지역



5)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반군 대표 및 OSCE(유럽안보협력기구)가 민스크에서 체결한 정전 합의로서 두 차례(2014년 9월, 2015년 2월)에 걸쳐 체결되었음.

6)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7) P5+1은 Permanent 5+1의 약어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과 독일을 의미함.

2.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 증대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자행하는 테러 행위는 국제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ISIL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2016년 6월 터키 이스탄불 등지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포섭하고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중동을 넘어 유럽·동남아·아프리카까지 세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공격 위협 역시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의 하나이다. 민간기관은 물론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14년 11월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및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 등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킨 대표적 사례로서 이후 각국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도 국제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 2015년에는 메르스가 26개 국가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감염병을 중요한 안보 위협[8]으로 인식하고 대응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4월 네팔과 2016년 4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10월 아이티를 강타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사례는 재난 발생 국가만의 대처 능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와 재건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9]) 등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8) 2014년 9월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2177호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전례 없는 에볼라 발병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9)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JCPOA[10])에 합의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11]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5차 핵실험에 대해 2016년 11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21호[12]를 채택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국제 공조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5년 11월 ISIL 격퇴 결의안 제2249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ISIL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모집과 테러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고 각국 정부는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4년 미국 주도로 결성된 반(反) ISIL국제연대[13]는 ISIL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SIL 점령지 공습, 이라크·시리아 난민 지원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이 주도가 된 대테러 군사동맹이 결성되었다.[14]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2016년 제5차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사이버위협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과 규범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간 협의체인 국제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FIRST[15])를 개최하여 국제 인터넷 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16]) 고위급 회의에서는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이 국제정치·경제·사회·안보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글로벌 재난경보·조정 시스템(GDACS[17])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정보, 재난 구호 현황과 계획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18])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19]) 등 지역 다자 안보협의체에서도 재난구호 방안을 논의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10)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11) 핵·미사일 개발 관련 교육·훈련 금지,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자 차단, 무기생산 가능 물품 거래 불허,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의무, 북한 관련 공적·사적 금융 거래금지 등과 함께 대북제재 결의에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고강도 대북제재임.

12) 기존 결의의 틈새(loophole)였던 예외조항을 대폭줄여 석탄 등 민생 목적의 교역범위를 축소하고, 외자조달 경로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및 계좌를 제한하는 등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임.

13) 2016년 기준 동 연대에 총 62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 중(군사작전 동참국 :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프랑스 등 / 군수물자 지원국 : 독일, 이탈리아 등 / 인도적 지원국 : 한국, 일본 등)임.

14)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14개국, 이집트·모로코 등 아프리카 16개국,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4개국(총 34개국)이 참여하였음.

15) Forum for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16)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17) Global Disaster Alert and Coordination System

18) ASEAN Regional Forum

19)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 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역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적극적 평화주의'[20]를 내세우며 방위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하여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주변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21]) 창설, 크림반도 병합 등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

20)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013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자위대가 적극 참여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21) Eurasia Economic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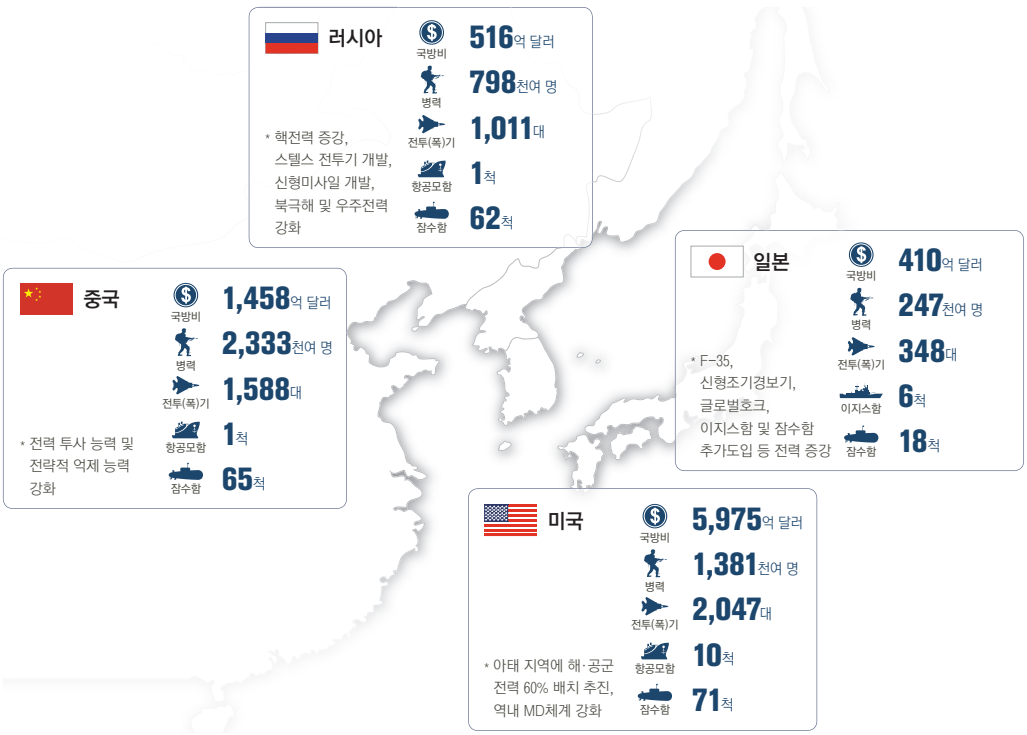
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동부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극동지역개발 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등 역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는 당분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하는 것이 역내 안보질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가 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 2.), 「일본 방위백서」(2016) 등 관련자료 종합

| 미국 |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22] 과 「국가군사전략(NMS)」[23]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24])」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 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25]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

22)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보 관련 최상위 문서(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23) 미 합참이 작성하는 최상위 군사지침 문서(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

24)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5)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26])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27])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28])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29])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30]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

26) Long Range Strike Bomber
27) 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28)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29) Peace Keeping Operation
30) 작전사급 부대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함.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 중국 |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31]를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强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32]라는 신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33])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 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

31) '소강(小康)'은 중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 다음 단계를 말함.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의미함.

32)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제4차 아시아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제시하였음.

33) Ju Lang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 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 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 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 15,000km에 달하는 DF-5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34])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 정보와 감시 정찰, 위성항법, 기상, 우주탐사 등 우주 강국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운반용 로켓 창정 7호와 창정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2018년에는 달 탐사위성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 러시아 |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5])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

34) 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35)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 내부 정세 |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 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 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최용해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제7차 노동당대회(2016년 5월)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300밀리 방사포,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증강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무인기 시험비행,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의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경제관리개

선조치'[36]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 하에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대규모 김정은 치적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소진하여 민생·경제분야 개선은 부진하였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37] 등 연이은 노력동원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상교육과 공안기관의 감시 강화 등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 대남 정책 |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38]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39]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36)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협동농장, 협동공장 등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가 핵심정책임.

37) 북한이 주민 노력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도전 구호

38) 상호비방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비핵화를 주장

39)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NLL : Northern Limit Line)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40])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41]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42]/독수리(FE) 훈련[43]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44]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

40) Demilitarized Zone

41) 북한의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8월 20일 두 차례 비무장지대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이루어지자 남북한은 무박 3일 43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사태의 종식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및 향후 협상에 관한 6개항에 합의하고 8월 25일 공동보도문 발표

42)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 간 연례 군사연습(KR : Key Resolve)

43)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FE : Foal Eagle)

44)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나, 모형 또는 실물 여부 판단은 제한 됨.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 대외 정책 |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45]와 제2094호[46]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47]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48])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45)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제재 강화, 추가도발 시 중대조치 표명(트리거 조항), 제재대상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46)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과 금융자산의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임.

47) 2012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미·북 고위급회담 합의로서,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톤의 영양식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48) Exclusive Economic Zone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49]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50]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 군사전략 |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51]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

49)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러시아 극동의 국경지역인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보수, 나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함.

50) 2014년 5월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재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기로 합의하였음.

51) 북한헌법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핵·WMD[52],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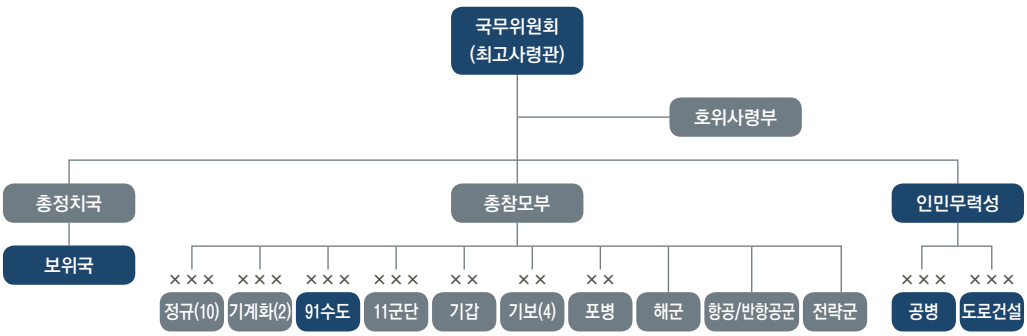
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 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지휘구조 |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을 두고 군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은 총정치국이 관장하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 1-3〉과 같다.

〈도표 1-3〉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국무위원회 : 구(舊) 국방위원회, 인민무력성 : 구(舊) 인민무력부, 보위국 : 구(舊) 보위사령부, 91수도방어군단 : 구(舊) 평양방어사령부
×××: 군단, ××: 사단

52) 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

3. 군사 능력

| 육군 |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민보안성 7·8총국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53] 구축을 통해 C4I[54]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며 최근 개발이 완료된 300밀리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밀리 견인방사포 등 포병 전력을 증강하였으며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와 특수전 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 및 주변 지역과 전선 지역에 대한 도발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는 천마호 및 선군호 전차를 배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과 비무장지대를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장비 현황



전 차
4,300여 대



장 갑 차
2,500여 대



야 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300밀리방사포
10여 문

53) 지휘관의 결심 및 타격을 지원하는 체계(GS-2000)

54)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 해군 |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55])을 배치하여 수상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5〉와 같다.

〈도표 1-5〉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함정 현황



전투함정
43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 공군 | 기존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3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부 기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SAM[56])과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의 추가적

55) Very Slender Vessel

56) Surface to Air Missile

배치 조정 없이 남한의 감시·정찰자산과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는 SA-2[57]와 SA-5[58]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59]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지상관제요격 기지, 조기경보 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는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포함)
290여 대

| 전략군 | 북한의 전략로케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비전력 |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57) 최대사거리 56km의 중·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2 : Surface to air-2)

58) SA-2 보완용으로 개발된 최대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5 : Surface to air-5)

59) 최대사거리 25km의 중거리, 저·중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 체계(SA-3 : Surface to air-3)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도표 1-7〉 북한 예비전력 현황

구 분	병 력	비 고
계	762만여 명	
교도대	60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17~50세 남자, 17~30세 미혼여자)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 전략무기 |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60])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60) Highly Enriched Uran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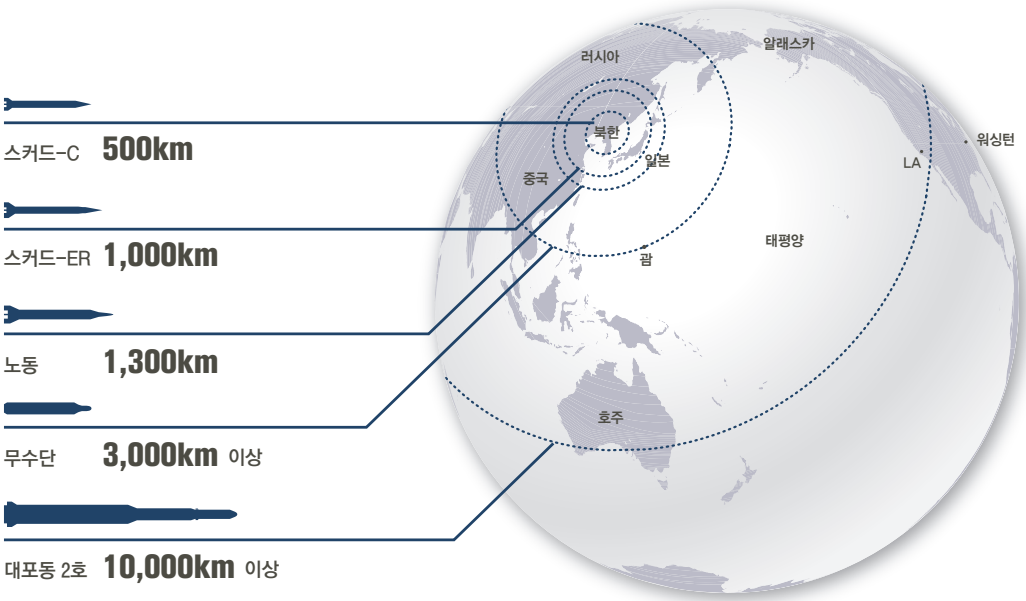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였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도표 1-8〉과 같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도표 1-8〉 북한의 미사일 종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쟁지속능력 |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그 규모는 300여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32
제2절 국방정책 34



2016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2016년 11월)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테러,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가면서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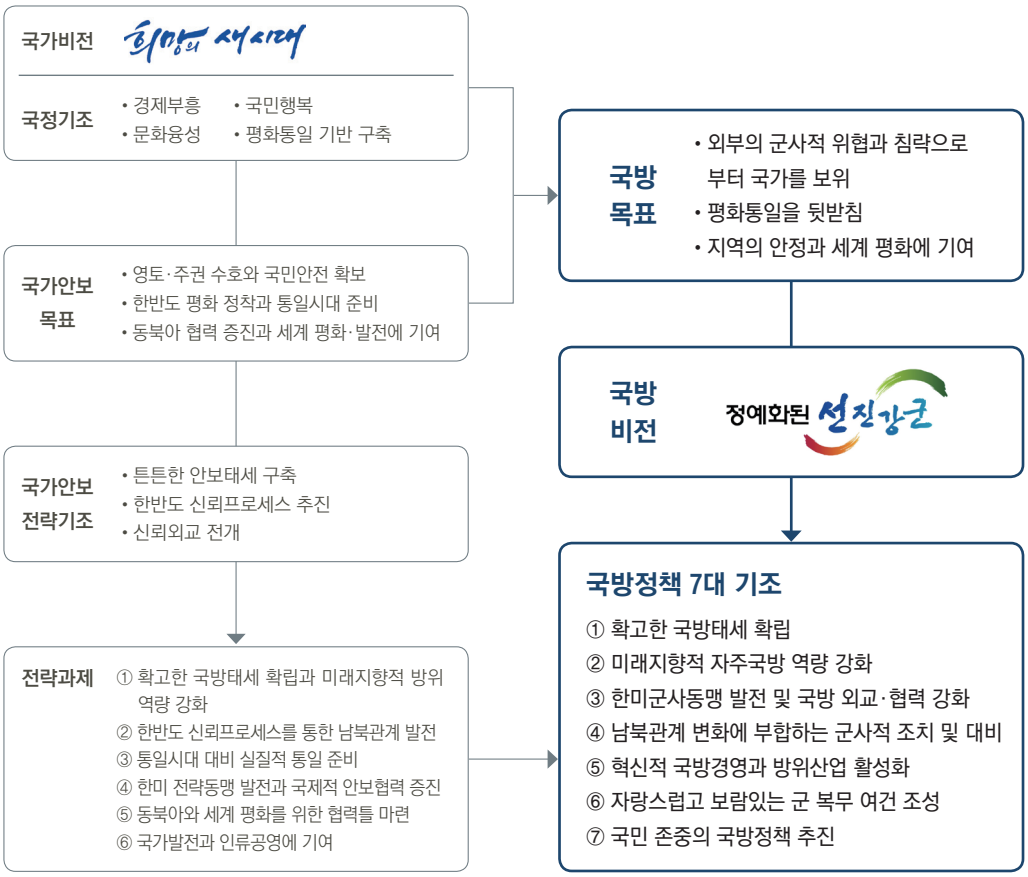
| 국방비전 |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

1)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도표 2-1〉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2]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3]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

2) 북핵·WMD 위협으로 부터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한미동맹의 억제전략

3) 1축 킬체인(Kill Chain), 2축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3축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

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40
제2절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45
제3절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49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53
제5절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6
제6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 65
제7절 실전적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72



육군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훈련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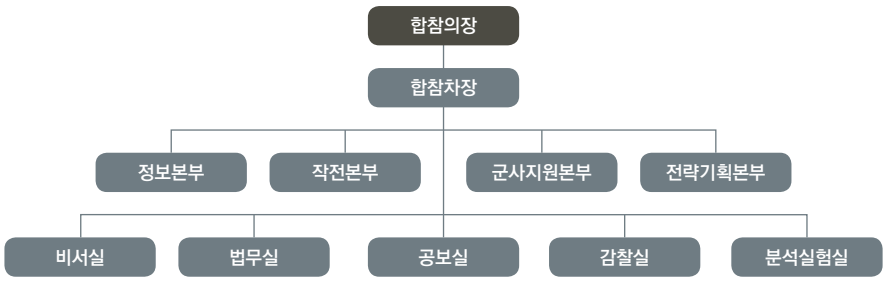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 및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1]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1)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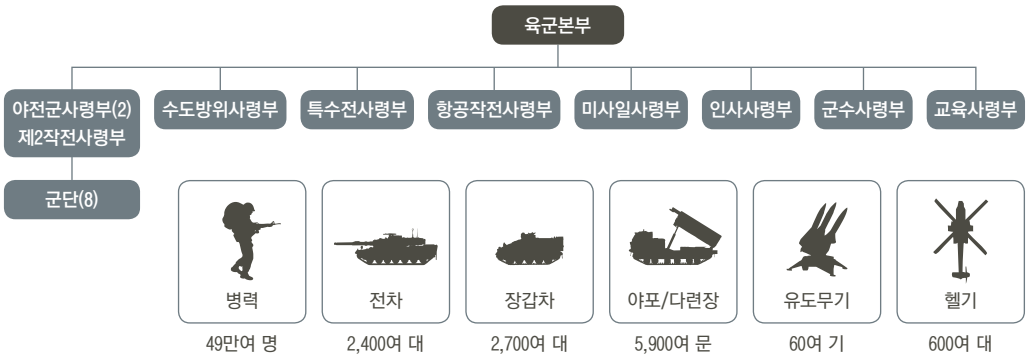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군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 육군 |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전차, 장갑차, 야포/다련장은 해병대 전력 포함

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인사·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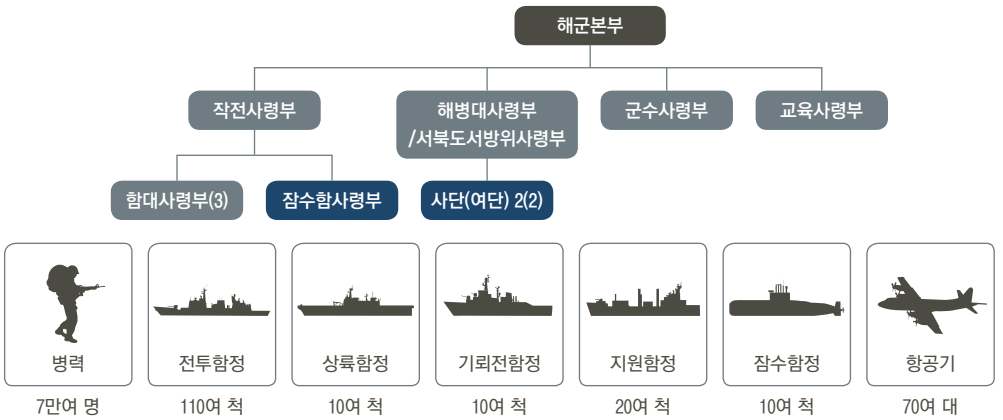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전력, 다련장로켓[2] 등의 대화력전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2)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시스템으로 다량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무기

육군

| 해군 |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 잠수함사령부 : 2015. 2. 1. 부 창설, 해병대 9여단 : 2015. 12. 1. 부 창설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3], 대잠작전[4], 기뢰작전[5],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을 운용한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와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함(KSS-III), 이지스급 구축함, 구축함(KDDX), 호위함(FFX), 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어 수행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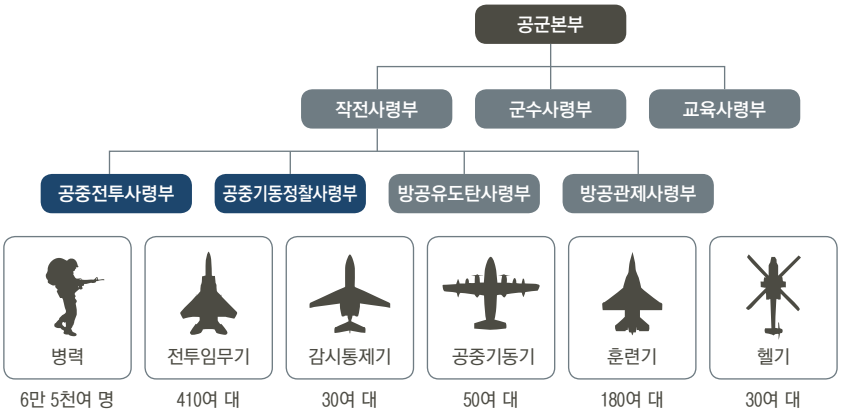
| 공군 |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

3)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4)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5) 기뢰를 사용하여 적 해군 세력을 차단 또는 무력화하거나 적의 기뢰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

해군 해병대

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공중전투사령부 : 2016. 1. 1.부 창설, 공중기동정찰사령부 : 2016. 1. 1.부 창설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6], 항공차단작전[7], 근접항공지원작전[8] 등을 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여 작전사령부 중심으로 항공작전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전방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F-X, 한국형전투기(KF-X)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

6)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항공 우주력과 방공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CA : Counter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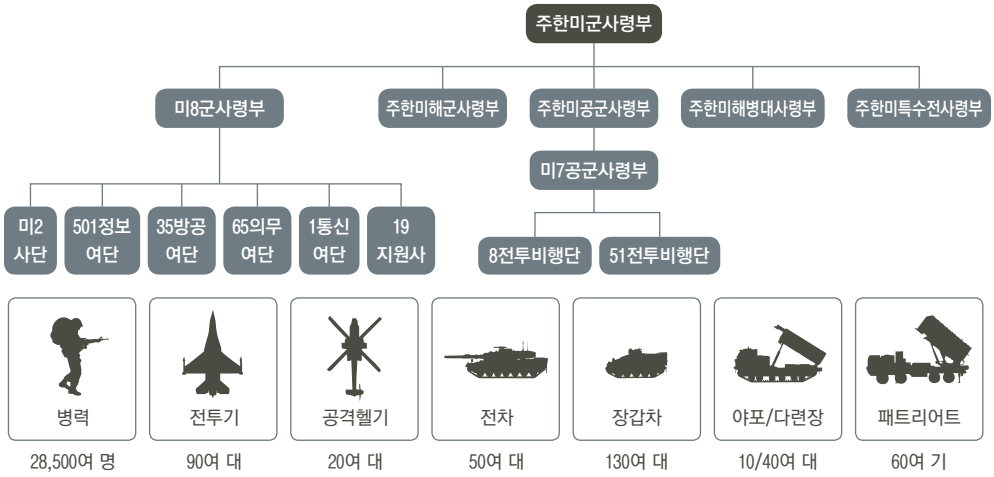
7) 적의 군사 잠재력이 우리 육·해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를 차단, 교란, 지연, 파괴하여 적 전력의 증원, 재보급, 기동성을 제한하는 작전(AI : Air Interdiction)

8)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공격, 반격 또는 방어 작전을 지원하여 군사목표 달성과 생존을 보장하는 작전(CAS : Close Air Support)

공군

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9]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10]'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9) 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10)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제2절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미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연합위기관리 연습을 강화하고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감시·결심·타격 체계를 최적화하고 있다.

1. 조기 경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체계 발전

|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파하기 위해 신호·영상자산과 인공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적 도발 위협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각종 징후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내외 유관기관의 모든 첩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당 작전부대에 적시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위기관리체계 발전 |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체계와 한미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15년 5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기초로 안보분야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작전계획과 예규도 발전시켰다. 유관 부처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안보전략게임에서 주요 위기 상황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수준 평가 및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등 상시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위기관리 연습 강화, 지휘통제통신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 연합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접적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북한은 접적 지·해·공역에서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튼튼한 한미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접적지역 일대에 열영상 장비, 근거리 감시카메라, CCTV 등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GOP 전 지역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대피호와 방호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다련장로켓을 배치하여 적의 화력도발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였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불가침부속합의서(1992)」를 통해 북방한계선(NLL[11]) 관련 사항에 합의한 바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해 북방수역과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고강도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화력도발과 기습강점에 대비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무인항공기, 단거리 지대지 유도무기, 해상작전 헬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등 감시·정찰·타격전력을 지속 보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북도서의 방호력을 보강하고 요새화를 추진하여 북한의 서북도서 침범과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서북도서 대비태세 점검(2016년 9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11) Northern Limit Line

독도

중부전선 최전선 비무장지대 경계근무

최전방 철책 155마일 오늘도 이상없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연평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도표 3-6〉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영역



*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제 3 장

우리 군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중감시 및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와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탐지·식별·추적·타격 절차 등 방공작전 수행체계를 보완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감시·결심·타격체계를 최적화하고, 핵심전력을 보강할 것이다.

3.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수도권과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 테러, 사이버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자산을 운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안 복합감시체계를 운용하여 적의 해상 침투에 대비하고 정찰·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C4I[12]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연동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후방지역의 침투와 테러 등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적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전사와 해병대에 신속대응부대를 지정하는 등 초기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북한의 GPS[13] 전파교란에 대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상호협업체계를 갖추고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등 민·관·군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합참에 사이버작전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였다.

우리 군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합참 테러대비 종합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관·군 협조 하 북한의 GPS 전파교란 및 사이버공격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2)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13) Global Positioning System

제3절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병력 및 물자 동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병력 부족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조달·정비지원·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민·관·군과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1. 전시 작전수행 능력 향상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주요 전력의 대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전력의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과 속전속결전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유사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전력과 합동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공간 등 전 영역에서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하여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마비시켜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2.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태세 확립 | 전쟁 개시 전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동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적의 침투나 테러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대를 선별적으로 부분동원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병력·장비·물자가 패키지화된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시 보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권역화 동원지정제도[14]는 2013년에 시험적용한 후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적의 병력동원 지정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며, 수도권 동원자원 수송계획도 작전환경과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보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육군의 전시 동원전력 강화를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군의 개전 초기 작전 긴요부대에 대한 동원전력을 정예화하여 전방 작전수행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사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를 위해 2014년에 시범 도입한 비상근 복무제도[15]는 2020년까지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여 상비전력 감축에 대비할 계획이다.

군의 작전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 병무청의 동원지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성능 개선과 타 정부부처의 정보체계 연동을 통해 전·평시 동원업무 관리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충무 실제훈련과 동원모의연습을 통해 평시 동원집행실상을 분석, 보완하는 등 전시 동원의 실효성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국민안전처 및 정부부처와 상호 동원소요를 검증하여 전시 군수물자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정부 합동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 군과 자원 동원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예비군은 국가 총력전체제 확립을 위해 편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평시 지역안보 및 재난에 대비하면서 전시 현역부대의 작전 수요를 대비하는 중요한 전력이다. 예비군은 「예비군법」과 「군인사법」 등에 근거하여 편성되며, 전시 현역부대 확장에 동원되거나 전·평시 지역 및 직장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6년 9월 기준 예비군의 규모는 275만 여 명이며, 전국 단위로 여성 예비군과 특전예비군 등 지원예비군[16] 8천여 명이 편성되어 후방지역 작전에 기여하고 있다.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여성 예비군훈련(2015년 9월)

예비군은 행정구역이나 직장 단위로 제대가

14) 전국을 두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동원자원을 관리하고 현역 시 복무한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지정하는 제도

15)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편성된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비상근으로 연 20일 간 복무하며 부대훈련 동참, 동원자원관리 등으로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태세 확립을 위한 제도

16) 「예비군법」 제3조에 의거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비군에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인원

편성되며 복무 연차와 전시 임무를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된다. 예비군 관리의 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지만 지역책임 부대에 위임되어 지역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표준화된 지역 예비군중대(읍·면·동)를 편성하고, 작전 운용과 자원 관리를 고려하여 전·평시 운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상비전력 감축의 대체전력으로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편의 차원에서 국가 경제와 생업보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향방작전 수행능력 제고 | 지역 및 직장방호를 위해 예비군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단위 예비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예비전력관리기구[17]를 운용하고 있다. 행정구역단위 예비군부대는 시·군에 예비군지역대를, 읍·동에 예비군 중대를 운용하며 중대 예하에는 분·소대를 편성하고 있다.

예비군의 전투장비와 물자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현역 장비를 인수하거나 신형 물자를 획득하여 2020년까지 교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전·평시 예비군의 작전 지속지원 여건이 보장되도록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3. 전쟁지속능력 확충

전쟁지속능력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 장비, 물자 등 유형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요와 능력은 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DRIS)[18]를 통해 매년 판단되며, 소요대비 부족한 능력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는 전쟁 가정년도 1년간의 군수지원소요와 능력을 산정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국방동원운영계획서」, 「국방전시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시 소요와 현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획득·유지하여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

17) 예비전력을 관리·운영할 예비군지역대, 예비군중대, 예비군훈련대 등 예비군 관리/운영과 관련된 조직

18) 전쟁 가정연도 1년간의 군수지원소요와 능력(현재 보유량 및 전시 가용량)을 산정하는 정보체계(DRIS : Defense Requirement Information System)

성과기반군수지원(PBL)[19]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장비가동률을 높이고, 야전 부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군을 통합한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평시 장비운영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을 적기에 확보하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리부속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쟁 수행 시 유도탄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도탄 관리지시」를 제정하여 유도탄을 정비하고 저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전시 탄약지원 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유사시 해외조달 탄약의 즉각적인 사용 보장을 위해 우방국과의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

19) 군은 목표가동률 등 성과측정지표를 제시하고 계약업체는 정비 및 수리부속 지원을 전담 수행하여, 그 수행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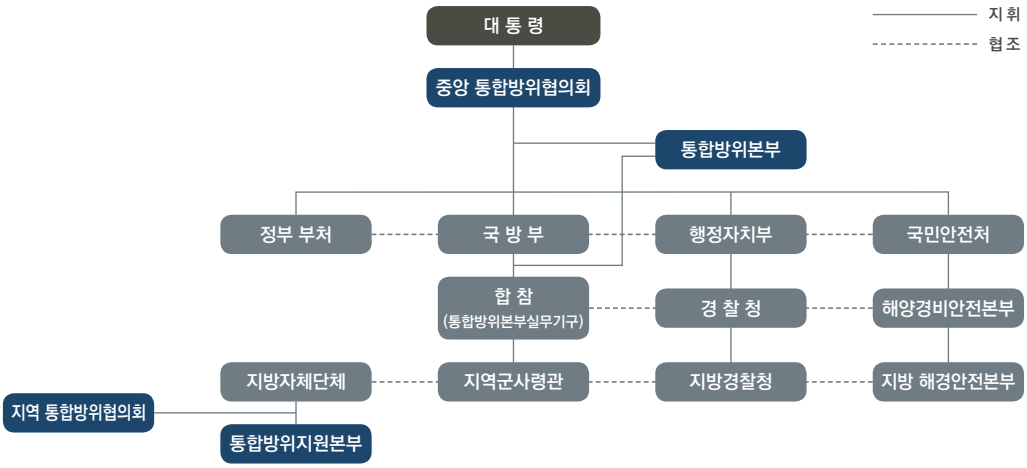
우리 군은 증대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20]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 통합방위기구 운용

정부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는 〈도표 3-7〉과 같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국가차원의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도표 3-7〉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



20)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군, 예비군, 경찰, 민방위대, 국가중요시설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업무 주관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며, 통합방위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태세의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분석과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과 계획 수립, 시행의 조정·통제 등을 수행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230여 개의 시·군·구에 설치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통합방위작전 시 지원 대책 수립,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2016년 2월)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두고 통합방위 조례와 예규 작성,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민·관·군·경 모든 국가방위요소의 육성과 지원 등을 수행한다.

2. 통합방위태세 강화

점증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통합대응능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통합방위, 재난대응, 테러대응체계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법령, 작전수행, 조직·시설, 자원운용, 연습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평시 적의 다양한 침투·도발에 대비하고, 전시에는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후방지역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후방지역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용, 군·경 합동작전 수행,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방호 등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숙달하고 통합방위 발전을 위한 검토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작전수행 분야에서는 군·경 초동조치팀의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테러 대응태세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방호훈련과 현장점검 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생물위협 대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지자체별 분산된 위기관리조직과 각종 유형별 상황실을 통합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감시 장비, 통합상황실,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경계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통합방호 계획도 보완하였다.

자원운용 측면에서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통합방위 C4I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시 국민

의 생활안전과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제5절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우리 군은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 및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미사일 대응작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화학·생물무기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전략 발전

|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 한미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21]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22] 제공 공약을 천명했으며,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23]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013년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부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201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에서 발전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동맹 능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1) 한미 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관련 최고위급 협의체(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22) 핵전력으로 핵보유국의 위협으로부터 비핵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확장억제 수단의 하나임.

23)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억제능력으로 제공하는 일반적인 개념임.

동맹국이 보유하는 억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24]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25]를 통합하여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26])'를 출범시켰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27])와 함께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되며, 확장억제 수단의 운용 연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에서는 북핵·WMD 위협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016년 10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28])'의 틀속에서 한미 간 고위급 정책·전략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주기적인 정책 협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연합연습 등을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다.

| 동맹의 미사일대응 작전개념 수립·발전 |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하기 위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수행개념(4D 작전개념)[29]으로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에 합의하였다.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러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한미는 4D 이행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발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동맹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면서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4)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설치한 한미 협의체(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25)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전력발전소요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CMCC :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26)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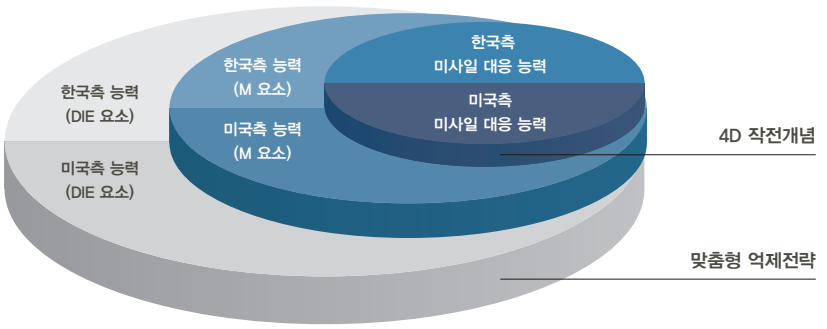
27)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28)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29) 탐지(Detect) :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운용으로 교란·파괴·방어 지원
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시설 타격
파괴(Destroy) :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동발사대(TEL) 직접적 타격
방어(Defend) : 우리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도표 3-8〉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개념



* DIE :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M : 군사(Military)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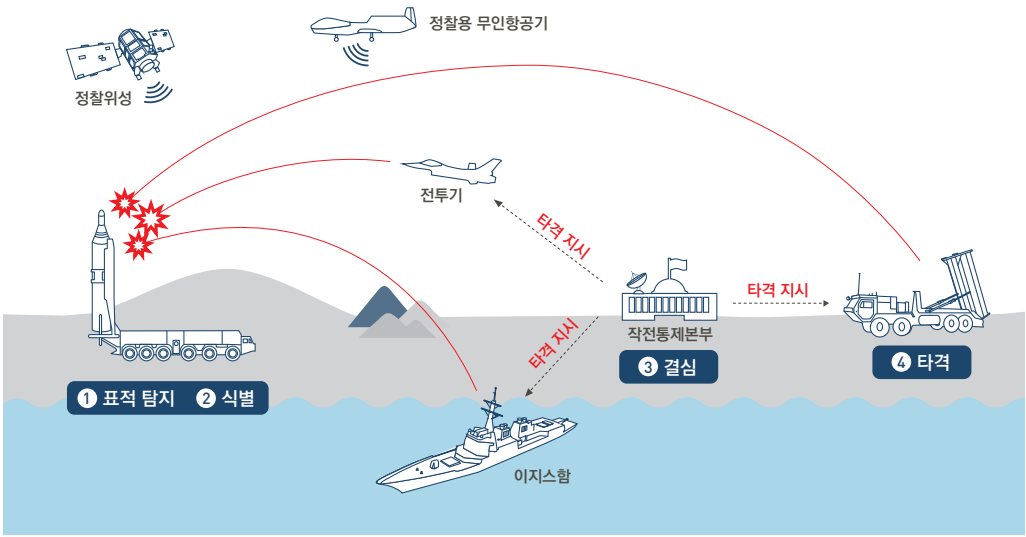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를 말한다.

현재 지상·해상·수중에서 발사되는 탄도·순항 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탄 및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와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감시·식별·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중거리 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JDAM[30]),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잠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의 성능 향상과 전술함대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해상 기반 타격능력도 증강할 것이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을 장착한 F-15K 전투기(2016년 12월)

30)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도표 3-9〉 킬체인(1축)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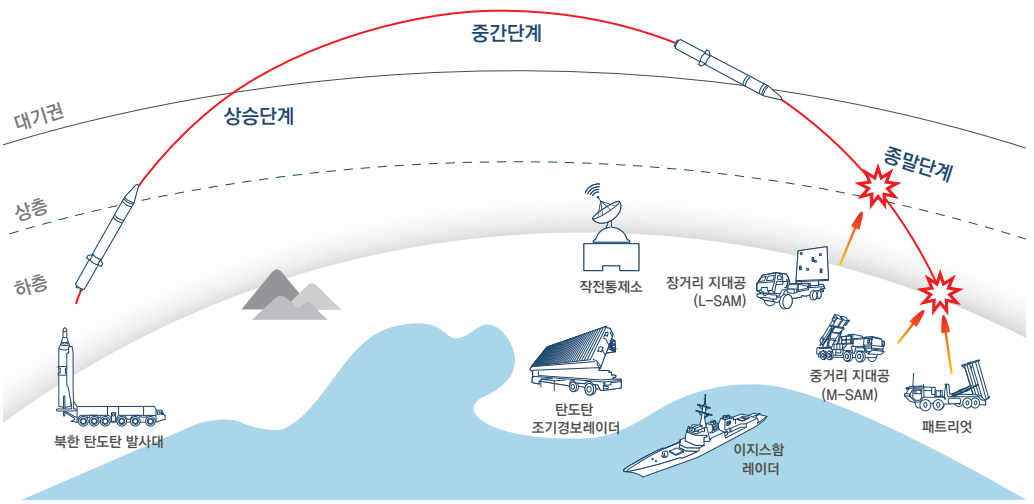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31])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하면,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핵심시설 및 주요 비행기지에 대한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32]),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33])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하여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31) Korea Air & Missile Defense
32)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33)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도표 3-10〉 한국형미사일방어(2축)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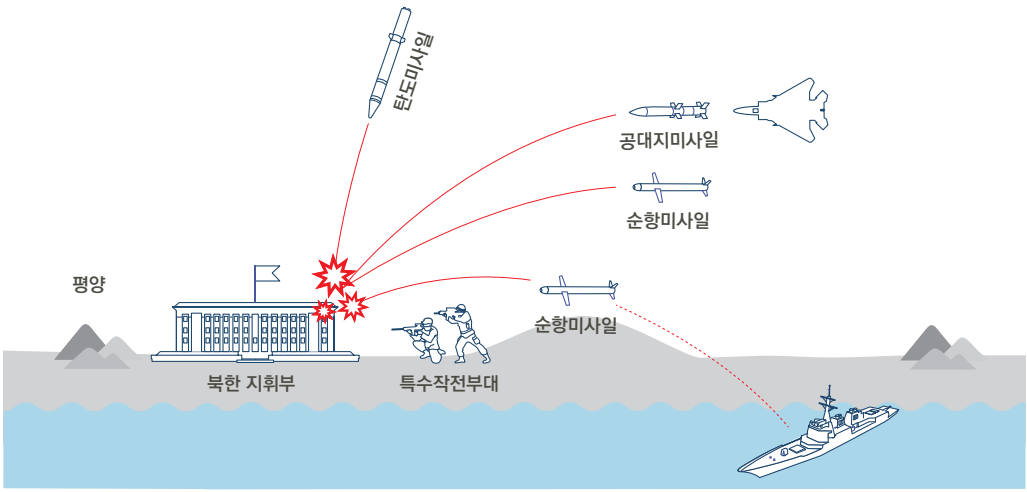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의 발전 소요를 식별하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미사일 대응능력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와 더불어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34])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34)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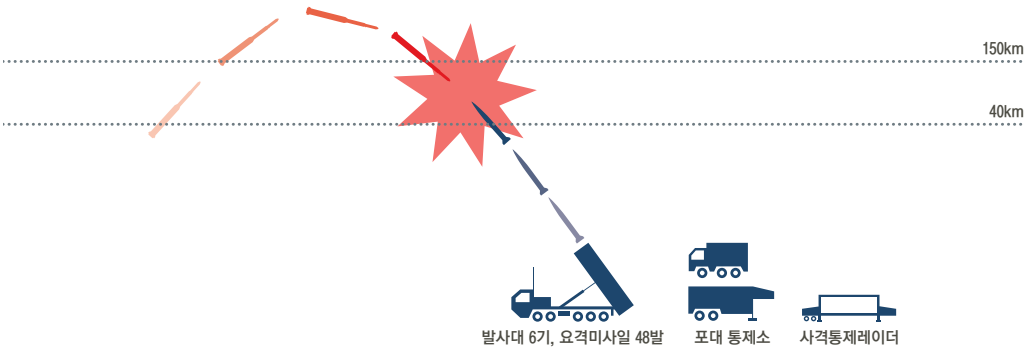
〈도표 3-11〉 대량응징보복(3축) 체계도



|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추진 | 한미는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THAAD)체계[35]는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목표지역을 향해 하강할 때 40~150km 고도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사드 1개 포대는 통상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도표 3-12〉 사드(THAAD) 요격 체계



35)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체계

우리들을 지키는 힘!
주한미군 사드배치

사드체계는 4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훨씬 더 넓은 지역(남한지역의 1/2에서 2/3 범위)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36])」 협의절차와 설계·시설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한미는 2017년 중에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하여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 화학·생물 위협 대비 능력 발전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공격 능력과 테러, 질병 등 다양한 화학·생물 무기 공격 위협이 증대되면서 우리 군의 화생방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제대별로 화생방부대를 편성하여 신속한 화생방작전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방호장비·물자와 예방·치료제 등 의약품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한미 생물방어연습(2015년 9월)

화학·생물 무기 공격의 위협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한반도 내 발생 가능한 생물위기 대응시스템 점검과 범국가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생물방어연습(AR[37])'을 실시하고 있다. 양국의 40여 개 관계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여 토의식연습, 현장연습, 고위급 세미나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생물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물방어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4년과 2016년에는 생물방어연습을 을

36) Status of Forces Agreement

37) Able Response

지프리덤가디언(UFG[38]) 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한미 생물방어 특별팀'을 운영하여 양국의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연구, 교육훈련 참가, 의료자원 조달, 생물감시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생물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향후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화학·생물무기 대비·대응 태세를 발전시키고, 진단·치료·제독 능력 향상과 연구개발 능력을 발전시켜 생화학전 수행능력과 화생방 테러 대비 능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3. 국방우주력 발전

| 우주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한 미래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고 우주영역에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방우주발전위원회와 국방우주발전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6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원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보 측면의 우주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보 분야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국방우주력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민·관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산·학·연 우주기술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2년 미 국방부와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관련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8차례의 국방 우주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우주인력 교류, 우주상황인식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주기반 대테러, 재난구호, 탐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우주상황인식[39]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언제든지 미국의 전략사령부로부터 우주물체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공군은 우주정보상황실을 설치하여 우주통제 기반능력을 확보하고, 우주정보 분석, 위성 충돌위험 예상 시 관련

38) Ulchi-Freedom Guardian

39)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여 지상시스템과 우주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예·경보)하는 개념(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기관 전파 및 상황조치, 연합연습 시 우주상황조치 연습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양국 국방부는 우주협력 고위급 토의식 연습을 최초로 실시하여 우주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위협 상황에서의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6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

우리 군은 다양한 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전사와 해병대에 테러 대비 신속대응부대를 지정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 훈련을 통해 대테러 작전수행 및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사이버위협 대비 합참을 중심으로 사이버 작전 임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사이버 방호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등 사이버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적인 재해·재난의 예방·대비·복구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민·관·군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 테러 대비태세 확립

벨기에 브뤼셀, 미국 올랜도, 터키 이스탄불,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 양상이 수 개의 장소에서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복합테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ISIL과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추종세력, 사회불만 세력 등 '외로운 늑대'에 의한 자생적 테러와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테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군은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을 개정하고 테러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면서 테러 유형별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2016년 5월)

합참은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전술토의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등을 통해 군사시설과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의 대테러 작전수행 및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테러 유형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작전지휘와 영상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C4I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관기관과 국내외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부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초동조치부대의 출동여건을 보장하였다.

신속하게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대테러부대로 지정되어 있던 특전사

707 대테러특임대대와 해군특수전단 특임대대 외에 지역별로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추가 지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군의 노력으로 2015년 6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9월 서울안보대화 및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의 국가 주요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우방국과 대테러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40]) 주관으로 실시한 해양안보 및 대테러연합훈련에 육군과 해군의 대테러특공대가 참가하여 훈련을 주도하는 등 대테러분과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일대에서 실시한 해양안보·대테러연합훈련 (2016년 5월)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제 대테러 공조 및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테러 정보의 공유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2.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제도 발전 |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해킹[41]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과 청와대를 사칭한 악성코드와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거나 고위 군간부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등 대남 사이버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국방사이버안보전략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방사이버위기대응실무메뉴얼」을 마련하여 사이버위기의 신속한 결심과 대응절차를 발전시키고 있다. 합참은 2015년 사이버작전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합참의장에게 사이버작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합동 사이버작전」 교범을 발간하는 등 합참 중심으로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 민간대학에 사이버전 관련 국방학과를 설치하여 사이버 전문 인

40)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41) 불특정 해킹조직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한수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원전가동을 중지하라고 협박한 사건

해병대 1사단 특별경호대 대테러사격

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양성된 사이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는 전군 대상 국방정보보호교육 과정에 중급이상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국방사이버안보 최고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였다. 다양한 사이버전 시나리오를 적용한 종합 전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과학화 훈련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체계 확보 |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비하여 주요기반체계를 포함한 군 운용체계에 대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운영체계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한 분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별로 사이버방호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있다.

상용 정보보호 기술과 체계를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활용하면서 사이버전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진화하는 민간의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과 체계를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적용하기 위한 신속획득 방안(Fast-Track)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민·관·군 공동 기술개발로 사이버 관련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한미는 사이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4년부터 연 2회 '한미 국방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CCWG[42])'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한미 정보보호/네트워크방어 정보교환 운영예규(IA/CND SOP[43])」를 체결하였다. 2016년부터는 '한미 사이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국방사이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SDD[44]) 시 사이버워킹그룹(CyberWG[45])을 운영하여 다자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방국과의 사이버 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안보대화 시 개최된 사이버워킹그룹 회의(2016년 9월)

42) R.O.K.- U.S.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43) Information Assurance/Computer Network Defens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44) Seoul Defense Dialogue
45) Cyber Working Group

3.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역량 강화 | 우리 군은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민·관·군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2016년에는 민·관·군 통합훈련에 247개 부대가 참가하여 대형화재, 태풍, 지진 등의 재난상황 조치 능력을 숙달하였다.



민·관·군 합동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2016년 11월)

재난관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국방부 주관으로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각 군 재난관계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휘관 중심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군내 노후시설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공사를 실시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육·해·공군 각급 부대에 410여 개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반시설 종사자의 불법 행동 시 대국민 서비스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군 기능인력의 관리 현황은 〈도표 3-13〉과 같다.

〈도표 3-13〉 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

2016년 11월 기준

구 분	계	철도/전동차	발 전	가 스	화물운송
인원(명)	2,143	537	510	304	792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국가적 재난극복 지원태세 확립 | 함정 및 항공기 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6개의 재난구조부대와 17개의 탐색구조부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평소부터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재난 유형별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은 71만여 명의 병력과 1만 8천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2014년 2월 동해안 지역에 내린 폭설로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군은 12만여 명의 병력과 2,0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고립지역 주민에 대해 의료 지원 및 생필품을 보급하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시에는 37만여 명의 병력과 1만 1천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충북과 경기지역에서 구제역과 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자 1,200여 명의 병력과 42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감염가축의 살처분, 방역활동,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다.

2015년 4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피해가 심각해지자 군은 병력 8,100여 명, 장비 2,000여 대를 투입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급수지원과 함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을 지원하였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확산 시 군의관 및 간호장교, 의무 지원요원으로 구성된 '군 의료지원단'을 민간병원과 보건소에 파견하고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운영하여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였다.


메르스 군 의료지원단 발대식(2015년 6월)

2016년 9월 경주 지역에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하자 1,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태풍 차바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울릉도, 울산, 대구지역 재난현장에는 4만 5천여 명의 병력과 482대의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로, 하천 등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지원중인 장병(2016년 9월)

9월부터 충북 음성에서 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자 1,400여 명의 병력과 150여 대의 제독차를 투입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였고, 철도·화물 노조파업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자 군 기능인력 466명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대민지원 현황은 〈도표 3-14〉와 같다.

〈도표 3-14〉 최근 4년간 대민지원 현황

2016년 11월 기준

연 도	지원내용	지원인력(명)	장비(대)
총 계		812,401	19,885
2013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피해 복구	42,528	303
	소나무 재선충 방제	14,290	0
	산불지원, 조난 탐색 및 구조, 적조지원	10,134	278
2014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피해 복구	146,733	2,532
	구제역, AI 방제	60,488	204
	세월호(실종자 수색·구조, 운구·의료지원)	370,710	11,387
	산불지원, 해양오염, 적조지원, 건축물 붕괴 지원, 유해화학물질 유출	17,101	406
2015	가뭄 지원(생활용수, 농업용수, 저수지 준설)	8,174	2,003
	실종자 수색·구조	8,419	185
	구제역, AI 방제, 메르스	10,893	480
	산불지원	15,637	438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피해 복구, 건축물 붕괴 지원, 적조지원, 해양오염, 소나무 재선충 방제	5,416	274
2016	산불지원	5,633	190
	지진 피해 복구 지원	1,956	39
	가뭄, 집중호우, 태풍 피해 지원	53,864	482
	폭설 피해 복구, 건축물 붕괴 지원	5,413	32
	실종자 수색·구조, 해양오염 지원	2,072	89
	철도·화물 노조 파업 지원	32,367	400
	구제역, 고병원성 AI 방역 지원	421	97
	기타(재선충, 가뭄)	152	66

| 해외 재난구호 지원 및 협력 강화 |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재난 발생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10년 5월부터 '해외긴급구호 군 수송기 임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48시간 내에 해외긴급구호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재난구호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3년 5월 태국과 공동으로 제3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재난구호훈련을 개최하여 역대 훈련 중 가장 많은 27개국 1,800여 명이 참가하였고, 11월 필리핀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하이옌의 피해복구와 재난구호를 위해 군 수송기를 지원하여 해외긴급구호대 인원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였다.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군 수송기를 이용해 천막, 담요, 생수 등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10년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은 〈도표 3-15〉와 같다.

〈도표 3-15〉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

시 기	지역(재난)	지원 내용
2008. 5.	중국(지진)	• 수송기(C-130) 3대, 군용 텐트 등 구호물자 26.6톤
2009. 11.	캄보디아(태풍)	• 수송기(C-130) 1대, 생필품 등 구호물자 7톤
2010. 1.	아이티(지진)	• 공군 구조사 1명(의료지원)
2010. 3.	칠레(지진)	• 군용텐트 136동
2011. 3.	동일본(지진, 해일)	• 수송기(C-130) 10대(총4회), 구호물자 58.8톤, 구조대 102명 수송
2011. 10.	터키(지진)	• 군용 텐트 100동
2013. 11.	필리핀(태풍)	• 수송기(C-130) 9대(총4회), 구호물자 329톤, 구조대 포함 2,022명 수송
2016. 4.	일본 구마모토현(지진)	• 수송기(C-130) 2대, 구호물품 11만불(천막, 담요, 햇반, 생수)

제7절 실전적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군 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력획득과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선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여성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실전적 부대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 |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학·군 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력획득'과 '부사관 학군단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군은 군사학과와 부사관과가 개설된 대학과 학·군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군사 관련 과목을 이수한 중기복무 장교와 전투·기술 분야 부사관을 확보하고 있다. 2013년 협약을 체결한 4개 대학의 군사학과 대학생 전원에게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장교로 임관하던 제도를 일반대학 지원자와 경쟁을 통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18개 대학교의 군사학과와 53개 전문대학의 부사관과에 대해 학·군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6개 전문대학에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우수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초급간부 장기복무 선발비율 단계적 확대 | 간부 정원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여 군 간부의 직업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사와 중·소위 정원은 줄이고 상사와 대위·소령의 정원은 늘려 2015년 장교의 23%, 부사관의 34%가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던 것을 2025년에는 장교의 30%, 부사관의 47% 이상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우수 여성인력의 활용성 제고 | 우수 여성인력을 국방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

록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의 7%, 부사관의 5%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여성인력 확대 정책은 장교는 2015년에 목표를 달성하였고, 부사관은 2017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우수 여성인재의 군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자대학 학군단을 2개에서 3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여자 학군후보생 선발인원을 증원하였다. 2014년부터 육군의 3개 전투병과(포병, 기갑, 방공)를 여군에게 추가 개방하고 근무지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여군의 역량발휘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여군인력 확대와 병행하여 여군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진료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불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창의적 군사전문인재 양성 | 사이버전·우주전 등 미래 전장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군사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군사전문인재는 전문학위교육과 국외군사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문학위교육 중 박사 학위교육은 군 교수, 연구원, 특수 기술 분야의 군사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연간 20여 명을 선발하여 국내외 우수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석사 학위교육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융복합 공학 분야 등 이공계와 군사 분야 위주로 연간 23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국외군사교육은 다양한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언어권별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30여 개국의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사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사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교육 대상 국가를 다변화할 것이다.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정착

| 학교교육 방법 개선 |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개선하였다. 교관 중심의 강의 위주 교육에서 토론과 실습위주의 학생참여형 교육과 문제해결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수업 전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선행학습과 토의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숙달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과 평가방식을 개선하였다.



무적의 전사들
(여군)

초급간부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 리더십과 군대윤리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임관 후 처음 실시하는 초군반 교육 과정에 인권, 군법, 군대윤리 등을 신설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추게 하고 불확실한 전장상황에서의 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리더십 훈련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용 「긍정형 리더십」, 「군인복무규율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고, 인성·리더십 등의 교육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야전부대의 인성과 리더십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사관학교 통합교육체계 개선 |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각 군의 문화를 이해하고 합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통합교육 결과 각 군 사관생도 간 친밀도, 동료애 형성 등에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견학·체험위주 통합교육을 강화하여 타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합동작전 교육의 필요성과 수행체계를 이해하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46] 구축 추진 |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는 모든 장병이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필요한 군사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 군의 원격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체계이다. 향후에는 모바일 교육 체계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집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군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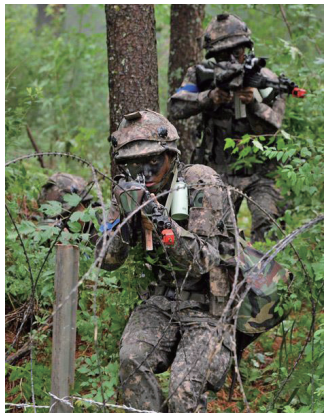
| 부대훈련 |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정신교육, 사격, 체력단련, 전투기술 등 핵심과목 위주의 강도 높은 실전적 부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가용시간의 절반 정도를 전술훈련 위주의 부대훈련에 할애함으로써 전투행동을 완벽하게 숙달하여 부대가 해당 지휘관의 의도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부대별로 달성 가능한 훈련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가 달성

46) 군사교육을(Military)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하는(Open), 웹기반으로(Online) 구성된 강좌(Course)를 의미함.(M-MOOC : Military - Massive Open Online Course)

될 때까지 훈련하고, 마일즈(MILES) 장비[47], 데이터 통신, 인공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학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실전적·과학화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은 군단급 과학화훈련장을 구축하면서 훈련장 권역화와 주둔지별 훈련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해군은 해상종합전술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공군은 기지방어종합훈련장 확보와 더불어 방공포병 과학화 종합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일즈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화훈련 중인 육군

군단급에는 부대훈련 전문평가관을 배치하여 부대훈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대급 이하 제대 병력의 차출을 통제하고, 야외전술훈련 후 정비기간을 훈련기간에 포함하여 부가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전투 임무 위주 군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주요 훈련 | **육군**은 야간훈련, 전투사격 등 전장상황에 부합된 실전적인 훈련과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 전투지휘훈련, 모의장비훈련 등 과학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의 다양한 공격양상에 실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야간훈련과 전투사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박격포, 포병 등의 야간사격과 포병 장사거리사격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지원·배속부대와 합동전력을 포함한 전투사격을 실시하여 전투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은 보병부대·기계화부대·특전부대 등 부대 유형별로 소대급에서 중대급까지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보급된 중대급 마일즈 장비는 쌍방 교전훈련을 실시한 후에 현장에서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훈련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장병들의 훈련 의욕과 사기·전우애를 고취시켜 부대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등 병영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는 훈련장을 확장하고, 포병·전차·헬기 등 연대급을 지원하는 상급부대의 각종 무기체계와 전장효과 묘사


K-9 대화력전 실사격 훈련(2015년 4월)

47)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 등 첨단 광학기술을 이용한 교전훈련장비(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육군의 화력

장비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는 연대급이 과학화전투훈련단에 입소하여 훈련할 계획이다.

전투지휘훈련(BCTP[48])은 컴퓨터 모의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전장상황과 유사한 훈련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임무형 지휘'[49]를 통한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모의장비훈련은 가상의 전장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 등을 훈련하는 것으로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에 적용하고 있다.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신병과 예비역이 실제 장비의 조작법과 표적 유도 절차를 숙달하여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전투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투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에 필요한 장비 운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향후에는 실전적 전투사격 수행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과학화 전투사격훈련장 15개소(군단 6, 사단 9)를 구축하고, 실제 지형 훈련 상황(Live), 모의장비훈련(Virtual), 컴퓨터 모의기법을 활용한 전투지휘훈련(Constructive)을 연동하는 LVC[50] 통합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외에도 특수작전, 비정규전, 공중침투, WMD 제거작전, 제병협동훈련, 공중강습, 고공강하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전차대대 등 47개 부대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최근 2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6〉과 같다.

〈도표 3-16〉 최근 2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5년	37	36	36	-	1	1	-
2016년	21	20	20	-	1	1	-

해군은 동·서·남해 각 해역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실전적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 및 합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의 합동 전력이 참가하며 성분훈련과 임무형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48)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49) 지휘관이 부하에게 자신의 의도와 부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여 예하 지휘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되, 임무수행방법은 최대한 위임하여 예하부대가 자율적, 창의적,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휘 방법

50) Live Virtual Constructive Gaming

육군 특수전사령부 고공강하 훈련

성분훈련은 기본훈련으로서 대함·대잠·대공·대상륙·대탄도탄작전 등 전투환경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임무형 훈련은 특성화된 훈련으로서 기동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 국지도발 합동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이 있으며, 훈련에는 최신예 전투함, 잠수함, 상륙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기동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2015년 5월)

연합훈련은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으로 구분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작전수행능력 제고와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해 해상 대특수전부대훈련, 대잠해양탐색훈련, 상륙전·기뢰전·구조전·해안양륙군수지원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연합훈련으로는 코브라골드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51]), 대탄도탄 훈련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52]) 등이 있다. 최근 2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7〉과 같다.

〈도표 3-17〉 최근 2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5년	20	16	14	2	4	1	3
2016년	21	15	14	1	6	–	6

순항훈련[53]은 전 세계를 권역별 4개 항로로 구분하여 매년 항로를 번갈아 가면서 약 90~120여 일 동안 진행되며, 2015년에는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타 국가의 해·공군과 연합대공전, 연합 다자해군 통신 절차 교류도 이루어져 사관생도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함께 순방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51) Rim of the Pacific Exercise
52) Search and Rescue Exercise
53)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대상 원양 항해훈련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해군 대공·대함·대잠 사격훈련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혹한기 훈련

해군은 이러한 훈련을 실전적으로 하기 위해 함정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모의훈련장비를 활용한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유도무기 모의전술훈련장 등 과학화훈련체계를 구축하고 함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정손상통제[54] 훈련이 가능한 현대화된 표준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모든 상황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지도발 대비훈련, 전시작전 대비훈련, 세부임무별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지도발 대비훈련에는 서북도서 국지도발 대응훈련, 해안침투 합동훈련, 적 특수전부대 해상침투 저지훈련, 야간 침투 및 공격훈련, 항공기 피랍 및 공중테러 대응훈련, 귀순·망명 항공기 유도훈련 등이 있다.


다국적 연합전술훈련(2016년 10월)

전시작전 대비훈련에는 우리 공군 단독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 우리 공군 단독훈련으로 전투태세훈련, 전시 전장공간관리 훈련, 비행단·전투사 공격편대군 훈련,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Soaring Eagle)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훈련으로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Max Thunder), 공중급유훈련, 다국적 연합전술훈련(Red Flag-Alaska)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Cope North)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임무별 훈련에는 방어제공훈련, 항공차단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 공수/특수작전훈련, 전투탐색구조훈련 등이 있다. 방어제공훈련은 영공 침범을 기도하는 적의 공중침투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영공침범 대응 훈련, 대량 항적 침투대응훈련, 연합방공훈련 등이 있다. 항공차단훈련은 전방으로 증원된 적의 지원전력이 우리 군에 위협이 되기 전에 교란·지연·파괴하는 훈련으로 이동표적 탐지 및 공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상군, 미 합동감시/표적공격 레이더 체계(JSTARS[55]), 특전사 항공기 폭격 유도요원과 연합·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접항공지원훈련은 지상군과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으로 주·야간, 도시·해상, 후방지역 근접항공지원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특수작전 훈

54) 함정의 평시 태세유지부터 손상상황 대응 및 복구까지, 모든 손상과 위험요소를 통제하여 최대의 전투력을 유지토록 하는 것

55) Joint Surveillance & Target Attack Radar System

2016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2016 다국적 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련은 전시 저고도침투 및 공수작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 공중수송훈련, 공중기동기 공중투하 편대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시 전투탐색 및 구조작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특전사 합동탐색구조훈련, 조명지원 하 해상 탐색구조훈련, 전투탐색구조 기동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제 기동훈련 제한에 따른 지상모의훈련 장비, 공중전투기동훈련 장비(GPS-ACMI[56]), 전자전훈련 장비(EWTS[57])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8〉과 같다.

〈도표 3-18〉 최근 2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5년	5	3	3	-	2	-	2
2016년	5	3	3	-	2	-	2

해병대는 육상·해상·공중 어느 곳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상륙작전, 서북도서 방어작전, 안정화 작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휘관 및 참모활동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기법을 이용한 전투지휘훈련과 부대별 특화된 제병협동훈련, 동계 설한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코브라골드 훈련, 칸케스트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등의 해외 전지훈련과 쌍룡훈련 및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KMEP)[58] 등의 연합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서북도서방어훈련은 사례 위주 훈련방법을 적용하여 선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은 연합강제



연합상륙훈련(2016년 3월)

56)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57)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58) 한국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으로 한미 해병대가 연합작전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 (KMEP :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 해군·해병대 합동상륙훈련 |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

진입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9〉와 같다.

〈도표 3-19〉 최근 2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연합	다자간 훈련
2015년	21	17	16	1	4	1	3
2016년	22	18	17	1	4	1	3

| 합동[59]연습[60]과 훈련[61] | 우리 군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태극연습은 전·평시 작전수행과 지휘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합참이 주도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례적인 지휘소연습이다. 합참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995년부터 태극연습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작전사령부(군단급)까지 연습에 참가하여 전구급 합동 지휘소연습으로 발전되었다. 실전적 연습을 위해 전구급 합동작전모의모델을 활용하여 연습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분야를 위주로 작전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호국훈련은 대부대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합참이 주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전군 차원의 야외기동훈련이다. 2015년부터는 화랑 훈련 등 성격이 유사한 훈련과 연계하고 동·서해상 훈련을 통합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본부 주관 하에 민·관·군·경의 모든 국가 방위요소가 참가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화랑훈련과 충무훈련[62]을 통합하여 전 국가방위요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실전적인 통합방위 훈련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59) 동일국가의 2개 군 이상의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각종 활동, 작전, 조직

60) 작전시행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Exercise)

61)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Training)

62)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호국훈련
(남한강 도하작전)

| 연합[63]연습과 훈련 | 키리졸브(KR[64]) 연습/독수리(FE[65]) 훈련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PX[66])과 야외기동훈련(FTX[67])이다.


2016 키리졸브(KR) 연습

키리졸브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합참 주도로 대항군 운용계획 수립과 사후검토를 실시하여 한국군의 전구 연합연습 주도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유엔사 전력제공국 중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프랑스 5개국이 연습을 참관하였다. 한미는 한국군의 계획수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17부터 한국군이 계획분야를 주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독수리 훈련은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2008년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한미 전력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군이 참가하여 다국적 연합전력으로 진행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으로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 단독 및 한미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면전 시 한미연합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미 태평양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연습의 성과를 높였으며, 유엔사 전력 제공국 중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7개국이 연습을 참관하였다.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연합연습 시행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4년 신설된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68])는 합동연

63) 2개 이상의 국가·동맹국 부대나 기관 간의 협력 관계
64) Key Resolve
65) Foal Eagle
66) Command Post Exercise
67) Field Training Exercise
68) Joint Warfighting Simulation Center

습·훈련체계(JTS[69])를 구축하여 정착시켰으며, 합동 및 연합 연습을 위한 워게임 모델을 개발하는 등 연습통제 및 모의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 본토와 한반도에 위치한 한미 지역모의센터(BSC[70])들은 워게임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합동 및 연합 연습은 물론 각 군과 미군 연습, 학교기관의 전쟁연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장병 정신교육 강화

| 정신교육체계 및 현황 |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신병 정신교육은 '선(先) 정신무장, 후(後) 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과제를 집중 편성하여 정과교육을 추진하면서, 훈련과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 정신교육은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을 신념화하고, 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표·토의식 교육과 교관화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대 정신교육은 지휘관 중심의 일일-주간-반기 집중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TV와 IPTV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시청하고 장병 스스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현장체험식 행동화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정과교육 이외에도 신문을 활용한 교육기법(NIE[71])을 적용하여 안보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대대급 제대의 정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병 스스로 작품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발표하는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신념화·행동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병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5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2015년 7월)

69) Joint Training System
70) Battle Simulation Center
71) Newspaper In Education

| 국방정신전력원 설치·운영 | 2013년 각 군에 분산되어 있던 정신교육 기능을 통합한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하여 '국가관', '안보관' 교육을 강화하면서 야전부대 전투병과 중·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군인정신 사례 연구, 역할모델 토의, 전적지 답사 등 군인정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신전력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신전력 논문 공모,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군 인성교육 추진 | 바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훌륭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창의, 용기, 책임, 존중, 협력, 충성, 정의의 인성교육 7대 덕목을 선정하고 인성교육체계를 정립하였다.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집중 교육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86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94
제3절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101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109
제5절 국방정보화 발전 118
제6절 국방군수혁신 추진 121



잠수함 위협 대비 실전적 대잠훈련(2016년 11월)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안보정세, 국방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구조로 전환하면서 국방경영 혁신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조국방을 통해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1. 국방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2005년 12월 국방부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와 국방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다. 병력 위주의 양적 군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군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와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를 구축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혁신과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 5년의 중간 및 계획 완료시점에 국내외 안보상황과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수립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문 인재 양성, 민간참여를 통한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다양한 군사도발과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요소를 추가로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수립하였다.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여 대북억제전력을 적극적으로 구비하고, 북한의 위협과 작전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부대구조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2013년 이후 북핵·WMD 등 비대칭 위협이 고조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14년 3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간부를 증원하는 등 정

예화된 병력구조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전적 교육훈련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원체계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군수운영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난 10년간 국방개혁 성과와 추진여건을 평가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수정1호」를 작성하였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최적의 대비방안을 강구하여 부대개편계획을 조정하고, 국가재정 전망을 고려하여 군구조 개편과 연계된 필수전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래 국방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선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계획도 반영하였다.

2015년부터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조국방[1]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에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 2013~2016년 국방개혁 주요 성과

군구조 분야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합동·연합작전 지휘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네트워크 기반 하에서 공세적 통합작전[2]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군의 상비·동원사단을 개편하고 해군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군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상비병력 5만 6천여 명을 감축하였으며, 간부 비율을 6.2% 확대하는 등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잠수함, 호위함(FFX)과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등을 보강하였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여군 활용병과를 전 병과로 확대하였으며, 여대 학군단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였다. 동원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험 운영하였으며, 향방예비군의 노후 개인화기를 M16으로 모두 교체하였다.

합동 상호운용성 기술센터 등 18개 조직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전투분야 군용차량을 상용차량으로 교체하여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병봉급을 인상하고 병영문화쉼터를 확충

---

1)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혁신적 국방가치 : 창의적 군사력 운용개념 창출, 개념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2)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NCOE) 하에서 공세적 사고를 견지하고,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선제적·능동적·주도적으로 능력과 활동을 통합하여 적 중심을 마비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념

하였으며,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통해 군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였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GP·해안초소와 같은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고 의무후송헬기를 도입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개선하였다.

3. 군구조 개혁 추진 방향

| 지휘구조 | 현재의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다. 합참은 군령[3]보좌 및 정보·작전기능 위주로 보강하여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와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작전지휘[4] 조직과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을 수행하는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하여 개편할 것이다. 합참 개편 계획은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합동참모본부 개편 계획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5])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미래지휘구조 개념에 기초한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6]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 조직을 단계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 병력구조 |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병력구조를 질적인 첨단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22

3)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능으로써 군사전략기획,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의미

4) 합동·연합작전이나 독립작전, 국지도발 대비 작전 등의 계획·준비·시행과 이와 관련된 군사연습·훈련을 지휘·감독하는 권한

5)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6) 미래사령부는 한미연합참모부로 구성된 한국군 주도의 전구사령부로 전시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과 연합작전의 주도적 역할 수행

년까지 상비병력을 52.2만여 명으로 감축할 것이다. 육군 병력은 38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공군·해병대는 현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상비병력은 부대 개편과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육·해·공군·해병대의 간부 비율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조정하여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도표 4-2〉와 같다.

〈도표 4-2〉 상비병력 감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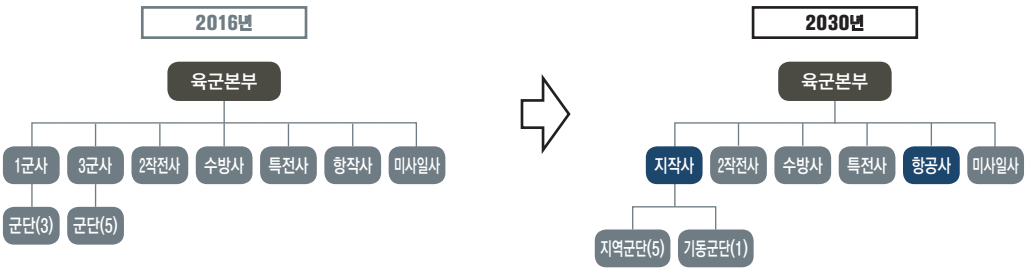
구 분	상비병력
육 군	49만여 명
해 군	4.1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공 군	6.5만여 명



구 분	상비병력
육 군	38.7만여 명
해 군	4.1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공 군	6.5만여 명

| 부대구조 | **육군**은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 하에서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전·평시 전방지역작전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해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지휘통신·정보·작전·화력 등 작전지휘를 위한 필수 기능 위주로 편성하여 군단 단위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하며,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상정보단, 정보통신단, 근무지원단을 편성할 것이다. 육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3〉과 같다.

〈도표 4-3〉 육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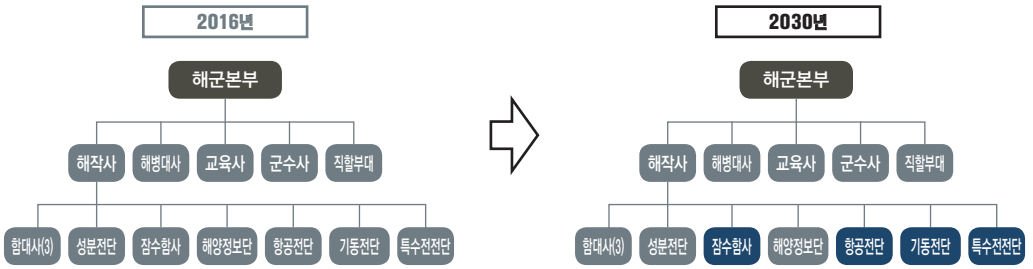


지역군단은 지상작전의 최상위 전술부대로서 독립작전수행이 가능하고, 전방지역 축선별 책임지역을 방어하며 공격작전 시 주축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강할 것이다. 군단별로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편성하여 전투 및 전투근무지원 능력을 보강하고 동·서부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개편할 것이다. 기동군단은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부대로 운용될 예정이며, 군단 예하에 기계화보병사단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작전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전투근무지원을 보강할 것이다.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운용 능력을 확보하여 현존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 방위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잠수함(KSS-III), 이지스구축함,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의 전력화 계획과 연계하여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전단, 기동전단을 개편할 것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수행조직을 강화할 것이다. 해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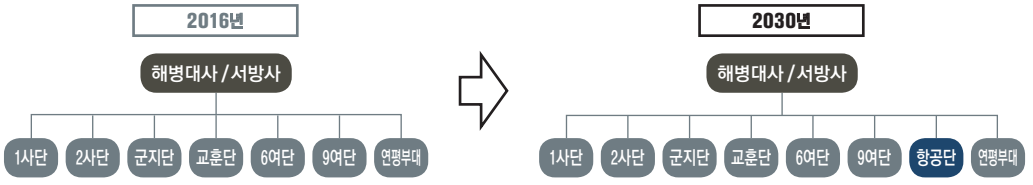
〈도표 4-4〉 해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 잠수함사, 항공·기동·특수전전단 예하 전(대)대 창설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와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전장 감시와 타격, 방호능력 등의 전력을 증강하여 해병사단을 개편하고,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계획과 연계하여 항공단을 창설할 것이다.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5〉와 같다.

〈도표 4-5〉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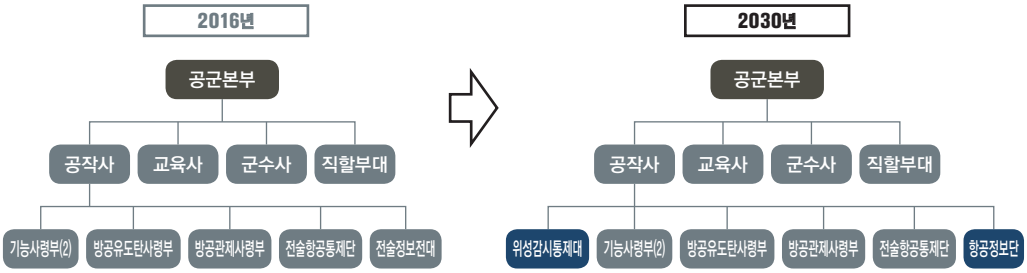


공군은 효과 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고, 합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도 창설하고, 정보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정보전대를 항공정보단으로 개편할 것이다.

공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6〉과 같다.

〈도표 4-6〉 공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 전력구조 | 전력구조는 위협과 능력에 기초하여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고 있다. 조기경보 및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며, 첨단·과학화된 기동·타격체계로 개편하고 있다.

감시·정찰전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감시하고 제대별 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을 보강하고, 전장상황을 공유하며 지휘결심을 지원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 위성통신체계 등 지휘통제통신체계를 증강할 것이다.

지상전력은 부대개편에 따라 작전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하여 230밀리급 다련장, 중형전술차량, 한국형기동헬기 등의 전력을 증강하며,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해 K2전차, K-9자주포, 소형무장헬기 등을 확보하여 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230밀리급 다련장



구축함(KDDX)

동·타격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해상전력은 구축함(KDDX), 호위함(FFX), 잠수함(KSS-III), 상륙함(LST-II) 등을 확보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을 통제하고, 입체고속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공중전력은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X, 한국형전투기(KF-X), 공중급유기, 장거리대형수송기 등을 확보하고, 종심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패트리엇,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 신형 화생방보호의 등 방호전력을 확보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확보하여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4. 국방운영 개혁 추진 방향

| 국방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 |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의 전투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군·사단급 훈련장 15개소에 대해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훈련장 3,300여 개를 군·사단급은 권역별로 대대급 이상은 주둔지별로 통합할 것이다.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선발비율을 높이고,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동원체제 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 | 유사시 필수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동원전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것이다. 동원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권역화 동원지정 제도를 확대하고, 간부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평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대대 단위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까지 여단 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과학화 훈련체계를 적용할 것이다.

| 군수운영 혁신 및 민간자원 활용 확대 | 변화된 물류환경에 부합하는 군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시설을 표준화하여 현대화할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원스톱(One-Stop) 군 물류지원체계[7]를 정착하고, 군수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즉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수정보체

7) 현재 군 물류체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인력·시설 등의 비용절감과 보급단계 축소(5단계→3단계)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적시적인 보급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계를 개발할 것이다. 부대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군 장비의 외주정비, 상용차량 임차 등 민간자원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국방경영을 추진할 것이다.

|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민·군 공동 R&D를 활성화하고, 첨단 무기와 핵심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우수 기술 보유업체가 참가하여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방위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다.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무기체계의 신속획득(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획득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이다. 사이버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첨단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군 복지향상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내 보육환경 개선, 병영 내 문화시설 확충 등 군인과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군 복무의 사회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GOP 부대는 대대급, 일반부대는 연대급까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다. 질병예방 중심의 건강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군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며, 외상환자 전문 치료기관으로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다변화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략환경 평가와 위협분석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과 합동작전수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전력증강 기본방향

국방부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감내하기 어려운 북핵·WMD 위협 대비 전력은 최우선으로 증강하고, 정책·전략적 영향이 큰 북한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은 대북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긴요 전력을 우선 확보할 것이다. 테러·사이버위협과 전면전 위협 대비 전력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전장 기능별로 보면, 전장인식전력은 군 정찰위성, 다목적 실용위성과 다양한 유·무인 정찰항공기, 신호정보수집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별 전장가시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지휘통제·통신전력은 제대별, 분야별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고속·대용량의 디지털 기반 통신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능력을 확보하고 적시적인 결심지원과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하여 네트워크화된 작전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지상전력은 K계열 전차 및 자주포, 230밀리급 다련장, 한국형기동헬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대별 작전책임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동력·화력·방호력이 향상된 자동화 전투체계와 신개념의 지능화 탄약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해상전력은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능력과 입체적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잠수함(KSS-III), 해상초계기,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해 갈 것이다.

공중전력은 F-X, 한국형전투기(KF-X)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도 확보하여 원거리 공중작전과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방호전력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EMP[8]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전쟁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시설·장비의 방호 능력도 보강할 것이다.

2. 주요 전력증강 사업

| 2013년 전력증강 사업 | 2013년 국방비 34조 4,970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2년보다 2.8% 증가한 10조 1,749억 원이었으며, 2013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7〉과 같다.

〈도표 4-7〉 2013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 위성 전군 방공 경보체계	•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능력보강 • 휴대용 위성 공지 통신무전기
기동 / 화력	• K2전차 • K-10탄약운반차량	• 원격사격통제체계 • K-56탄약운반차량
해상전력	• 상륙함(LST-Ⅱ) • 장보고-Ⅱ급 잠수함	• 훈련함 • 상륙기동헬기
공중전력	• 중거리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	• 전술항공통제단

| 2014년 전력증강 사업 | 2014년 국방비 35조 7,056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3년보다 3.3% 증가한 10조 5,096억 원이었으며, 2014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8〉과 같다.

8) Electro-Magnetic Pulse(전자기 펄스)

〈도표 4-8〉 2014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 열상감시장비(TOD-Ⅲ)	• 이동형 해상감시 레이더 • 항공 관제 레이더
기동 / 화력	• K2전차 • 대포병 탐지레이더	• 230밀리급 다련장 • 원격 운용 통제탄
해상전력	• 검독수리-B급 고속정(Batch-Ⅰ) • 장보고-Ⅲ급 잠수함(Batch-Ⅰ)	• 대형수송함
공중전력	• F-X	• 한국형전투기(KF-X)

| 2015년 전력증강 사업 | 2015년 국방비 37조 5,550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4년보다 4.8% 증가한 11조 140억 원이었으며, 2015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9〉와 같다.

〈도표 4-9〉 2015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 열상감시장비(TOD-Ⅲ)	•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9]) •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
기동 / 화력	• K2전차 • K-9자주포	• 신형 7.62밀리 기관총 • 지뢰지대 통로개척장비
해상전력	• 광개토-Ⅲ급 구축함 • 장보고-Ⅲ급 잠수함(Batch-Ⅰ)	• 잠수함구조함(ASR-Ⅱ) • 신형 해상감시레이더
공중전력	• F-X • 공중급유기	•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 2016년 전력증강 사업 | 2016년 국방비 38조 8,421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5년보다 6.1% 증가한 11조 6,824억 원이었으며, 2016년에 추진하는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10〉과 같다.

9)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도표 4-10〉 2016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합동작전분석모델-II(연구개발)
기동 / 화력	• K2전차 • K-9자주포	• 차륜형 전투차량 •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해상전력	• 광개토-III급 구축함 • 장보고-III급 잠수함(Batch-I)	• 상륙기동헬기 • 2.75인치 유도로켓
공중전력	• F-X • 공중급유기	• GPS 유도폭탄(500lbs급) •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3. 2017~2021년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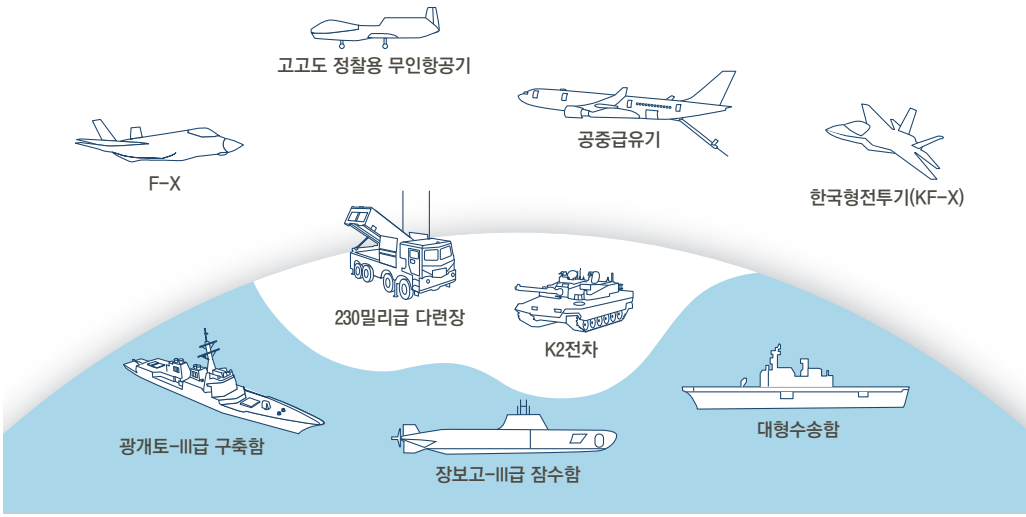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간 중 최우선적으로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를 구축하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구조 개편 필수 전력을 보강하며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확보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를 탐지·식별·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여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를 적기에 구축할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에 대비하여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할 것이다. 제대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보강하여 감시범위를 확장하고, K2전차, 81밀리 박격포-II 등의 장비를 전력화하여 운용 병력을 절감하며, 개인별 야시장비와 통신장비를 보급하여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상전력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230밀리급 다련장 등을 전력화하여 북한의 신형 300밀리 방사포에 대한 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국지방공레이더, 지뢰탐지기-II 등을 전력화하여 적의 은밀침투 및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은 신형고속정, 2.75인치 유도로켓 등을 전력화하여 북방한계선 도발 및 도서기습상륙 대비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울산급 호위함, 3천톤급 잠수함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수중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대형수송함, 상륙함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상륙작전 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공중전력은 F-35A,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침투·타격·장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KF-16 성능개량,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중우세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도표 4-11〉 2013~2016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4. 방위력개선사업[10]의 효율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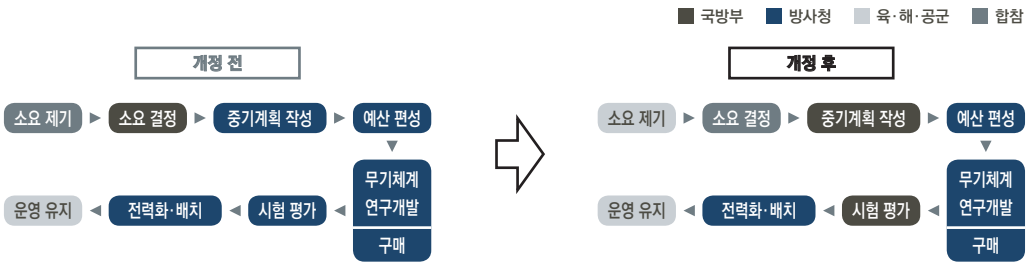
|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정비 | 방위력개선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방부에서 담당하던 무기체계 소요결정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하였고,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험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던 국방중기계획 작성과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판정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예산 편성과 사업관리 및 계약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기관 간 기능과 업무 조정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0)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

〈도표 4-12〉「방위사업법」 개정(2014. 11. 10.) 전후 비교



2015년에는 민간연구기관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전문연구기관[11]이 제안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가 채택되면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한 방위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2015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소요검증 및 분석평가 수행 | 국방부는 국가 재정과 국방예산 획득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적절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소요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36건의 소요를 대상으로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중 25건의 소요에 대해 소요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소요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합 소요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1건의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으로 사업별 분석평가에서 유사 및 연관 사업 간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검토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종합적 관점의 분석평가로 발전시키고 분석평가 결과의 축적, 관리, 공유가 가능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분석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11)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기관(「방위사업법」 제3조)

| 시험평가의 적기 수행 | 시험평가(Test & Evaluation)는 구매하거나 연구개발로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이 군의 요구성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방부는 2014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시험평가 업무를 이관받아 2016년 11월까지 2년 간 공중급유기 구매사업 등 86개 사업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되어 전력화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되었다. 앞으로도 시험평가를 적기에 실시하여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3절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선도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해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을 늘리고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력 있는 방산기업을 육성하고 방산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 창의·도전적 국방연구개발 추진 | 국방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진국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 선도형[12]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방예산에서 국방연구개발비[13]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연구개발 우선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세계 9위 수준[14]에 이르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와 미래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2014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국방고등기술원을 설립하였다. 전략무기 및 신기술 개발 연구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미래전 대비 시험실 등 연구시설도 점진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 관련 전문연구기관 지정과 특화연구센터 설립을 확대하여 민간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연구협력도 활성화하고 있다.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미래 신기술 개발 예산을 증액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15]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미래 핵심기술을 기획할 수 있도록 선행핵심기술 과제선정 권한을 국방과학연구소로 위임하였다. 민간 전문가를

12) 무기체계나 국방과학기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연구개발

13) 2013년 : 2.44조 원 → 2014년 : 2.33조 원 → 2015년 : 2.44조 원 → 2016년 : 2.56조 원

14)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국방기술품질원, 2015)

15) 연구개발 결과가 미흡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면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과제관리자(PM[16])로 채용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정찰·정밀타격·무인화·방호 분야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 민·군기술협력 강화 |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을 융합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7]을 근거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업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도 2013년 416억 원에서 2016년 677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민과 군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소재 등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민·군기술정보교류 사업이 있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과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된 핵심부품과 첨단 소재 및 기술은 국방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군에 적용된 품목에는 수리온 헬기에 적용된 보조동력장치와 해군 고속함에 장착된 중소형 워터젯 시스템 등의 핵심부품, KF-16전투기 착륙장치의 브레이크 디스크 소재로 사용된 탄소 및 탄소복합재, T-50고등훈련기의 공기흡입구 구성품 제작에 활용된 초소형 성형기술[18] 등이 있다.

---

16) Project Manager

17) 1998년 4월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의 공동소관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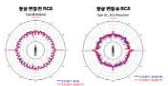
18) 초소형 티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합금 등 가공이 어려운 재료를 플라스틱처럼 자유롭게 성형하여 복잡한 형상의 다층 구조물을 단품일체화하여 경량화하는 기술

〈도표 4-13〉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사례

민간기술	보조동력장치	중소형 워터젯 시스템	탄소·탄소복합재	초소형 성형 항공우주부품
국방분야 활용 사례				
	수리온 헬기	해군 고속함	KF-16전투기	T-50고등훈련기

국방연구개발로 확보한 국방기술의 민간 부문 이전도 증가[19]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국방기술 중에서 민수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매년 100개씩 선정하여 발표하고, 민간 이전이 가능한 특허기술 2,249개를 국방기술거래장터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산망 사이버 탐지시스템, 광통신 송수신모듈, 무선 단말기 보안인증시스템 등 15건을 민수사업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표 4-14〉 국방기술의 민수 사업화 사례

국방 기술	QVGA급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증적/추적 기술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 및 표적 탐지 방법	SBR을 이용한 함정 RCS 예측 S/W 설계 기술	보안 액세스 포인트 기술
민수 사업화 사례					
	감시카메라	전산망 사이버 탐지	광통신 송수신모듈	레이더 반사 단면적 예측/분석	무선 단말기 보안인증시스템

향후에도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2.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 역량강화 |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

19) 2013년 : 52건 → 2014년 : 81건 → 2015년 : 97건

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부문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물자-다(多)업체 지정[20]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현재 62개 방산물자에 대해 복수 방산업체를 지정하였다. 방산기반조사[21]를 제도화하고 방산물자 지정목록의 대외 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규 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술력 있는 방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신규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벤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11월 현재 전국 8개 국방벤처센터에 23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방산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방산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수출 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수출마케팅전략 수립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산기업의 핵심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 방산수출 활성화 | 방산수출은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수익 확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방산수출은 오랜 기간 동안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부품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

정부는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시장과 판로를 확보하고, 수출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방산제품의 구매자는 상대국 정부이므로 방산군수협정 체결,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22] 또는 DQ마크 인증[23]으로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정부 간 판매 및 정부 차원의 후속군수지원 제도 등 구매국 정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Seoul ADEX[24]),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25]) 등 방산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

20) 신규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제도

21) 방산물자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 및 공급여건을 조사·파악하여 기존 방산물자에 대한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하고 민간 우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

22)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

23) 군수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군수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DQ : Defense Quality)

24)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5) International Maritime & Defense Exhibition

2016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에어쇼

서울 ADEX 2015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수출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수출업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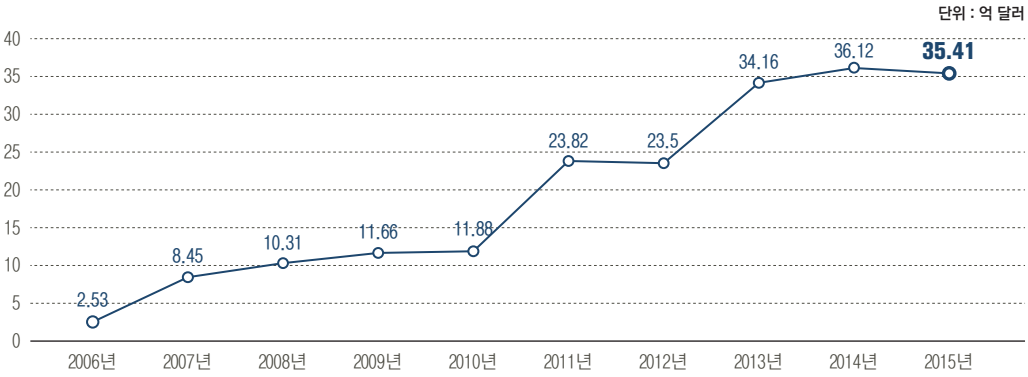




2015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Seoul A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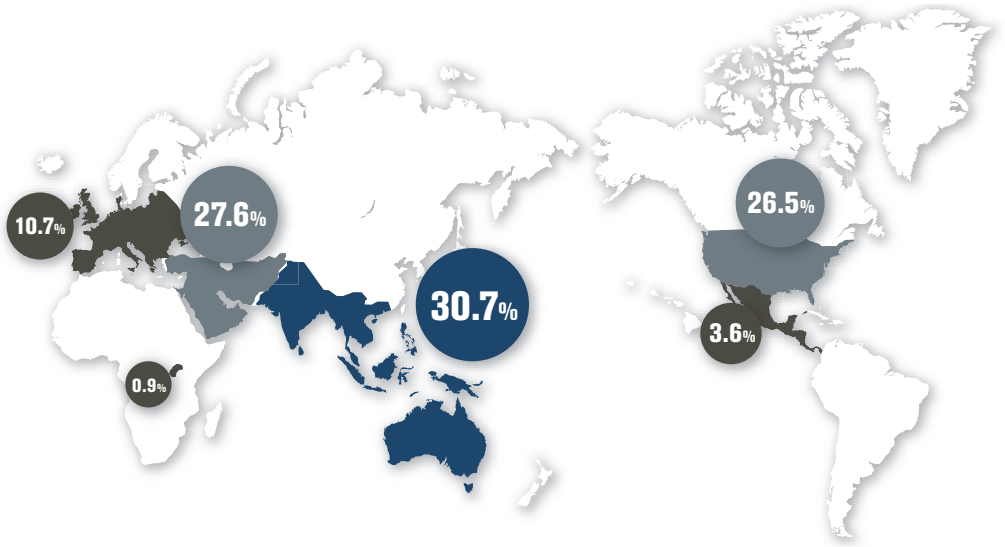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으로 2006년 이후 방산수출은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 왔으며, 2015년 방산수출 승인액 규모는 35.41억 달러로 3년 연속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연도별 방산수출 실적은 〈도표 4-15〉와 같다.

〈도표 4-15〉 방산수출 실적



북미,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 유럽, 남미 지역 등으로 방산수출 대상지역을 다변화하여 현재 방산수출 국가는 2006년 47개국에서 2015년 9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방산수출 기업도 2006년 47개에서 2015년 156개로 증가하였고, 수출 품목도 과거의 탄약, 소화기류 중심에서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다양해졌다.

〈도표 4-16〉 2010~2015년 권역별 방산수출 현황



향후에도 방위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매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신흥시장 대상국은 군사교류 및 경제지원과 연계하여 방산협력을 모색하고, 방산 선진국은 기술협력·대응구매·공동개발 중심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방위사업 혁신 노력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투명한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사업관리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추진방안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혁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 추진 중점 | 국방부는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민간자문위원 등으로 방위사업 혁신 TF를 구성하여 방위사업 비리와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4개 분야 44개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표 4-17〉 방위사업 혁신 분야별 추진 중점 및 과제

구 분	추진 중점 및 과제
투명한 사업추진 환경 조성	중점 :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사업 추진
	과제 :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 독립성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강화, 비리신고·포상 활성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	중점 : 소요기획·총수명주기체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과제 : 민간전문위원 참여 확대,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 무기획득 매뉴얼 작성,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전력운영사업 품목의 조달청 이관 확대, 통합개념팀(ICT[26]) 운영 내실화 등
방위사업의 경쟁력강화	중점 : 기술적 우위의 방위산업 실현
	과제 :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 추진, 방산물자 지정제도 정비, 국방규격 정비,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

| 투명한 사업추진 환경 조성 |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사업추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방위사업의 검증·조사, 비리 예방 등 전반에 대한 사전검증과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 요구성능 등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였고 비리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방위사업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과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영향력과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대령 이상 군인에 대해서는 전역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만 근무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였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단계별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 | 첨단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방위사업은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정보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매뉴얼을 구체화하는 등 전문 인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관련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국방획득 분야 근무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26) Integrated Concept Team

있으며, 공무원 충원 시 기술직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방위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2018년까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 방위사업의 경쟁력 강화 |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최적의 무기체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저가 위주의 낙찰제도를 개선하여 성능을 우선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활성화 및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체상금[27]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27)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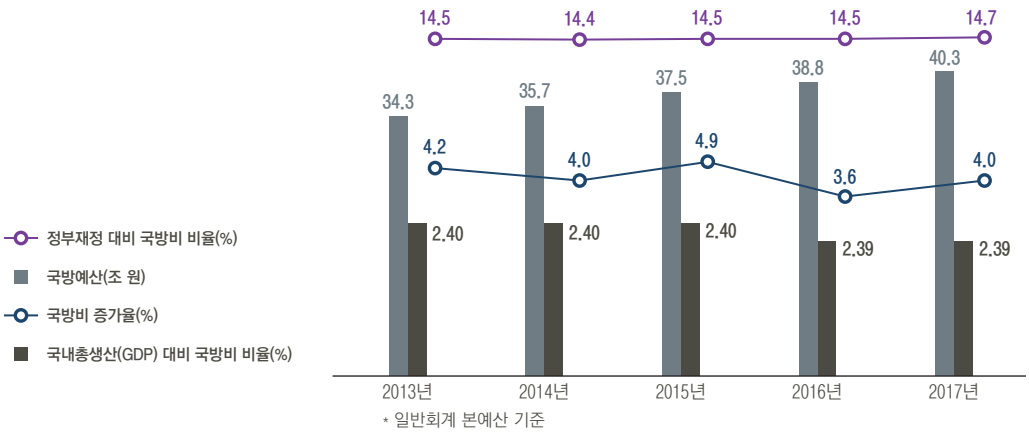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방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와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방비의 현실

국방비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국방비 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속되는 군사위협, 주변국의 군비 경쟁 가속화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가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등의 이유로 적정 국방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 정부재정 대비 1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표 4-18〉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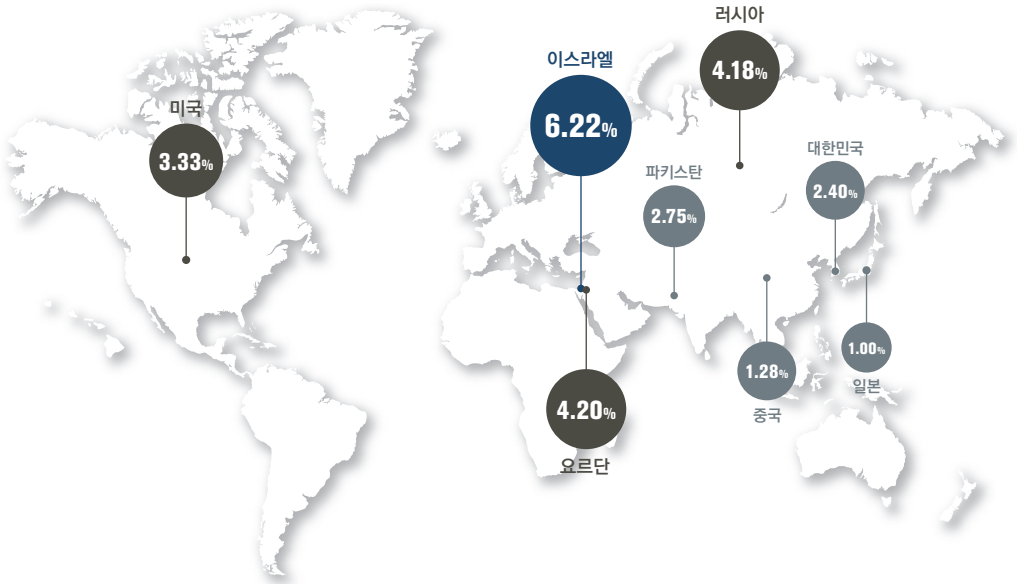


*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의 정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 안보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요르단 등 안보상황이 불안한 나라들은 국내총생산(GDP)의 4~6% 내외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5년 기준 세계 평균수준인 2.14% 보다는 높지만 이스라엘, 요르단, 파키스탄 등 주요 분쟁국이나 대치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도표 4-19〉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 2.)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주변국은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고, 북한은 4차·5차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규탄과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보·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법정경비, 필수기본경비, 계속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국방비 증가율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핵·WMD 위협과 다양한 도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국방비 확보가 필요하다.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 2017년 국방예산 | 2017년 국방예산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전년 예산 대비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2조 1,970억 원이며,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8조 1,377억 원이다. 2017년도 국방예산은 〈도표 4-20〉과 같다.

〈도표 4-20〉 2017년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포함			증가율(%)
계		38조 7,995	38조 8,421	40조 3,347	1조 5,352	4.0
전력운영비	소 계	27조 1,597	27조 1,597	28조 1,377	9,780	3.6
	병력운영비	16조 4,067	16조 4,067	17조 1,464	7,397	4.5
	전력유지비	10조 7,530	10조 7,530	10조 9,913	2,383	2.2
방위력개선비		11조 6,398	11조 6,824	12조 1,970	5,572	4.8

국방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 1,377억 원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 등 군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장비 정비비, 수리부속, 연료 등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서북도서 요새화, GOP 철책과 전술도로 보강 등 전방 지역의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전장 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 구축,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 확대 등에 최우선 투자하였다.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실내체육관·풋살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독서카페 설치 등 병영문화 시설 확대에 예산을 반영하였다.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2017년에도 9.6% 인상하여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완료하였다. 장병들의 위생환경과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야외훈련장 화장실을 전면 개선하고,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하절기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 1,970억 원으로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 29개 사업에 1조 6,976억 원을 반영하였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40개 사업에 3조 4,734억 원을 편성하여 부대개편 시기와 연계한 국방개혁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대형공격헬기, 호위함, F-35A 등 첨단전력을 확보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래 신무기와 신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 |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국방개혁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해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이면서 장병 복지 향상, 간부 증원 등 병력 유지비용과 첨단장비 운영 확대에 따른 군수지원 소요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의 총 재원은 226.5조 원으로 국방중기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재원을 현실화[28]하여 중기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7%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다.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하여 개별 전력의 물량을 축소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력화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중복·분산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다.

28)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연평균 7% 증가, 총 재원규모 232.5조 원) 대비 6조 원 감소

〈도표 4-21〉「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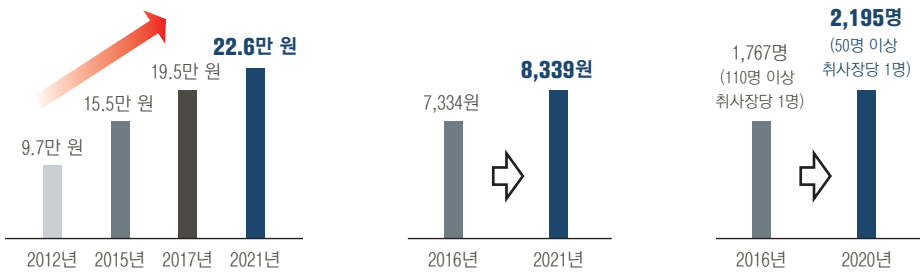
단위 : 조 원

구 분	2016년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규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국방비 (증가율)	**38.8 (3.6%)**	**41.0 (5.6%)**	**43.2 (5.4%)**	**45.4 (5.1%)**	**47.5 (4.6%)**	**49.4 (4.1%)**	**226.5 (5.0%)**
전력 운영비 (증가율) (점유율)	(27.2) (2.7%) (70.1%)	(28.3) (4.2%) (69.0%)	(29.5) (4.3%) (68.3%)	(30.6) (3.8%) (67.4%)	(31.8) (3.7%) (66.9%)	(32.9) (3.6%) (66.6%)	(153.1) (3.9%) (67.6%)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점유율)	(11.6) (5.7%) (29.9%)	(12.7) (9.0%) (31.0%)	(13.7) (7.8%) (31.7%)	(14.8) (7.9%) (32.6%)	(15.7) (6.4%) (33.1%)	(16.5) (5.2%) (33.4%)	(73.4) (7.3%) (32.4%)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현존전력의 능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GP·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경계시설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학화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F-35A, 공격용 헬기 등 핵심 무기체계에 대한 적정 군수지원을 보장하여 전투력 발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과학화 훈련 장비와 훈련장 소요를 반영하고, 예비군훈련 여건 향상을 위해 예비군훈련 실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29]하고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고, 민간조리원 운영을 확대하며, 장병 체감형 군수품 품질을 개선하는 등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 개선 주요 계획은 〈도표 4-22〉와 같다.

〈도표 4-22〉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 개선 주요 계획



29) 1.2만원(2016년)에서 3만원(2021년)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전·평시 외상 및 전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요도 적극 반영하였다.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를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병력 및 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킬체인 전력 확보에 5.4조 원을 배분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핵심시설 방어,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확보에 2.5조 원을 반영하였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확장된 작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전력을 보강하고 전술제대까지 데이터·영상 전송이 가능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3조 원을 배분하였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수상 및 수중작전능력을 강화하며, 북한 전 지역에 은밀침투·타격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는데 24.1조 원을 배분하였다.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2021년까지 9.2%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하였다.

4. 국방경영 효율화

| 국방 재정개혁 추진 | 선진 경영기법을 국방 분야에 확산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전력운영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와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4년에는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을 국방 분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인력 및 조직 효율화, 기준 및 절차 등 제도개선, 국방재정 효율화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15년부터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국방재정개혁 추진단'으로 전환하여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중에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운대 근무지원단을 창설하여 자운대 지역 17개 부대에서 중복·분산 운영해오던 전투근무지원 업무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력·예산·장비·시설분야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급여 지급체계 개선을 통해 연례적으로 발생하

던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국방예산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집행률이 저조했던 방위력개선 분야 시설사업을 전력운영분야 시설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재정개혁 분야를 방위력 개선분야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력증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소요가 결정된 전력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전력사업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국방 시설분야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편제 관리체계[30]를 도입하여 사단급 부대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부대별 시설관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 국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문서체계를 최적화하고, 무기체계 신속획득제도(Fast-Track)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 국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원리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31]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시범 운영한 이후 2016년까지 정비·보급·의료·연구·인쇄·정보화 등 6개 분야 18개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생산성 증가,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군인쇄창은 2009년 지정 후 오류 인쇄율을 1.68%에서 0.41%까지 감소시켰으며, 국군수도병원은 민간위탁 진료율을 8.5%에서 2.97%까지 낮추고 2015년 종합병원으로 인증받는 등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들은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71건의 특허출원, 59건의 대외인증 등을 획득하여 기관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 및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종전부지 적정가치 확보 |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재정여건과 국방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부대개편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군부대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

30) 국방조직정원을 근거로 각 단위부대별 시설물의 적정 면적을 산출함으로써 부족시설 확보, 사업 우선순위, 유지보수 예산 산출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31)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여 처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향후에도 군부대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군용지의 적정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5.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방부는 5년 단위 민간개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수, 시설관리, 복지시설 운영 등 전투지원 분야에 민간 인력, 자본, 시설, 경영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민간개방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보급부대가 담당하던 세탁, 폐품 수집, 물자 정비, 부식 수송 및 분배 등 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장병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병복지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민간의 성과관리 기법이 적용된 성과기반군수지원(PBL)[32] 제도 도입을 통해 부품 조달기간이 단축되고 장비 가동률이 향상되었으며, 에스코(ESCO)·와스코(WASCO)[33] 사업을 추진하여 초기투자 없이 노후된 에너지·수도시설 등을 개선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병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전투근무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면서 장병복지 증진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

32) 군은 목표가동률 등 성과측정지표를 제시하고 계약업체는 정비 및 수리부속 지원을 전담 수행하여, 그 수행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33)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초기 재정투자 없이 군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절감예산으로 사업비를 상환하게 됨.(ESCO : Energy Service Company, WASCO : Water Saving Company)

〈도표 4-23〉「민간개방 기본계획(2016~2020)」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민간 위탁	보급부대 근무지원 분야 민간위탁, 군 시설관리 민간위탁, 부식품 배송 민간위탁 등
경영기법 및 인프라 활용	의약품 주공급자제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
민간참여 유도·민자 유치	군수품 상용화, 에스코·와스코 사업,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군 주거시설 및 정보화 분야 민간투자사업(BTL/BTO) 등
민간인력 활용	병사식당 민간조리원 활용 등

제5절 국방정보화 발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장관리와 국방경영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목적별, 기능별, 수준별로 연계하여 전장을 가시화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보통신 기반환경을 조성하며 기능 중심의 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발전

| 국방정보화 기본 추진계획 발전 |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은 국방비전과 목표를 국방정보화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보화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정보화의 목표는 다양한 작전요소들 간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적시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임무 달성 효과를 최대화하고, 국방경영 분야에서 사용자 맞춤형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여 국방자원관리와 작전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아키텍처를 고도화하고 IT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추진체계를 발전시키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처리 위주의 시스템에서 서비스 중심의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며, 대용량 정보유통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통신기반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IT신기술의 적기 도입 추진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가상현실 등 민간의 발전된 IT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국방실험사업과 범부처 IT 융합 R&D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실험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IT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군 적용가능성을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전군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중 대대급 주둔지 경계력 보강을 위해 구축된 포병대대 스마트 경계체계 등 21개 과제는 군 적용가능성이 검증되어 전군에 확대하고 있다. 2016년에

는 대테러 지휘통신 보강을 위한 이동형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가 국방 실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범부처 IT융합 R&D 협력 사업은 국내 우수 IT 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력지원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국방경영 및 병영문화 혁신,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 간 IT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훈련 및 부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육군훈련소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등 총 18개의 협업과제를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무인기, 3D 프린팅 등 IT 신기술을 국방에 접목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2. 정보통신 기반환경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 정보통신 기반환경 고도화 | 고속·대용량의 전략·전술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정보통신 기반 환경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1년에 구축된 국방광대역통합망의 성능을 개선하고, 용도별로 구축된 정보·작전망 등 유선 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면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34]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전술상황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호 운용성 보장 | 광범위한 국방업무를 효율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 군수, 동원, 의료 분야 등 주요 기능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전의 특징인 네트워크 중심전(NCW[35])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시, 지휘통제, 타격체계 및 자원정보체계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모든 전장요소 간 상호운용성[36]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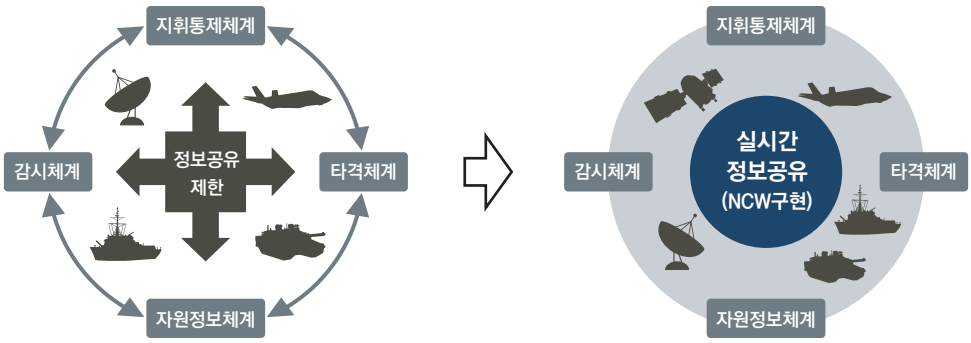
---

34) 1994년 인터넷기술처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규약(IPv6 : Internet Protocol version 6)

35) Network Centric Warfare

36) 지·해·공 전력 및 전자요소 간에 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교환·운용할 수 있는 특성

〈도표 4-24〉 국방상호운용성 개념 및 비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표준[37]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 연동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제표준의 상호운용성 평가 인증제[38]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신 정보기술발전과 상호운용성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다.

37) 전력지원체계 개발 시 체계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보기술 표준

38)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개발 과정에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구현 여부를 평가하여 국방부가 인증하는 제도

제6절 국방군수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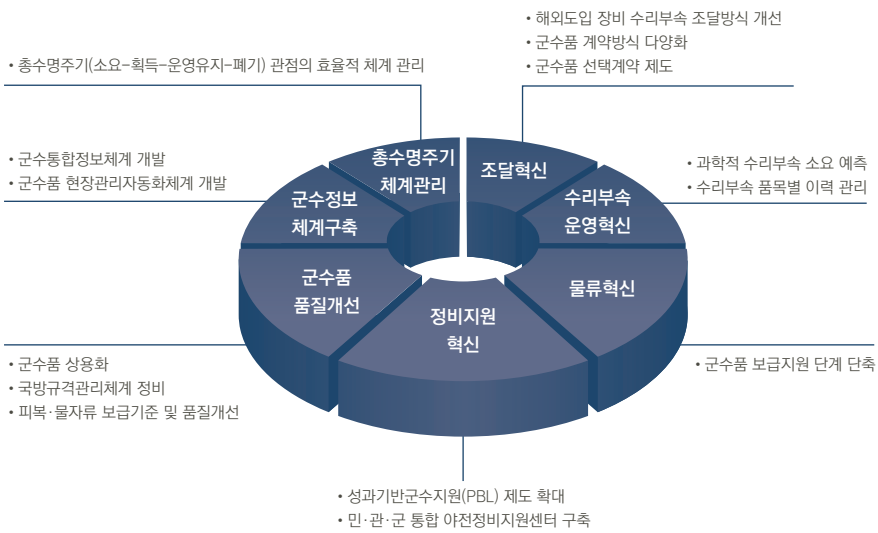
장비유지비의 지속적인 증가, 해외구매물품의 적기조달의 어려움, 국고채 폐지 및 군수품 공급망의 약화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군수분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군수혁신을 통해 소요판단, 생산과 연구개발, 조달, 보급, 정비, 수송 등 다양한 군수분야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1. 추진 배경 및 방향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장비정비 등 유지소요가 증가하고, 해외구매 장비 수리부속의 적기 조달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방군수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조달혁신, 수리부속 운영혁신, 물류혁신, 정비지원혁신, 군수품 품질개선, 군수정보체계 구축, 총수명주기체계관리 구축의 7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탄약지원, 전·평시 군수지원일원화, 군수인력 최적화의 3개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표 4-25〉 군수혁신 개념도



2. 조달 및 수리부속 혁신

| 조달혁신 |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각급 부대에 공급하기 위해 조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적기 조달이 제한되는 해외도입 장비의 수리부속에 대해서는 무응찰품목 조달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해외업체로부터 적기 조달이 제한되는 품목을 분석하고, 원인별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달 성공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군수품의 품목별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과 매년 재계약으로 인한 계약행정 기간 단축을 위해 장기계속계약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수요군의 수요에 맞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39]를 도입하였다. 수리부속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도액성과계약'도 적용하고 있다.

| 수리부속 운용혁신 | 수리부속의 획득·운영·재고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리부속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수리부속 소요산정 모델을 적용하여 주요 장비별 수리부속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장기간 미사용 중인 수리부속과 재고고갈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수리부속 재고의 총량은 줄이면서 수요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재고 수준을 다시 설정하고, 수리부속 품목별 이력을 관리하여 중앙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조정·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물류혁신 및 정비지원혁신

| 물류혁신 |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투부대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는 사용자인 전투부대가 청구한 군수품이 보급될 때까지 사용자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군수품 보급지원 단계를 개선하고 있다. 전투부대가 품목별 우선순위와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품을 청구하면, 군수지원부대가 각 청구부대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여 평균 4~5단계였던 보급지원 단계를 2~3단계로 단축하고 사용자 대기기간을 평균 10일 이내

39) 군수품 구매시 품질과 성능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2개 이상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중에서 수요군이 계약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선택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납품하게 하는 제도

로 단축하게 된다. 201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물류 속도가 40% 이상 향상되고 수송 비용도 50%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각 군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전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정비지원혁신 | 평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전쟁지속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투장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 증가됨에 따라 군과 민간의 특화된 정비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요 장비의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PBL)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수리부속 조달기간이 평균 73% 단축되고 장비가동률은 3% 향상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항공장비 위주에서 자주포, 전차, 함정엔진 등 지상과 해상장비로 대상 장비를 확대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장비뿐 아니라 향후에는 장차 도입될 주요 무기체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민간 정비업체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정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에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19년 강원도에 동부센터를 설치하여 정비기간 단축 등 전투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4. 군수품 품질개선

군수품 사용에 대해 장병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민간업체의 군수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군수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수품 중 상용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민간의 우수 상용품을 시범 사용 후 군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신속히 구매·보급함으로써 군수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복수의 조달원을 확보하는 등 군수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40)]

장병들이 자주 사용하는 피복·물자류 등에 대한 보급기준과 품질을 개선하여 장병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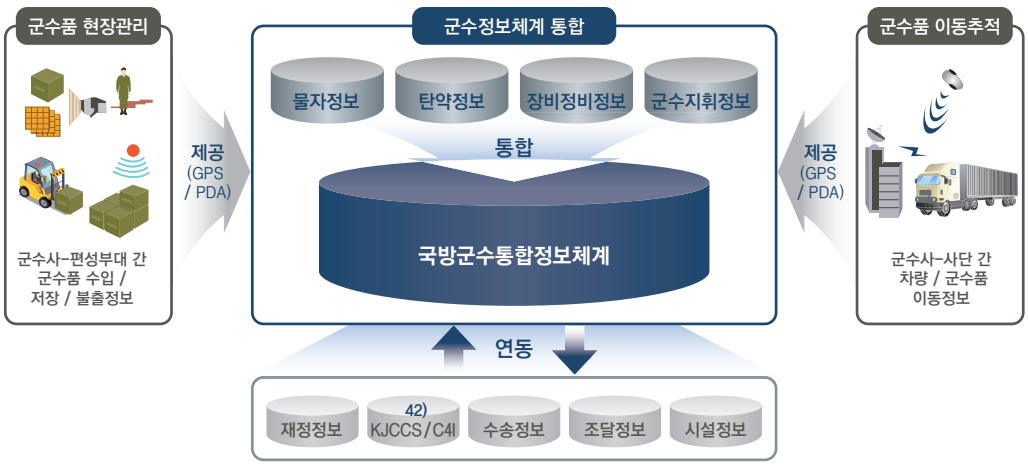
40) 2016년 군수품 상용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액 : 총 640억 원(상용차량 구매에 따른 절감액 610억 원, 일반품목의 상용전환에 따른 절감액 30억 원)

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투 효율성도 제고하고 있다.

5. 혁신 기반 구축

| 군수정보체계 구축 |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군수지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수통합정보체계는 각 군 물자, 탄약, 정비지원 등을 통합한 정보체계로서 군수지원 전 분야[41]를 포괄하고, 전장관리체계 및 민간체계와 연동되도록 개발되어 전·평시 적시적인 정보제공뿐 아니라 군수정보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군수통합정보체계 개념도는 〈도표 4-26〉과 같다.

〈도표 4-26〉 군수통합정보체계 개념도



군수품의 수입, 검수, 저장, 출고 등의 과정에 바코드 자동인식과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군수품 현장관리자동화체계'도 개발하고 있다. 2014년에 16개 보급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용자 불편 및 개선소요를 반영하여 전군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을 보완·수립하여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41) 소요, 예산, 조달, 자금관리, 재산, 수불, 수송, 저장,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 목록·규격 등 15대 분야를 말함

42)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계획이다.

| 총수명주기체계관리 추진 | 무기체계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주기과정에서 성능·비용·기술·정보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야전부대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제원을 분석하여 유사 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및 환류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6. 전력지원체계 발전

장비·물자·급식·피복 등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전력지원체계[43]는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와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로서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기체계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전력지원체계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획득제도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획득업무 기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전력지원체계 업무분야의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획득제도 분야는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소요 창출을 위해 중·장기 획득전략을 수립하고 기획-계획-예산편성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기획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 우수업체의 참여 유도 및 타 정부부처의 R&D 역량 활용과 산·학·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에 추가하여 업체투자연구개발 및 민·군기술협력 확대 등 연구개발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 복잡한 획득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획득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품목 특성에 적합한 시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획득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실시간 사업진행 현황 관리 및 사업 기관 간 개발정보 공유를 위해 획득사업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방규격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제정된 지 20~30년이 지난 낙후되고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44]하여 군수품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43)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물자, 일반시설, 자원관리, 기반체계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며, 2012년 비무기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44) 총 21,599건의 규격 중 11,017건(51%) 대상으로 공개 확대를 추진 중(2013년 4,143건 → 2014년 4,623건 → 2015년 8,961건 → 2016년 11,017건)

획득업무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획득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과 상용품을 발굴하여 전력지원체계에 적용하는 민·군 기술협력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획득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획득업무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전력지원체계 업무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장병들에게 더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제공할 것이다.

7. 국제군수협력 강화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자산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우방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군수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과 1979년에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분과위원회인 한미군수협력위원회(LCC[45])를 개최한 이래 2016년 제4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수리부속, 탄약, 유류지원 등 양국의 군수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1988년에는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연합훈련이나 합동임무 수행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유류, 수리부속, 용역 등의 긴급 부족소요에 대해 상호 군수지원을 하고 있다. 1991년에는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을 체결하여 전시에 대한민국에 전개될 미 증원군의 신속한 작전임무 수행을 군수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격년제로 공병, 정비, 보급 등 12개 분야에 대한 전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절차도 숙달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시지원 12개 분야에 대한 비용분담 원칙을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규정할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원할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에 필요한 군수지원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국 등 우방국과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지금까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우방국은 2016년에 「군사작전 및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독일을 포함하여, 태국, 뉴질랜드, 터키,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전 세계 15개 국가이며, 그 체결 현황은 〈도표 4-27〉과 같다.

45) ROK-US Logistic Cooperation Committee

〈도표 4-27〉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가(체결년도)
미국(1988), 태국(1991), 뉴질랜드(2007), 터키(2008), 필리핀(2009), 이스라엘·호주(2010), 캐나다(2010), 싱가포르·인도네시아(2011), 캄보디아·스페인·영국(2012), 몽골(2013), 독일(2016)

이 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주요 우방국과 정례적인 군수협력회의를 통해 당사국 간의 군수현안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PASOLS[46])와 같은 다자간 군수협력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우방국에 전략적으로 양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용 군수품을 양도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양도 품목도 함정, 항공기, 기동·공병 장비에서 화력장비, 탄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군수품 양도 현황은 〈도표 4-28〉과 같다.

〈도표 4-28〉 군수품 양도 현황

시 기	지 역	양도품목
1993~1999	아시아	함정, 항공기, 차량, 장구류 등
2000~2009	아시아, 남미	함정, 항공기, 공병장비, 기동장비 등
2010~현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함정, 공병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상륙장비, 탄약 등

46)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 Seminar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30
제2절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136
제3절 해외파병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150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6년 10월)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는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미래지휘체제로 전환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분야 협력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다.

한미는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5년 「한미관계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 차원을 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SCWG[1])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우주상황 인식 서비스 및 정보공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우주에서의 임무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주 작전 연합훈련 및 한미 우주분야 고위급 토의식연습(TTX[2])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공군 우주 교육과 훈련에 한국 장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1)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2) Table Top Exercise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3])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보교환 운영예규를 체결하여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사이버 관련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한미사이버실무협의체(ROK-US Cyber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국방사이버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 관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핵심현안 논의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 한미 양국은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연합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4]) 연습/독수리(FE[5])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6]),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7],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8] 등의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운용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협의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전술적 수준에서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였다. 한미 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제대급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 및 중견간부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2사단 창설 100주년 및 한미연합사단 창설 기념 행사(2016년 12월)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4차·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3)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4) Key Resolve
5) Foal Eagle
6)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7)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연례적으로 양국 합참에서 개최(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8) 다양한 한미 국방 협의체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후 미 공군의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노스캐롤라이나 핵잠수함, 스테니스 항모전단 등을 전개하여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였다.




B-52와 F-22 한반도 전개

향후 주기적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부터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통제한다.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북핵·WMD[9]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초기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 설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조건[10]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11]을 승인하였다.

9)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0)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3가지는 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은 보완·지속능력 제공 ②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필수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임.

미 B-1B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11) 기존의 전작권 전환 기준문서인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문서로 전작권 전환 전까지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군사적 준비방향과 일정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한미 연합 이행계획임.(COTP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은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근간으로 한 조정위원회, 한미군사위원회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등 연합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 전환 시점,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체계 구축과 한미연합사령부(가칭 미래사령부) 편성 등을 빈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 주한미군 기지이전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크게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12])' 사업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13])' 사업으로 진행된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 건설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92% 정도 진척되었다. 2016년 5월 용산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 선발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까지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주

12) Yongsan Relocation Plan

13) Land Partnership Plan

둔경비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14]에 따라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유지 경비를 부담한다. 미국측은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1991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15]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오고 있다.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4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년 분담금 규모를 최대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16]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7]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환원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업체에 현물로 지급되므로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도 100% 현물로 사업시행자인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므로 집행액 대부분이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원활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14)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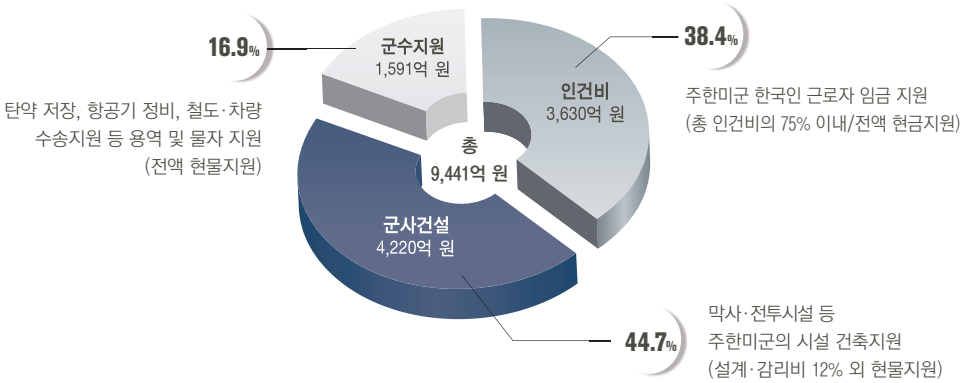
15)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체결(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

16) 방위비분담금은 2015년 9,320억 원(2013년 물가상승률 1.3% 적용), 2016년 9,441억 원(2014년 물가상승률 1.3% 적용)을 지원

17) ①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②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체제 구축 ③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⑤ 방위비 예산편성 및 결산 투명성 강화가 주요 내용임.

〈도표 5-1〉 방위비분담금 배정 현황

2016년 기준



|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 우리 정부와 군은 정기적으로 주한미군 초청행사와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이 태권도 캠프, 템플 스테이, 고궁·박물관 투어 및 유대강화 행사를 비롯한 각종 한국 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주한미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다양한 민간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동맹 학술세미나와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미동맹 전우 마라톤 대회, 한미 군악대 합동연주회, 한미동맹 콘서트 등도 개최되어 양국의 화합을 다지기도 하였다.

주한미군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지역주민 대상 영어교실,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에 처음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주한미군 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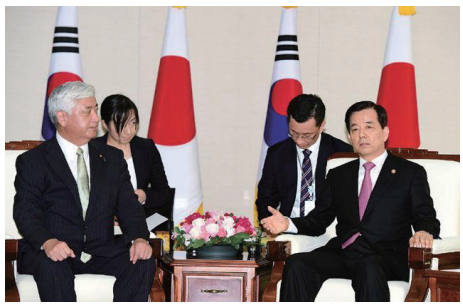
제5장

제2절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방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강화

| 한일 국방 교류협력 |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2015년 10월)

양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제16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와 인도적 재난 구호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서울안보대화 계기 정례적으로 한일 국방차관 양자대담을 실시하여 양국 국방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국방정책실무회의,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 및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국방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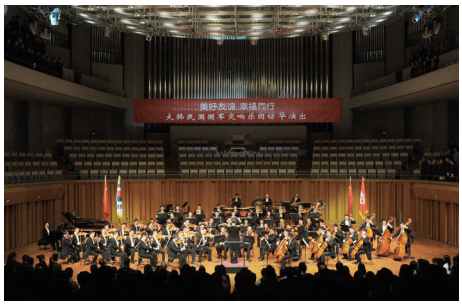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격년제로 수색 및 구조훈련(SAREX[18])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재난 구호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중 국방 교류협력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19] 특히 2013년과 2014년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한중 공동성명'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포괄적·다층적·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6월 우리 합참의장은 중국 총참모장과 회담하였으며, 2015년 2월 국방부장관은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중국군 유해 추가 송환 등을 포함한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에 육·해·공군 3명의 대표단이 참관하기도 했다.



국군 교향악단의 중국방문 공연(2014년 3월)

2015년 12월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현안에 대한 협력과 소통 채널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우리 합참과 중국 총참모부 간 회의,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중국군 유해송환, 국군 교향악단의 중국방문 공연, 세계군인체육대회, 군사 연구기관 간 학술회의 및 교육기관의 위·수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8) Search and Rescue Excercise

19) 우호협력 관계(1992년 수교시), 협력동반자 관계(1998년), 전면적 협력 관계(2000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2003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

| 한러 국방 교류협력 | 한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에너지·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08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2013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2016년 9월 G20 계기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러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2013년 3월 우리 국방부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군사협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5년 11월에는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차관이 전략대회를 실시하여 국방부 간 고위급 회의체를 정례화하였다.

이외에도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교류, 교육협력,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은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1994년 체결한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한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따라 양국 공군 간에 직통망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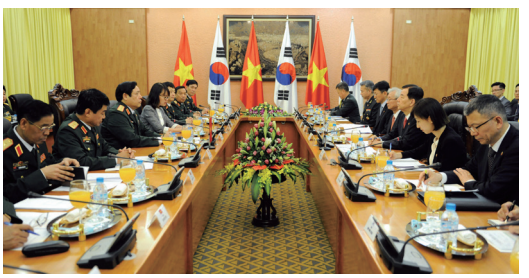
향후에도 러시아와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여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국방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는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을 통해 국방·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개최된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이버안보 협력, 군사교육 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PKO[20]) 협력 등에 합의하였으며, 9월 개최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고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상호 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유엔 국제평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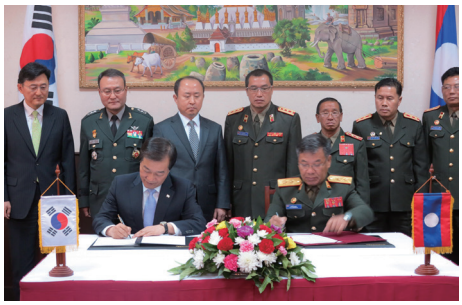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2015년 5월)

20) Peace Keeping Operation

지활동(PKO)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5년 9월에 개최된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군사교육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한·필리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포괄적 군사정보와 비밀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6년 11월 필리핀 국방부장관 방한 계기에 개최된 한·필리핀 국방장관대담에서는 상호 호혜적 방산협력 확대에도 합의하였다.

2016년 6월 우리 국방부차관이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에 합의하였고, 군사교육 교류,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지뢰·불발탄 제거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9월에는 한·캄보디아 국방장관대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국방협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한·라오스 무관부 개설 의향서 서명(2016년 6월)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이외에도 상호 무관부 개설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5년 11월 주한 캄보디아 무관부가 개설되었고, 2016년 8월에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우리 국방무관을 파견하였다. 2016년 6월에는 라오스와 상호 무관부 개설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6월과 8월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핵심 중견국인 호주, 뉴질랜드와는 군 고위급 인사 교류 계기에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5년 9월 개최된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부장관은 2014년 4월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호주 간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명」에 근거하여 연합훈련, 군사교육교류, 사이버안보 등 9개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담은 '한·호주 안보·국방 협력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이어 개최된 제4차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호주 군사교육교류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양국이 군사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뉴질랜드와는 2014년 5월에 「한·뉴질랜드 국방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9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대담에서는 국방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군사교육교류, 연합훈련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서남아시아 |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는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 개최된 한·인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교류와 호혜적 방산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2015년 인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군사교육교류 등 협력 강화와 양국 외교·국방 차관회의 개설에 합의하였다.

2015년 10월 국방부장관은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에 참석한 파키스탄 방산장관과의 대담을 통해 한·파키스탄 방산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고, 12월 개최된 한·파키스탄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는 방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향후에도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군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정례협의체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구(舊)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21]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부터 유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이 중 5개국은 독립 이후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5년 4월 「한·우즈벡 군사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매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는 2013년 12월 「한·아제르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방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장교 1명이 한국 군사교육기관에 최초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한·투르크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체계적인 국방·방산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정례협의체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실질적 국방협력을 위해 2015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 9월 아제르바이잔, 2016년 8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민국 무관부를 각각 개설하였으며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관부도 2016년 1월 개설되었다.

---

21) 현재 러시아,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9개국이 회원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공식 참관국임.(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몽골과는 인사·교육·학술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칸퀘스트(Khaan Quest) 훈련[22]에 공동 참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 중동 |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5월에는 국방부 개발관리국장이 각각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 고위급 인사와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5년 9월 개최된 제4회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총참모장은 우리 국방부차관과 대담을 갖고 군사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2016년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국방과학기술국장이 방한하여 한·사우디아라비아 국방정책실무회의에 참석하고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각 고문이 우리 국방부장관을 예방하여 양국의 국방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우리 국방부 대표단은 요르단을 방문하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양국의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6년 7월과 11월에는 카타르와 UAE 국방부장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안보정세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 주요 국가와 군 고위급 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유럽 | 군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월 개최된 한·영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영국군의 6·25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국방·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한국 오산기지에서 한국과 영국 공군이 함께 참여한 최초연합훈련으로서 한·미·영 공군의 연합훈련이 실시되었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2016년 11월)

22) 2006년 미국 몽골 양자훈련에서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고 유엔 표준 훈련 모델 등을 연습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으며, 이 훈련은 양국 국방장관회담 시 논의되었던 미래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5년 3월 개최된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교육·훈련 교류와 방산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우리 국방부차관이 폴란드·체코·헝가리 국방부차관과 대담을 갖고 유럽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유럽 국가와의 실질적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에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방·안보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특히 2016년 6월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사이버안보,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15년 2월과 5월에는 각각 체코, 불가리아와 국방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2월에는 헝가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럽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12월 개최된 제1차 한·비세그라드 그룹[23]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3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위기관리분야 훈련에 우리 국방부 대표단이 최초로 참가하였고, 2015년 5월 아시아 안보회의(ASS)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대담을 가졌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2016년 12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 차원에서 북핵 특별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성명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 5월에 방한한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우리 국방부장관이 대담을 가졌고, 9월에는 제1차 한·유럽연합 안보국방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관리, 사이버안보 등 분야별 협력 사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 양자 국방협력을 성숙시켜 나가는 한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중유럽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

23)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를 의미하며, 1991년 최초 회의가 헝가리 비세그라드시에서 개최된 데서 명칭 유래

| 중남미·캐나다 | 중남미 지역 국가 및 캐나다와는 경제 분야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방 분야에서도 군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국방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13년 7월과 11월 콜롬비아 국방부차관과 페루 국방부장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차관, 장관과 대담을 갖고 국방·방산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4년 10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제3회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페루 및 칠레 국방부차관과의 대담에서, 페루와는 진행 중인 방산현안을 점검하였고, 칠레와는 정례협의체 개설과 군사교육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하였다. 콜롬비아와는 2015년 3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국방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2015년 4월 페루 현지에서 개최된 훈련기(KT-1P) 출고 및 비행 행사에서 양국 대통령은 KT-1P의 우수성을 함께 홍보하였고, 우리 대통령의 칠레 방문 시에는 「한·칠레 방산·군수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파라과이 국방장관 방한(2016년 1월)

2016년 1월에는 파라과이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파라과이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2015년 9월 제4회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나다 국방부 수석 차관보는 우리 국방부차관과 대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국방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주요국들과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프리카 | 2015년 10월 방한한 보츠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년 10월 개최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우간다 국방차장은 우리 국방부차관을 예방하고 양국의 국방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6년 5월에는 우리 국방부차관이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를 방문하여 국방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군사교육, 대테러,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다자안보협력 강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 관심사인 테러, 해적,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분야의 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아태 지역 내 다자안보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미주 지역 최대 다자안보협의체인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에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무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자안보회의에 참여하여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자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양자·3자 등 다수의 개별회담을 개최하여 주요국과의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가 참여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는 〈도표 5-2〉와 같다.

〈도표 5-2〉 국방부가 참여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Track 1[24] 다자안보회의	Track 1.5[25] 다자안보회의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 동경방위포럼(TDF)	• 서울안보대화(SDD) • 아시아 안보회의(ASS) •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D) •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향산포럼 • 동북아 협력대화(NEACD)

| 서울안보대화(SDD) | 국방부는 2012년부터 아태 지역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 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

24)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
※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RF(ASEAN Regional Forum), TDF(Tokyo Defense Forum)

25)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ASS(Asia Security Summit), JIDD(Jakarta International Defense Dialogue, HISF(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를 통해 군사적 공동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아태 지역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차원의 다자안보 협력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여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세계적인 안보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더욱 안전한 아태지역을 위한 협력-과제와 해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아태 지역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의 성공적인 발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회 때는 유럽 국가와 국제기구(20개 국가, 3개 국제기구가 참여)까지 참석하였으며, 제3회 때는 24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국방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특히, 2014년 제3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사이버워킹그룹 회의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 사이버안보에 대한 다자안보협력 대화체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015년 제4회 서울안보대화에는 30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다자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안보대화 비전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6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개막 기조연설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및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2016년 제5회 서울안보대화는 개최 5주년을 맞아 전 세계 34개국, 5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비세그라드 국가(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프리카의 우간다, 에티오피아에서 차관급 당국자가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안보대화체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6 서울안보대화(2016년 9월)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26])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원칙 기반의 국제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복합 안보 위기 :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극단

26)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2016 서울안보대화

주의 세력의 테러, 민군겸용기술의 군사목적 활용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안보위협과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본회의 1(주제 : 북한 비핵화와 국제 공조)'에서는 한·미·일·중·러의 국방 당국자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북한에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한·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와 미국·일본·우간다·에티오피아 등 20여개 국가와의 양자대담에서는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 의지도 재확인하였다.



한·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2016년 9월)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다자안보협력의 장'으로서 서울안보대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국방부는 2010년부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매회 참가하고 있다.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2015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중인 국방부장관(2015년 11월)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의 6개 분과회의 중 하나인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분과회의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캄보디아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싱가포르와 해양안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아시아 안보회의(ASS) | 우리 국방부장관은 아태지역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아시아 안보회의에 2004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15년 제14차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오찬 연설과 개별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조하였으며, 2016년 제15차 회의에서는 본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고 역설하여 참가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 국방부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2003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해양안보 분야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4년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D)에 우리 국방부차관이 참가하여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의 성공적인 구출 작전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보여 주었다.

아태 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중국에서 개최하는 향산포럼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년 참가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동북아협력대화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자안보협력에 적극 참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 국제 비확산 활동[27] |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군축·비확산 협약과 다자 수출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회원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도 가입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공동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7)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 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non-proliferation)

재래식 무기 관련 다자 수출 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무기거래조약(ATT[28])에도 가입하여 무기 수출 및 이전 통제 등 비확산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규범으로서 2013년 4월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유엔 안보리,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 의장국(2011-2013년)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국그룹(NSG) 의장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국제 대확산[29] 활동 |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30]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주도국 모임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도 가입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주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압류처분에 대한 토의와 해상차단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14년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매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최[31]하고 있다. 2016년에는 싱가포르가 주최한 토의식 연습과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와 차단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적재선박 차단을 위한 공중침투 훈련

28) Arms Trade Treaty

29)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거나 적의 사용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력(Counter-proliferation)

30)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201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 가입국간 정보의 공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불법무기 등의 수출금지, 합동작전 등을 포함(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31)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5년 뉴질랜드, 2016년 싱가포르, 2017년 호주, 2018년 일본, 2019년 한국 순서로 매년 개최

〈도표 5-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가 현황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소	싱가포르	한국	미개최	한국, 일본	UAE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AR)[32]을 매년 실시하여 생물학전 위협에 대비한 국가 통합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ountering WMD Committee)를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2) 양국의 40여 개 관계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범정부 생물대응연습

제3절 해외파병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중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2016년 11월 기준 약 1,100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파병활동[33]에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34])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6개 임무단[35]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 감시, 재건 및 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329명, 남수단 한빛부대 293명, 개인단위 파병 등 8개 지역에서 647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4〉와 같다.

33)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 비교

구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주체	유엔 주도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	파견국 주도
지휘통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	파견국 군지휘관
소요경비	유엔 부담	파견국 부담	파견국 부담

34)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35) 현재 아프리카에 9개 임무단(서부사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다푸르, 아브예이, 라이베리아, 남수단, 코트디부아르), 중동에 3개 임무단(레바논, 시리아 등), 유럽에 2개 임무단(코소보, 사이프러스) 남미에 1개 임무단(아이티), 아시아(인도·파키스탄)에 1개 임무단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8개국에서 약 12만 명을 파견하고 있음.

〈도표 5-4〉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2016년 11월 기준, 단위 : 명



| 레바논 동명부대[36] | 유엔은 1978년 유엔 안보리 결의[37]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38])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39]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9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와 학교 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주


고정초소 감시활동

36) 동쪽 나라에서 온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임.

37) 유엔 안보리 결의 제425호 및 제426호(1978. 3. 19.)

38)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39) 노후된 학교 건물 개보수, 도로 신설 및 개선, 주민 대상 의료지원 활동 등을 수행

해외파병

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5〉와 같다.

〈도표 5-5〉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작전활동	• 고정감시 작전 : 33,190회 • 레바논군과 연합 도보·기동정찰 : 3,780회 • 자체도보·기동정찰 및 EOD 정찰 : 38,384회
민군작전	• 현지 주민 의료지원 : 91,627명 • 가축진료 : 22,314두 • 컴퓨터·한글·태권도·재봉 교실 운영 : 5개 마을 • 주민 숙원사업 : 284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 레바논군 지원 : 79건

| 남수단 한빛부대[40] |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로부터 벗어난 수단에서는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41]



보르기지 방호벽 보강공사(2016년 11월)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나일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7km에 달하는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2015년에는 보르에서 망겔라에 이르는 12.5km를 보수하여 보르 지역과 유엔의 주보

40)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라는 의미임.

41) 남수단 파병은 소말리아(재건지원), 서부 사하라(의료지원), 앙골라(재건지원), 동티모르(치안유지 및 국경선 통제), 레바논(정전감시), 아이티(재건지원)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임.

급로를 개통하였다. 남수단 현지 여건에 맞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한빛농업기술연구센터와 한빛직업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6〉과 같다.

〈도표 5-6〉 한빛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재건지원작전	• 보르공항 주기장 확장(410m×110m) • 보르공항 활주로 보강공사(1.8km×45m) • 보르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장 신설(70m×70m), 헬기 정비고 신축(1동) • 보르~망겔라 도로 보수공사(125km), 보르~안이디 도로 보수공사(24km) • 종글레이주 종합쓰레기 처리장(2개소), 오수 처리장 건설(50m×50m, 3개소)
민군작전	• 의료지원 : 1만 6천여 명 • 르왈릿 초등학교 신축공사 • 백나일강 홍수예방 차수벽 설치 • 백나일강 차수벽 펌프실 신축 • 한빛농장 운영 : 망고·구아바 묘목 600주 식재 • 한빛농업기술연구센터 운영 : 113명 수료, 현재 4기 교육 중 • 한빛직업학교(토목 등 4개 분야) 운영 : 72명 수료, 현재 2기 교육 중
난민보호	• 난민 보호소 신설 • 총상환자 치료 : 819명 • 급수 및 배수지원 • 난민 보호소 방호벽 설치, 내부 도로 개설
유엔군 시설공사 지원	• 보르기지 숙소건설 : 동부지역사령부(35동), 에티오피아대대(35동), 직원숙소(30동), 네팔경찰기지(8동), 스리랑카병원(12동), 오수처리시설(4개소) • 보르기지 경계시설 보강 : 방호벽, 내부작전로, 고가초소, 유엔직원 대피호 설치(4개소, 16개동), 기지 사계청소(1.5km) • 기지 배수시설 개선 : 대형집수지 건설(4개소, 525kton), 배수로/도로보수(7.5km) • 피보르기지 직원숙소, 경계시설 보강(방호벽, 대피호, 소각장 등)

|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 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부대를 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수행하여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총 3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7〉과 같다.

〈도표 5-7〉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2016년 11월 기준, 단위 : 명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838호[42]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 파견하였다.

42) ① 회원국들의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 파견 촉구 ② 해적 퇴치를 위해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 사용 가능 ③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 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④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는 WFP(세계식량계획)의 식량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호송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령부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은 2016년 11월 기준 302명이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에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4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재외 국민 보호에 있어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 LNG 등 전략물자 주요 해상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9%가 아덴만 인근 해역을 통항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43]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2015년 4월)

〈도표 5-8〉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선박 호송		안전항해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476척	1,736척	11,555척	2,842척	386회(783일)	21회 / 31척
국민 보호					
아덴만 여명 작전(2011. 1.)		선장 및 선원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2011. 3.)		우리 국민 37명 리비아에서 몰타, 그리스로 철수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작전(2014. 8.)		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 리비아에서 몰타로 철수			
예멘 재외국민 철수 작전(2015. 4.)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 예멘에서 오만으로 철수			

43) 중국의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대해적작전에 참여 중이며, 일본은 2009년부터 함정 2척과 초계기 2대를 대해적작전에 투입 중이며 2014년에는 함정 1척을 CTF-151에 제공하고 2015년에는 CTF-151사령관직 임무를 수행하였음.

청해부대 무사트 훈련

|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여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국방교류협력활동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 239명의 승객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되자 말레이시아는 우방국에 항공기 잔해 탐색을 요청하였다. 비록 해상탐색지원 활동에서 실종 항공기의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국적 연합탐색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11월 우리나라는 총 146명이 해외에서 군사지원 및 협력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9〉와 같다.

〈도표 5-9〉 국방교류협력활동 참여 현황

2016년 11월 기준, 단위 : 명



| UAE 아크부대[44] |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 15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아부다비 주 지역에 파견하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은 국내에서 6~7년 걸리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소화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아크부대 특수작전 훈련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수전 훈련을 포함한 육·해·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한층 돈독히 하고 있다. 아크부대 주요 활동은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아크부대 주요 활동

2016년 11월 기준

UAE군 능력 향상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우리군 능력 향상	• UAE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특수작전 능력 향상 • 악조건 하(5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실시 • 장거리 사격훈련 및 고공낙하 훈련 실시
국방교류 확대	• 한국군 주요훈련 시 UAE군 참관 및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 UAE장교 수탁교육 및 한국군 위탁교육 실시 • UAE군·가족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44)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아크부대 특수작전 훈련

| 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 |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파견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피해지역에 민·군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45])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에라리온 에볼라 환자 진료(2015년 2월)

우리 군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을 파견하여 에볼라 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군의 의료인력 파견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증대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한 군의 조치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감염병 대응능력도 한층 향상되었다.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파병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국적군 등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천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

45) Korea Disaster Relief Team

부대는 각각 1천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46])'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를 의미한다. 유엔을 통해 공병부대나 의무부대 파견 요청이 있으면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은 〈도표 5-11〉과 같으며, 상비부대 파견인원은 〈도표 5-12〉와 같다.

〈도표 5-11〉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 별도 지정부대 : 공병, 의무, 헌병, 경비부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무인항공기·헬기부대 등

〈도표 5-12〉 상비부대 파견 인원

2010년~2016년 11월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계
1,071명(8개진)	991명(8개진)	1,650명(11개진)	1,758명(7개진)	5,470명

|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기능 강화 | PKO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전담기관으로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47]), 외교부 유엔과, 타국가 PKO센터, 경찰 PKO센터 및 국내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교훈집과 파병

46) 전체 또는 전부를 뜻하는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

47)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으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유엔 군사전문가과정을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유엔과 협조하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체 연례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교육 대표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인원은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3〉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인원

2015년~2016년 11월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기 타	계
8개 과정 1,976명	5개 과정 70명	8개 과정 646명	2,692명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PKO분과 공동의장국 임무 수행 | 한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PKO분과[48]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PKO분과회의(2016년 10월)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PKO분과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3월에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을 인도에서 실시[49]하여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 우수역량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평화유지활동 선도 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앞으로도 PKO분과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자 안보회의체를 통해 해양안보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욱 증

48) ADMM-Plus 분과회의는 ① 국제평화유지활동 ② 대테러 ③ 해양안보 ④ 군 의료 ⑤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⑥ 인도적 지뢰 제거 ⑦ 사이버 분과회의로 구성되며,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 1개국과 Plus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 1개국이 공동으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함.

49) 2016년 3월 인도 푸네에서 실시된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 지뢰 제거 합동 최초 야외훈련(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참가국 18개국 총 280여 명이 참가)에 국제평화지원단 교관 및 훈련팀 31명이 참가하여 도보정찰 및 검문소 운영, 호송작전, 검색 및 차단 임무 관련 훈련을 실시함.

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베트남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추진 | 베트남과도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베트남과 PKO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과 2016년 9월 베트남 PKO센터에 우리 국제평화유지활동 전문가를 파견하여 파견 준비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파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파견지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별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2016년 9월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4주 간의 유엔참모 과정에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의 참모 임무 수행능력과 각종 상황조치 숙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베트남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제1절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164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168



육군 주간 철책경계

제1절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정부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견인하기 위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으나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경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보장과 병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남과 북이 중무장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북한측에 설명하고 남북이 함께 공원 조성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북한과의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접촉 시 우리 측 대표단에 참여한 국방부 대표는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중상 중단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10월 15일 개최된 '남북고위급군사회담'[1]에서도 우리 측은 북방한계선 존중과 준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 남북 군 직통전화 개설 등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북측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 도발로 야기된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1) 「2014 국방백서」에서는 '남북군사당국자접촉'으로 표기하였으나, 남북 간 다양한 접촉들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고위급군사회담'으로 변경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

고위당국자 접촉을 실시하였으며 「8·25 합의」[2]를 도출하여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 표명과 실효적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하였다. 「8·25 합의」를 통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북한 핵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2015년 8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강도의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된다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남북 간 당국회담 또는 군사회담 등이 이루어질 경우 무력 불사용·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북한의 대남공세와 우리의 대응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대남도발과 우리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위협과 위장평화공세를 반복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였다.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서」의 전면 폐기 및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를 주장하고, 남북 군 통신선을 차단하였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우리 측의 인원을 추방하고 우리 자산을 몰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기를 고조시켰다. 다양한 종류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형 무인기 침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고사총 사격 등의

2)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 개최, 남측 군인들 부상에 유감 표명,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은 준전시상태 해제, 이산가족상봉 진행,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가 합의의 주요 골자임.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지속하였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2015년 8월 북한의 기습적인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로 인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의 도발로 경색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8·25 합의」 체결로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 했으나 북한은 우리 측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법 제정 추진, 우리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 등을 빌미로 또다시 대남 비난과 위협을 재개하였다.

201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도 1월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롯하여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하였다.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만인 9월 9일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과 3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제2270호와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 및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제2321호를 도출하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하였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등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도 추진하였다.

북한은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 위장평화 공세를 이어나갔다. 북한은 당규약에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대남 위협[3]을 이어가면서도 각급별 남북대화 및 협상 발전,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등에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기관·정당·단체 명의의 통일대회합 개최를 제의하는 등 진정성 없는 대남 통일전선전술 책동을 지속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을 강조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3) 제7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 토론에서 "선군조선의 핵뇌성을 터칠 것이며, 서울해방작전, 남반부해방작전을 단숨에 결속하겠다"고 하는 등 대남 위협 지속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국방부 브리핑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불인정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불수용하는 등 현 정책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정권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군비통제 정책 발전 및 통일 대비 군비통제 역량 강화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은 상호 불가침과 비방 중지 등 일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합의 위반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군비통제는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주요 국제 군축·비확산체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군비통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 군축·비확산체제에 동참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비군사 분야를 상호 연계하는 등 군비통제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군비통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군비통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반도 군비통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군비통제검증단은 군비통제 전문 과정 위탁교육, 한미 연합사찰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체코 등 국외 군비통제검증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추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비통제는 남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행이 용이한 신뢰구축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군비통제 여건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국방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통행과 군 통신선 운영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6·25전쟁 시기에 전사한 중국군 유해를 발굴하여 중국 측에 송환하고 있으며, 남북 간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남북통행의 군사적 보장

남북한의 직접 통행은 육·해·공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육로 통행이며 간헐적으로 공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5·24 조치'[4]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면서 해로 통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육로 통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철도 통행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다. 육로 통행의 대부분이 개성공단 출입을 목적으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과 같은 소요가 있을 경우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통행이 이루어진다. 육로 통행의 경우 우리 군은 유엔사, 북한군과 협의하여 군사적 보장조치를 이행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을 제공하게 된다.

공로 통행은 일반적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과 고위급 대표단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출국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희호 여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남측 인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방북하기도 하였다. 우리 군은 북한 항공기가 운항을 요청하는 경우 군사안보 측면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면서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4)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하여 정부가 발표한(2010. 5. 24.) 대북정책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개성공단 제외),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남북 군 통신선 운영

남북한은 동·서해지구 남북 군 상황실에 통신선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 통신선은 남북 간 통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사당국 간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후된 군 통신선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자재와 장비를 북측에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 차단과 개통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에 이어 2016년에도 긴장상황을 조성하면서 군 통신선을 차단하였다. 군 통신선을 차단한 때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남 전화통지문을 보내는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될수록 의사소통 창구인 군 통신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군 통신선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에 의해 차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3. 국군포로 문제 해결

|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존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확인한 국군포로는 52명에 달하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

우리 정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조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며, 귀환 국군포로 현황은 〈도표 6-1〉과 같다. 2011년 이후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표 6-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16년 11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총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6
포로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

|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귀환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귀환 가족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대우 및 지원 이외에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5]으로 등록하고 세대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금형태의 위로 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귀환 국군포로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2016년 11월 말 기준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36명이 생존하고 있다. 정부는 귀환 국군포로의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귀환국군포로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방문, 초청행사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탈북 국군포로와 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과 안전한 송환을 위해 제3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정된 정착생활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및 중국군 유해 송환

남북은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6·25전쟁 시기 발생한 전사자의 유해 발굴 문제를 협의하여 공동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월 국방부 연두업무보고에서 강조하였듯이 국방부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북측과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5) 등록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국방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매년 중국에 송환하고 있다. 2013년 6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중국군 유해 송환을 통해 2014년 3월 437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41구가 송환되었다. 중국군 유해는 인종, 성별, 연령 분석 등 법의인류학 감식과 각종 전투기록 및 유해·유품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피·아 판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유해 송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DNA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양국 국민들 가슴 속에 진정한 이웃 친구로서의 정을 느끼게 해준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군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우리는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2014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우리 측이 도움을 준 데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시하였다. 중국 언론과 국민들도 중국군 유해 송환은 따뜻한 인도주의의 실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크게 감동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는 양국이 합의한 대로 매년 중국의 청명절 이전에 중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중국군 유해 인도식(2016년 3월)

제7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제1절 병영문화 혁신 174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179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187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192
제5절 국민 편익 증진 197



지뢰도발 평화의 발 조형물 제막식(2015년 12월)

제1절 병영문화 혁신

국방부는 반복되는 병영 내 악성사고, 군기강 해이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과 기강',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며, 관련 법령 정비,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 장병 인성 및 윤리의식 함양, 초급간부 리더십 향상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1. 추진 중점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자율과 기강,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며, 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②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③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④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⑤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을 중점으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6년에는 병영 현장을 중심으로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과를 확산하였다. 그 결과 인명손실과 사고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혁신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밝고 건강한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표 7-1〉 병영문화 혁신 추진계획

1단계(2015년)	2단계(2016년)	3단계(2017~2018년)
기반구축 (법령·제도 정비, 예산반영)	성과 확산 (현장중심의 행동 실천)	열린 병영문화 정착 (추진과제 완성, 안정적 추진)

2. 중점별 추진내용

|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 군 복무 기간 동안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모가 자녀

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였다.

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병무청 심리검사[1] 방법 개선,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현역 입영요건 강화, 신체검사 기간 연장 등 병역판정검사제도를 개선하였다. 입대 후에는 개인성격, 가정환경,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인성검사, 자살예방 교육, 관계유형 검사[2]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복무 부적응 장병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과 그린캠프 입소,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군 자살예방 교육

〈도표 7-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계획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용 인원	246	297	346	383

* 2015년 이후 성고충전문상담관 23명을 별도로 운영 중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노후된 그린캠프 14개소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였고, 2017년까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 국군양주병원 등 8개 군 병원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그린캠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휘관의 관심과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격오지 및 소규모 병영시설을 대대급 주둔지로 통합하고 있으며, 부대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 군 생활 간 부모 및 친구들과 단절감을 느끼지 않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대급 부대에 SNS 소통채널, 수신용 공용 휴대폰, 영상 공중전화기 설치를 확대하였고,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는 인터넷 카페를 운용하고 주둔지 단위로 부대개방행사를 정례

1) 질병과 심신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군복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검사

2) 기존의 자기보고식(Self-report) 검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집단 내 타인에 의한 평가를 통해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고, 복무 부적응 정도와 집단 내 개인 간 상호작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여가선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장병사랑 재능기부은행'[3]을 운영하고, 어학·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용품 공예 동아리 활동

군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군 특기병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인정 대학을 확대해 나가고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 등의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 장병의 인권이 보장될 때 진정한 전우애와 강한 군대 육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장병 권리 보장과 반인권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간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부 양성과정에 인성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참여형, 자기 주도적 장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를 설립하여 장병들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장병들이 인권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군사법 제도를 개선하였다. 평시 사단급에서 운용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영관급 장교 중에서 지명하여 운영하던 심판관 제도는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의 승

3) 민간 재능단체나 전문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음악·외국어·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실을 통해 장병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인 후 운영하도록 개선하였다. 관할관에 의한 감경 범위도 1/3 미만으로 제한하고,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관할로 이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 시에만 가중처벌 하던 군형법을 개정하여 군대 내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상호간 폭행·협박 처벌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사고처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학병원 법의학연구소 등 외부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초동수사 참여도 확대하였다.

군 복무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방헬프콜센터의 상담인원을 증원하였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과 군인, 부모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된 '국방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 인권침해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고충심사 청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법률[4]에 규정하여 고충신고자 보호를 의무화하였다.

우리 군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병영 내 악습을 일소하고, 부하를 소중한 인격체와 동료로 인식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병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 병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조성하기 위해 일과 시간에는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이후에는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을 보장하는 병영생활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병 휴가 자율선택제, GOP 등 경계부대 휴일 면회제도, 일반부대 평일 면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이 군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고 실내 체력단련장, 풋살구장, 병영문화쉼터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 세탁, 시설물 관리 등 부대관리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여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6. 6. 30. 시행)

경계부대 휴일면회

|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리더십 및 군대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해 신상필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임관 적부심사 등 현역복무 부적격자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품성 저조자의 임관을 차단하고, 리더십과 군대윤리 교육을 확대하여 간부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다.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상하 간에 신뢰하고 단결된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휘체계 문란, 직무 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음주운전 등 부대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부사관 근속진급 요건과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간부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근무자는 진급을 배제하고 조기에 전역시키고 있다.

각 군에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사단급 부대에는 양성평등담당관을 운영하며, 성폭력 신고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활용하는 등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영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영관장교 이상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토의식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자나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 처분과 함께 반드시 징계조치하고 있으며 중징계 처분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이력이 있는 자의 간부 임용을 제한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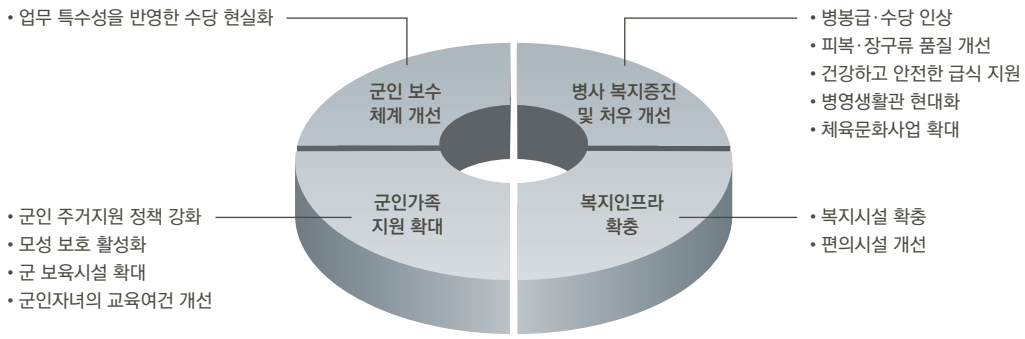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2013년에 수립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13~2017)」을 토대로 장병 의식주 등 기초 복지를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고 체육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군인의 보수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조국 수호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1.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

국방부는 2013년에 수립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병사복지, 주거보장, 가족복지 등 7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추진계획을 현실화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표 7-3〉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



2. 병사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

| 병 봉급 및 수당 인상 | 군 복무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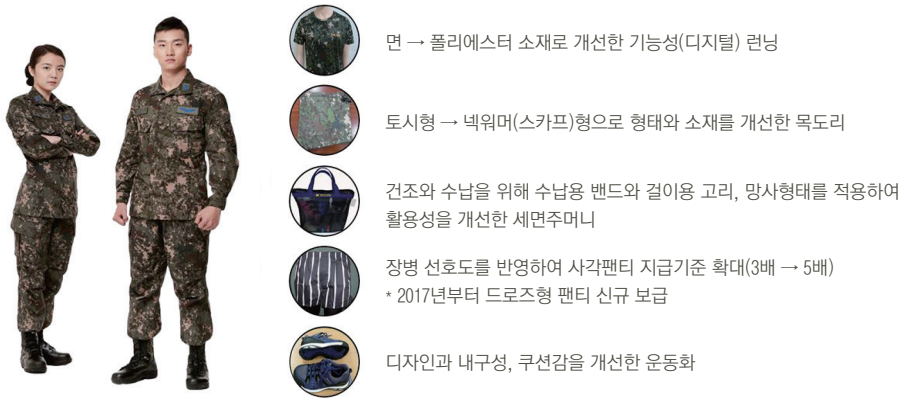
위해 병 봉급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로 인상하여, 2017년에는 상병 기준으로 19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격오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50% 인상하여 G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매월 2만 5천 원의 특수지근무수당과 1만 5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병대 등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병사들에게는 1일 3천 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나라사랑 카드 부가 서비스를 확대하여 군 마트 및 공중전화 이용 할인 등 병영생활에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가나 외출·외박 시 적용되는 무료 상해보험금 지급 규모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전우사랑보험 제도를 신설하여 자살자를 제외한 군복무 중 사망자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역 후 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해 희망준비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 피복·개인 장구류의 품질개선 | 장병의 전투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복과 개인 장구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6년부터 경계병과 매복병에게 기능성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방한복 상의 내·외피와 착용감과 위장 기능을 보완한 전투복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장병들이 병영생활에서 자주 착용하는 생활밀착형 피복류[5]의 품질과 보급기준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도표 7-4〉 피복 개선 현황



개인 장구류는 전투요원들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품

5) 장병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류

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의 품목을 패키지화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5년에는 GOP사단에 신형 개인 장구류를 보급하였고 2020년까지 전투지원부대에도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 |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훈련 등 육체 활동이 많은 병사들에게는 일반인 권장 열량 기준보다 높은 3,100kcal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세대 장병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식과 양질의 부·후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도표 7-5〉 1인 1일 기준 기본급식비[6]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단가(원)	5,820	6,155	6,432	6,848	7,190	7,334
증가율(%)	3.0	5.8	4.5	6.5	5.0	2.0
평균(%)	4.5					

* 최근 3년간(2013~2015) 평균 식료품 물가상승률(통계청)은 0.87% 임

장병들에게 보다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급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장병들의 선호 음식을 급식메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급 부대 취사장에 운영 중인 민간조리원을 2020년까지 중대급 규모 전 취사장으로 확대·운영할 것이다.

〈도표 7-6〉 민간조리원 충원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원(명)	1,767	1,841	1,989	2,140	2,223
확보율(%)	79	83	89	96	100

많은 인원이 동시에 취식하는 군 급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자재 계약부터 배식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자재 계약 시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

6)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를 포함하는 순수 식자재비

준(HACCP)[7] 업체를 우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연 2회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자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회수·폐기하고, 해당 납품업체는 군 급식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군 급식현장 등을 참관하여 장병들의 급식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8]도 시행하고 있다. 현대화된 군 급식유통센터를 전라권(장성)과 충청권(대전), 경상권(대구)에 각각 개소하여 장병 급식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머니 장병 급식 모니터링단



충청권(대전) 급식유통센터

| 병영생활관 현대화 및 병영생활 간 불편사항 해소 |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협소하고 노후된 생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 구조로 변경하고, 1인당 2.3㎡이었던 생활면적을 6.3㎡로 확장하면서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의 위생·편의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하고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 구조로 현대화하는 것은 생활관의 개념을 병사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주거와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7) 위해물질이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 확인 평가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8) 메밀, 땅콩, 게, 돼지고기, 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함유한 식품 및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 시 원재료 명을 표시하는 제도

〈도표 7-7〉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구 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통합생활관)
병영생활관 내 공간 구분		• (병사)생활실(내무반) • (간부)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 (병사)생활실(내무반),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 (간부)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대대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 공간	생활실 (내무반)	• 30~50명 소대단위 침상형 • 1인당 2.3㎡	• 8~10명 분대단위 침대형 • 1인당 6.3㎡
	위생 시설	• 생활관 외부 별도건물에 위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없음	•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등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생활관 내부에 배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신설
	편의 시설	• 생활관 외부 별도건물에 위치 •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은 없음	•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등을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배치
간부 공간	행정, 작전·훈련 시설	• 중대장실, 중대행정반만 생활관 내 위치 • 대대행정시설은 별도건물로 생활관 외부에 위치	• 지휘관실, 참모부 사무실, 지휘통제실, 통신실, 회의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제한되는 부대와 해체나 이전이 예정된 부대에는 '병영문화쉼터'를 설치하여 병영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노래연습실, 매점, 이발소 등 각종 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취사장과 급수시설을 개선[9]하고 하절기 온수 지원을 확대[10]하고 있으며, 소대급 이상 전 부대에 진공청소기를 보급하는 등 병영생활 간 병사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경우 2013년부터 사이버지식정보방을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는 사용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에는 모든 병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 체육문화사업 확대 | 실내체육관, 풋살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도서구입 및 장병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하여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병사들의 체력단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 체력단련장 495동을 설치하고 부대 규모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동기구를 보급하였으며, 전방부대와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풋살경기장 495개소, 간이농구장 355개소를 설치하였다.

민간의 예술 강사가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연극, 악기, 마술 등을 교육하는 병영문화에

9) 취사장 개선율 : 74.3%(2016년) → 86.9%(2021년), 급수시설 개선율 : 46.7%(2016년) → 52.2%(2021년)

10) 주 5회(168일)지원하던 온수를 2017년부터 주 6회(181일)로 확대

술 체험사업과 민간 예술단체 군부대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병사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복지인프라 확충

| 복지시설 확충 | 비상대기 근무가 많은 군인의 복무 특성과 대부분의 부대가 도서·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10년 육·해·공군 복지단을 통합하여 창설된 국군복지단은 장병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시설 관리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에 국방문화·연구센터, 군 자녀 기숙사, 군인아파트 등 복지 및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장병 복지 및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백령도에 통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과 가족의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재경지역에 위치한 낡은 복지시설인 용사의 집을 병사 전용 객실을 포함한 복합 문화 복지시설로 재건립하여 장병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편의시설 개선 | 노후 복지회관과 군 마트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26개소, 2015년에 20개소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였고, 노후 군 마트는 2014년에 241개소, 2015년에 137개소를 개선하여 장병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4. 군인 보수체계 개선

군인 보수체계는 계급, 임무, 근무환경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임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전, 항공, 함정 등 핵심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특전사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는 하사 이상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시전투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해 5도 근무 군인에게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항공수당, 잠수함 승조원에게 지급되는 잠수함 출동가산금, 낙하산 강하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 수당을 인상하였다.

5. 군인가족 지원확대

| 효율적인 군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 | 이사와 격오지 근무가 잦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군인 주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군인복지기본법」에 마련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 가족을 위해 민간주택의 전세금을 대부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자 군인에게 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직업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재원부담을 줄이면서도 군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이 직접 관사를 건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택 활용을 확대하고, 군 주거시설을 부대별 관리 방식에서 권역별 통합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정책을 통해 직업군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불임과 난임으로 인한 휴직을 보장하고, 휴직 대상을 남녀 군인으로 확대하였다. 휴직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휴직기간 지급되는 봉급 지급율[11]도 상향 조정하였다.

2016년에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당직근무 면제대상을 여군에서 여군무원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 수당도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군 보육시설 확대 | 군 내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 관사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군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105개의 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7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방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관사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부대에서 보육아동 15명 이상 부대로 조정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여성가족부, 민간 기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있다. 2013년 12월 강원도 철원 지역에 1호점을 개관한 이후 2016년 말 현재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11) 휴직 1년차에는 봉급의 70%, 2년차에는 50%를 지급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 직업군인의 잦은 보직이동과 격오지 근무의 특성상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군인 부모의 잦은 이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군인자녀 정원 외 전·편입학 지원,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등 학업증진 프로그램 참가, 군인자녀 기숙사설치,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정보 제공 및 특별입학 지원, 대학학자금 무이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기숙형 고등학교의 설립은 한민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이 부모의 부대 이동과 관계 없이 전학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등 직업군인의 사기를 증진하고 군에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우리 군은 건강하게 입대한 장병이 건강한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뿐 아니라, 각종 부상과 질병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련된 의료인을 확보하고 국군외상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진료능력을 고도화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추진 중점

국방부는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의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2017~2021)」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신속한 후송과 최선의 진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모든 장병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있으며, 의료종합상황센터 개소, 의무후송항공대 창설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등 장병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2017~2021)」에서는 군 의료체계의 목표 수준 정립, 군 의료체계 개편, 의료인력 보강,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이다.

2.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 강화

| 감염병 맞춤형 관리 | 우리 군은 군내 감염병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8종의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모든 입소 장병에게 4종[12]의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전 장병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에게는 3종의 예방백신[13]을 추가 접종하고 있다.

12) 파상풍,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A형 간염

13) 신증후군 출혈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병영환경 개선과 백신 접종 확대로 군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확연히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군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역 후에도 장병들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장병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국방부는 장병의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등병 건강 상담 및 상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등병 건강상담은 전입신병이 군의관과 1:1 로 건강 상담을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병 건강검진은 상병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갑상선암 등 71명을, 2015년 백혈병 등 124명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료를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BMI 지수[14]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장병의 건강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 원격진료 | GP나 도서지역 등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격오지 장병이 24시간 원할 때 언제든지 군의관의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부대의 진료접근성이 향상되었다. 2014년에 일부 GP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6년 현재 63개소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까지 76개소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도표 7-8〉 격오지부대 화상 원격진료체계



14)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BMI : Body Mass Index)

3. 후송 및 진료능력 제고

| 환자후송체계 강화 | 2012년에 설립된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환자지원센터를 2015년에 의료종합상황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발생 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구급차, 후송헬기 등 가용자산을 지원하고, 가용한 군 및 민간병원을 준비시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군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후송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응급환자에 대한 헬기후송을 전담하는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여 후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후송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국내 최고수준의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무후송헬기

| 군 의료체계의 효율화·정예화 | '선택과 집중' 원칙과 미래 군구조 개편 방향을 고려, 군 병원 수는 축소하되 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군 의료기관별 기능을 수준별로 재정립하고 있다.


국군외상센터 조감도

먼저 현재 17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군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13개로 축소하되, 모든 군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15]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 상 최상위 병원으로서, 외상 등 군 내 다빈도 질환과 총상 등 군 특수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예하에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여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에 군 병원이 없더라도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 없는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은 장거

15)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신청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 전반의 500여 개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국군 외상센터 설립 필요성

리 이동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폐지되는 일부 병원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여 지역 내 '외래검진센터'로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단급 이하의 의무대·의무실은 현재와 같이 단순한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와 응급처치를 제공하되, 불필요한 입원은 최소화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표 7-9〉「군 보건의료발전계획(2017~2021)」 중 군 병원 개편방향

단위 : 개

구 분		현 재	개편 후
군 병원	계	17	13
	국군수도병원	1	1(예하에 국군외상센터 신설)
	전방병원	8	5(청평, 원주, 강릉병원 폐지)
	후방병원	4	3(부산병원 폐지)
	특수목적병원	4	4
외래검진센터		-	3(청평, 부산, 강릉)

| 군 의료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방부는 그간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의료행위를 보조해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자격 의무병'을 단계적으로 자격을 갖춘 간부로 대체해 나갈 것이며, 의료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입대하는 병사는 입대 시 전공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민간대학 위탁교육 등을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을 연 15~20명, 임상병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의무부사관을 연 20명 내외로 양성하여, 군 의료인의 숙련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 국군의학연구소는 감염병 예방, 생물학전 대응 등 군 특수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군 의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단체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검사·진단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에볼라 진단법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군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사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인수공통감염병 진단 및 연구기술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백신연구 시 상호협력 등 여러 관계기관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군 의료 연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4. 장병 민간의료지원체계 개선

|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확대 | 공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16]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진료비[17]를 부담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였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경우 질환이 처음 발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체장애로 의족이나 의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의 제한 없이 최상의 의족과 의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진료비 지급절차 개선 | 공상을 입은 장병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급심의 절차를 간소화[18]하고, 공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군이 민간병원과 직접 진료비를 정산하는 후불정산제도를 도입하였다.[19]

| 환자 지원 강화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민간의료지원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제때 안내받지 못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24시간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 보상, 행정지원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는 '위탁환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 민·관·군 진료 협력 활성화 | 국방부는 국민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후송, 응급처치교육, 취약지역 내 응급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군 병원과 각 군의 사단급 의무부대도 가장 근접한 지역의 민간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보건의료기관과의 진료 협약을 확대하여 장병의 진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16) 공무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현역병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제도에 따라 보훈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음.

17) 「군인연금법」 개정 전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하였음

18) 과거에는 4단계 심의(군병원→각군→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절차가 적용되었으나, 3단계(군병원→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로 축소하였음.

19) 국방부는 2016년 7월 (사)대한병원협회와 공상장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정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전역예정 장병에게 최고의 복지는 재취업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역장병의 사기는 물론 우수인력 획득 등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모든 장병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전직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전직지원교육 강화 및 취업직위 확대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운영 | 상당수의 전역군인이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생애 최대 지출시기에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예정 간부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전직지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였다.


국방전직교육원 설립(2015년 1월)

국방전직교육원은 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교육, 컨설팅,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정 등 다양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및 고용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취업박람회, 일·학습 병행제, 취업 아카데미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이후 장기복무자에 국한되었던 전직지원 교육 혜택을 단기와 중기 복무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단기복무자에게는 주로 진로지원교육을, 중기 복무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장기복무자에게는 사회 기여형 직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자격 등 사회직종과 연계된 군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2017년부터는 중기복무자에게 전직교육 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중 틈틈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설계가 가능하도록 복무설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역예정 간부들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전역예정 장병 취업직위 확보 | 국방부는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역예정 장병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역예정 장병의 일자리는 군 경력과 군사 전문성의 활용이 가능한 군내 일자리와 공공 및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구분하여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16년 9월 기준으로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예비전력관리직, 군무원 등 군내 일자리 9,626개와 비상기획관, 학군단 교관 등 공공 및 민간 일자리 35,902개 등 45,528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군무원, 비상기획관 등 군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넓히는 한편, 기업 및 고용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표 7-10〉 전역예정 장병 일자리 확보 현황

2016년 9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확 보			계 획		
		소계	~ 2015년	2016년 9월	소계	2016년 10~12월	2017년
계	50,000	45,528	38,053	7,475	4,472	1,410	3,062
군내 직위	10,500	9,626	8,896	730	874	480	394
공공 및 민간직위	39,500	35,902	29,157	6,745	3,598	930	2,668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영

|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 군인연금은 직업 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 장애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전투나 위험한 직무 훈련에 참가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격오지나 전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전 임무나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계급 정년으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은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회 보험이자 조기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 보장,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군인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해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20]

|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 | 군인연금은 연금제도 도입 초기인 1961년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정 규모의 연금 기금을 적립할 기회가 없어서 연금지급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2013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33년 이상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본인 부담금은 늘리는 한편, 연금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여 연금지급액은 낮추었다.

| 장병 재해 보상 강화 |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자해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재해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3. 군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 6·25 전사자 유해발굴[21] |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시킴과 동시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유해 발굴 전문기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획운영, 조사, 발굴, 감식, 대외협력 5개 과, 8개 발굴팀에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10,314위(位)[22]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32,160명의 유가족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하였다. 전사자 신원도 추가로 확인하여 109위(位)를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드렸다.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좀 더 많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유해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군인의 개인 기여금 부담률은 공무원보다 군인이 낮고, 미국, 호주, 일본은 연금지급률이 공무원보다 군인이 높음.

21) 6·25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위(位)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 차원의 호국보훈 사업임.

22) 국군 9,055명, 유엔군 15명, 북한군 703명, 중국군 541명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도표 7-11〉 유해발굴 현황

2016년 12월 기준, ( ) : 군·경

계	2000~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904	1,504	534	837	1,278	1,443	1,387	1,042	731	921	637	590
(9,436)	(1,183)	(378)	(673)	(1,137)	(1,331)	(1,300)	(990)	(666)	(817)	(580)	(381)

* 유해발굴 총계 : 10,904위(군·경 9,436, 유엔군 15, 적군 1,254, 감식중 128, DNA제한 71)

〈도표 7-12〉 DNA 시료채취 및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2000~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DNA 시료채취	36,143	1,923	1,455	2,282	4,524	3,388	4,252	4,765	4,005	2,645	2,921	3,983
신원 확인	118	22	9	13	10	6	8	11	5	7	8	9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23])과 우리 국방부 간의 합의서(MOA)[24]를 체결하였다. 2016년 4월 미국에 보관 중인 국군 유해 15위(位)와 우리가 보관 중인 미군 유해 2위(位)를 상호 봉환하였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경험과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러 2012년 2년여 간 리비아의 실종자 발굴과 신원확인 사업을 지원하였고,[25] 2015년 9월에는 베트남 국방차관 일행이 우리의 선진화된 유해사업의 식별, 탐지, 발굴 및 사후관리 등 유해발굴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였다.[26]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언과 제보자가 줄어들고, 국토개발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발굴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 온 유해 소재 기초조사와 국내외 전사자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사자 유가족 추적팀을 편성하여 주거지 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유해소재 종합 분석도'[27], '전사자종합정보체계(KIATIS)'[28]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

23)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

24) ① 유해발굴 관련 상호 정책적 지원 제공 ② 6·25전쟁 시 사망자·실종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 협력 ③ 양국 간 공동조사 및 발굴 시행 ④ 한미 연례회의 개최(공동관심사 논의, 협력보장) 등을 합의

25) 리비아에 유해발굴감식단 7명을 '리비아 실종자확인 지원팀'으로 파견(2012. 7. 2.~2014. 7. 28.)

26) 베트남 국방부차관(상장 응웬 타잉 꽁) 등 15명 방문(2015. 9. 29.~10. 4.)

27) 6·25 전쟁사(史), 참전용사의 증언, 6·25 당시 거주했던 생존 지역민의 제보 등을 종합하여 6·25 전사자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도에 표기하여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활용하는 종합분석도

28) 유해발굴감식단에서 2010년 12월 개발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지도가 탑재되어 실시간 현장 좌표를 입력할 수 있고, 조사내용, 발굴유해, 유품상태, 유해깊이 등 발굴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KIATIS : Killed in Action Total Information System)

적인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전사자들을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 | 국방부는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급, 호국원 안장 지원, 보훈병원 부담금 감면, 고궁·공원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 6천여 명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도표 7-13〉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현황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학도 의용군	노무자	국민방위군	군속	유격대원	의용경찰	철도공무원	강화청소년유격대	청년방위대	기타
현황	36,008	1,172	4,172	1,577	1,520	8,541	6,466	6,018	2,403	572	3,567

국방부에서는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참전 증빙자료에 대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쟁사 전문가 자문 정례화, 국회도서관 및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활용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非)군인 참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국가보훈심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즉시 검색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1996년 이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 육안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진과 문서자료들을 과학적으로 감식하고 있으며, 6·25전쟁 중 생산된 전투사료, 상황일지, 경찰 및 법무부 기록,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29]) 자료 등도 수집하여 참전자들의 증언에 대한 세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보훈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제5절 국민 편익 증진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방법과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개선 사항 식별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1. 병역제도 발전

| 병역자원의 안정적 충원 |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산율의 증가로 2020년 초반까지는 입영 대기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하는 입영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입영적체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기준[30]을 강화하는 등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하고, 아울러 한시적으로 추가 입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대비해서는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하고, 여군 간부 활용을 확대할 뿐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환·대체 복무 인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전환·대체 복무[31]는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2020년대 초반 이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우수인재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0) 종전 '징병 신체검사기준'을 '병역판정 신체검사기준'으로 용어 변경(「병역법」 개정안 2016. 11. 30. 시행)

31) 전환복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대체복무는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이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이 병무청에서 지정한 기업 등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 모집병 제도 운영 및 개선 |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기본 병역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는 지원에 의해 충원하는 모집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군의 일부 병과 해군·해병대, 공군의 모든 병을 모집병으로 충원하고 있다.

기술관련 전공자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모집병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병 선발 전형 시 지원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가 지급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현재 전체 입영자 중 55% 정도가 모집병으로 충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자격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와 연계된 군 복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운영 | 2014년부터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맞춤 특기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맞춤 특기병은 고졸 이하 18~24세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전역 후에는 군 경력과 연계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할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2. 병무행정 개선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 | 병역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사항 집중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2016년 6월부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여 표창 및 병역명문가 증서를 수여하고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표 7-14〉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2016년 9월 기준, 단위 : 가문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접수	5,938	234	357	337	227	253	251	398	498	485	928	695	585	690
선정	3,431	40	84	92	73	132	147	192	302	301	545	497	466	560

| 정밀한 병역 판정검사체계 개선 | 병역 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수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병역 판정검사체계[32]를 개선하고 있다. 정밀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위해 첨단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심리검사 문항을 확대하는 등 심리검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역 판정검사체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병역 처분의 정확성 제고 | 병역 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 병역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가산하여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는 경우 병역 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3. 예비군훈련 방법 및 여건 개선

국방부는 훈련보류자[33]를 제외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훈련대상과 유형별 훈련시간은 〈도표 7-15〉와 같다.

32) 병무행정 용어 개선으로 종전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2016. 11. 30. 시행)

33) 「예비군법」과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자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 자. 직종 단위로 정하되, 필요시 자격이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경찰관,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

〈도표 7-15〉 예비군훈련 시간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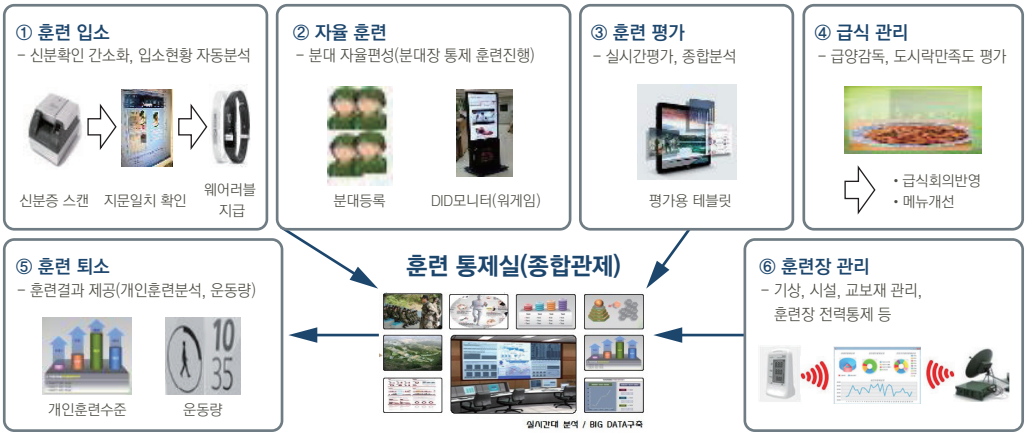
구 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병	1~4년차	동원 지정자	2박3일	-	-	-	-
		동원 미지정자	-	24시간	-	12시간	
	5~6년차	동원 지정자	-	-	8시간	6시간	4시간
		동원 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7~8년차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음				
간부	1~6년차	동원 지정자	2박3일	-	-	-	-
		동원 미지정자		2박3일			
	7년차 이상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음				
지 원 자						6시간	

2015년부터 예비군들이 훈련에 스스로 참여하고 계획된 훈련에 합격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자율참여형 예비군훈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향방훈련의 경우에는 측정식 훈련으로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운영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별도의 훈련장에서 실시하던 동원훈련은 부대별 임무수행 지역에서 숙영하면서 실제 상황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일부 상비 사·여단은 동시 통합 동원훈련을 시험 실시하여 동원의 즉응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실전적 예비군훈련을 위해 전방군단과 향토사단에 연대단위 과학화된 예비군훈련대를 창설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대대단위 208개 예비군훈련장을 여단단위 44개 훈련대로 통합할 예정이다. 훈련장에는 영상사격 모의훈련과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등 최신 전투 훈련시설을 설치·운용하고, 훈련 입소부터 퇴소까지 전 단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지역 주민에게 훈련장을 개방하여 여가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민 친화적 예비군훈련시설로 발전시킬 것이다.

〈도표 7-16〉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생업 등의 이유로 평일 훈련이 어려운 예비군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인터넷 예비군훈련 신청 범위를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조정하여 예비군들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의 3대 불편 사항인 급식, 교통, 훈련장 편의시설도 개선하고 있다. 예비군이 선호하는 급식 메뉴를 반영하고 설문조사, 예비군급식 품평회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예비군훈련 참가자 훈련비를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1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예비군훈련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5년 5월 이후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사격장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낡은 예비군 식당, 안보교육관 등은 신축하고, 예비군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갈 것이다.

4. 국방규제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 국방 분야 규제개선 |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군수, 동원분야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2013년에는 국군복지단 군납제도 개선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우수상품이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우수업체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였고, 예

비군 휴일 훈련을 확대 시행하여(2.5만 명→3.5만 명)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2014년에는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가능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하였고 수출전용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부품국산화 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부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게도 부품국산화 사업이나 해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일반 업체의 방산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훈련을 면제하여 자녀양육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016년에는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상한제(10%)를 도입하여 국내외 조달업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이 훈련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법령에 국방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 할 때는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규제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국민 참여 토론회(2014년)와 국방규제개선 과제공모전(2015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민·군이 상생하는 국방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 국방부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침에 따라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 내 유휴지 활용', '군내 성폭력 근절'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하였다.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망사고처리 과정에서부터 유가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신설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가능성을 높였으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도 순직·전사자에 준한 장의·의전을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총 191위의 장기 미인수 영현 중 113위를 유가족에게 인수하였다.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 내 유휴지 활용'을 위해 군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매입·임차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 불필요한 군용지는 매각, 교환, 총괄청 인계 등의 절차를 통해 2016년 10월 기준 무단점유 사·공유지 약 3,275만㎡를 개선하고, 미활용

군용지는 약 2,169만㎡를 정리하였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군에서 퇴출시킨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희망지로의 전출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상화과제를 발굴하여 오랜 기간 국방 분야에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

| 합리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축소하고 있다. 2008년에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5㎞에서 10㎞ 범위 이내로 조정하였고, 2016년까지 4억 237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3억 730만㎡를 통제보호구역[34]에서 제한보호구역[35]으로 완화하였다.

〈도표 7-17〉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단위 : 만㎡

구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해제	40,237	25,093	4,954	159	2,779	2,672	2,036	2,544
완화	30,730	24,333	570	625	76	4,653	451	22
합계	70,967	49,426	5,524	784	2,855	7,325	2,487	2,56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농공단지 등에 대해서는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협의위탁 구역을 2016년 기준으로 15억 1,126만㎡로 확대하였다.

34)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35)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도표 7-18〉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위탁구역 현황

단위 : 만㎡

구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면적	151,126	87,339	5,524	4,056	9,349	4,723	34,417	5,718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완화와 병행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심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 사전상담을 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켰다. 비공개로 되어있던 작전성 검토기준을 공개하고, 재심의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에 관계기관 공무원도 참여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다.

| 탄약 안전거리 조정 및 탄약 재배치 | 탄약시설 주변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탄약의 안전한 저장기법 개발을 위해 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터널형 탄약고 신축 가능성을 검토하여 안전거리 감소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6.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제한과 소음에 따른 피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은 군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이전 건의서의 타당성을 작전수행의 효율성,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전 부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 계획의 수립, 이전건의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으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는 이전 타당성이 승인되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방지시설 설치, 비행절차 개선, 비행경로 변경, 야간비행 및 사격훈련 제한, 인구밀집지역 회피 비행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7. 환경 친화적인 군 운영

| 군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개선 | 우리 군은 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시설 개선 및 수질 환경오염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토양 오염진단 및 오염정화사업 등 토양환경 복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류저장시설의 누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배관시설 개선, 배관 지상화, 토양오염방지지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및 활용 |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는 정밀 조사하여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016년까지 반환대상기지 80개소 중 54개소가 반환되었으며, 이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25개소 중 24개소는 환경 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환경부가 인증한 기관의 검증과 지방자치단체의 정화완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친환경적인 국방시설사업 추진 | 국방군사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하며, 착공 및 운영단계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2016년에는 제주 해군기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8. 국민과의 소통강화

| 국방3.0 | 국방부는 정부3.0[36]의 기본개념에 국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방3.0[37]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 '소통', '협력', '통합'의 핵심가치를 생활화하기 위해 정책고객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협업과 소통을 통한 국방정책역량 강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 공개 확대,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3.0의 가장 큰 성과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국민과 장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예비군훈련을 자유롭게 신청하거나 연기하고, 건물 공사 시작 전에 비행안전구역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적극적인 방위사업 정보 공개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방부 누리집에 운영중인 군수품 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군수품 품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장병들은 복무 중 모든 건강검진기록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더라도 원격진료를 통해 언제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열차파업, 메르스 사태, 가뭄과 홍수 등 국가적 재난과 자연재해 대응에 앞장서는 등 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육군훈련소의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급여예측모델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국가안보는 튼튼하게'를 기치로 국방3.0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홍보 활성화 | 국방부는 최근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영상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유명 영화제, 예능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국민에게 친숙한 영상 미디어를 이용해 군의 긍정적인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2015년 3월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 2016년 9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와 협력한 '대한민국 국군 영상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 군과 달라진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36)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기관 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패러다임

37)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민·군의 역량을 통합해 튼튼한 안보구현이라는 국방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한 새로운 국방행정의 패러다임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2015~201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고 있다. 그 외에도 선진화된 예비군 체험 행사인 백투더 예비군, 국방부 슬로건·캘리그라피 공모전, Come & Play 우리 국군 체험전 등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우리 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장병 사랑 캠페인」 "Thank you! Soldiers!"(고마워요, 우리 국군!)을 전개하여 북한 지뢰도발 부상 장병 및 해외파병장병의 시구 및 시타 행사, 기업과 연계한 장병 응원 '하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장병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타장병응원단장 라붐을 임명하여 전방부대 응원방문을 하는 등 격려를 지속하고 있다.



지뢰도발 부상 장병 시구 및 시타 행사(2016년 6월)

매일 15만부가 발행되는 국방일보는 전국 대학의 군사학과 교재(NIE[38])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장수 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등 국방TV와 국방FM의 다양한 교양, 시사,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국방소식을 알리고 있다.

38) Newspaper In Education

Thank you! Soldiers!
(지뢰도발 부상장병 격려)

부 록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2016년 2월)

특별부록

1.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210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213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219
4.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222
5.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5
6.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28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32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34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35
4. 남북 군사력 현황 236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37
6.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38
7.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39
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0
9. 남북 군사관계 일지 24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1
1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3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54
1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5
14.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9
15.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63
16.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64
17.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6
18. 병사 봉급 추이 267
19.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68
20. 국방기구도 269
21.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271
22.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3

특별부록 1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1. 추진 배경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유엔사 군정위)'[1]가 통제하는 수역으로, 지리적으로는 우리 측 김포시와 강화도, 북측의 황해도 남단과 잇닿아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남과 북이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수역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래 60여 년 동안 특별한 몇 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남북 양측 모두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던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어선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이 지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을 해왔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불법조업 어선수가 급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강하구 수역

2. 추진 내용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는 직접적인 단속 활동에 앞서 다각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정경찰 운용에 대한 사항들을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사 군정위'의 특별조사반(SIT)[2]을 운용

1) 정전협정의 이행·준수를 협의·해결하는 기구

2)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직(SIT : Special Investigation Team)

하도록 협조하였다. 유엔사 군정위는 특별조사를 통해 중국어선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중국 어선들을 군정위의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민정경찰 투입을 승인하였다. 한편, 육상의 비무장지대(DMZ[3]) 민정경찰과 달리 한강하구 수역의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 번도 투입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운용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합참과 유엔사는 공동 작전계획 수립반(OPT[4])를 구성하여 작전개념, 인원 편성 및 지휘 관계 등을 정립하고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 운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정경찰 작전 모습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 한강하구 수역은 남북 간 가시적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관리수역인 만큼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유엔사 채널을 통해 사전에 북측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였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을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주한 중국대사와 총영사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한중 외교채널'을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설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방부–주한 중국무관부 실무협의', 주중 한국무관부 등 국방 외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실질적 조치를 위한 불법조업 채증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 제공한 현장사진 자료들은 중국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정부에 제공한 채증자료



쌍끌이 이용 불법조업 실시 현장

삽을 들고 저항하는 모습

단속 회피를 위해 선명을 지운 선박

3) Demilitarized zone

4) Operation Planning Team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였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해경을 민정경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군·해경 합동 실무회의', '현장 작전토의' 등을 통해 군·해경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의 작전수행 능력을 극대화 하였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를 위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반 활동에 있어 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이 참가하는 유관부처 통합회의를 통해 작전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3. 주요 성과

2016년 6월 우리 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3년 만에 최초로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하여, 차단·퇴거·나포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을 근절하였다.[5)]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작전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조치였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수역인 한강하구 수역의 특수성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중국 정부에 사전 설명하여 중국어선 단속활동 기간 중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였으며, 이는 중국 어선에게도 '한강하구는 통제수역으로 불법조업 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자국 어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해경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당국에게도 정전협정의 준수와 이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어선은 북방한계선 이북 북측 수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진입하여 왔으나, 우리 정부는 민정경찰 투입 조치를 통해 북측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한강하구 수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민정경찰 운용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단호한 입장을 천명[6)]하고 북한의 도발 빌미를 원천 차단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군사적 민감수역에서의 정전협정 존중·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작전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적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었다.

4. 향후 추진

민정경찰 작전 투입 이후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진입은 크게 감소했으나, 우리의 대비가 소홀해진다면 언제든 불법조업을 재개할 것이다. 우리 군은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며, 중국 정부 차원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5) 작전성과 : 나포 2척, 퇴거 54척, 재진입 차단 10척, 어구압수 등

6) 북한의 수사적 위협(2016년 6월 20일/조선중앙통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의지 천명

특별부록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1. 개관



목함지뢰

2015년 8월 4일 07:35분경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7])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 장병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의 현장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만행이었다. 우리 군은 응징차원에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으며 8월 14일 북한은 이를 부인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북한은 전선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여 나갔다. 8월 20일 오후 군사분계선 남방 우리 지역에 두 차례 포격도발을 감행하였고,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하였다.

8월 22일 18:30분부터 24일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하였다.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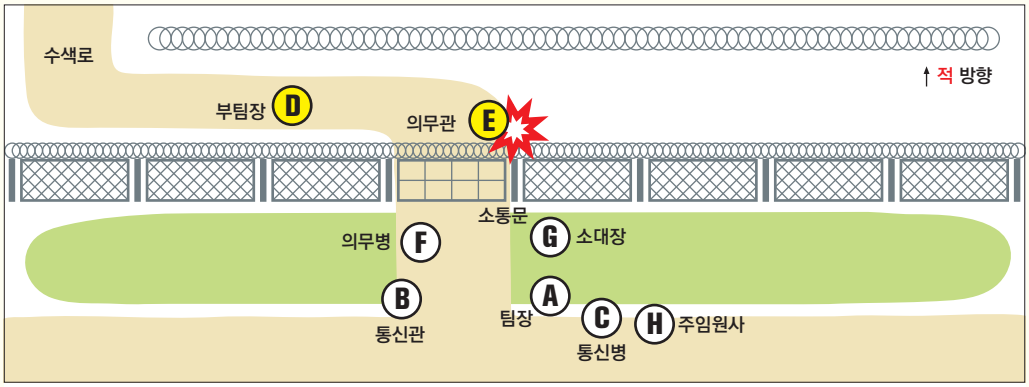
| 상황 |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근접 정찰, 의도적인 군사분계선 침범, 비무장지대 내 지뢰매설 등을 지속해왔다.

2015년 우리 군은 모든 전방사단 GOP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음기 대비 태세점검과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수색과 매복 작전을 시행하고, 군사분계선에 근접하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 주요 조치 | 2015년 8월 4일 07:28분 우리 군 수색작전팀은 비무장지대 수색을 위해 추진철책 소통문에 도착하였다. 먼저 부팀장이 소통문을 열고 나가서 추진철책의 소통문 서측방 5m지점에서 전방경계를 하고 있었으며, 이어 의무관이 추진철책의 소통문을 통과할 때 철책 북쪽 40cm 지점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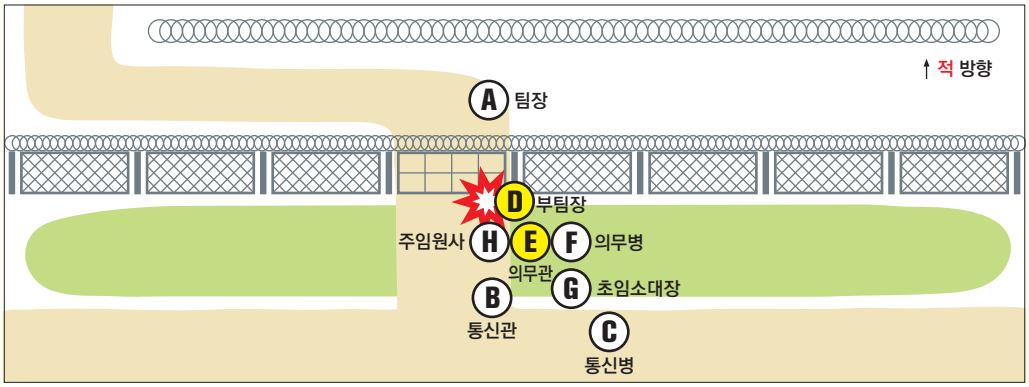
---

7) Military Demarcation Line



1차 지뢰폭발 상황

팀장 지시에 따라 부팀장, 의무병, 주임원사가 부상당한 의무관을 후송하는 도중, 07:40분에 철책 남쪽 방향 25cm 지점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여 부팀장이 부상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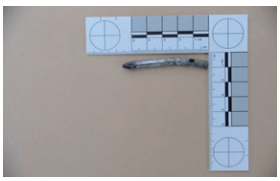


2차 지뢰폭발 상황

합참 합동조사반은 현장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의 잔해물로 추정되는 용수철 3개, 공이 3개, 목함지뢰 나무파편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였다.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이 포함된 조사단이 재차 조사한 결과 목함지뢰의 폭발물 잔해가 기존의 북한 목함지뢰와 일치하고, 1차 폭발지점에서 2발, 2차 폭발지점에서 1발이 폭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목함지뢰가 폭발한 지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북측에 매설되어 있던 북한군의 지뢰가 폭우 등의 영향으로 유실될 가능성[8]은 없었으며, 소



목함지뢰 나무파편



목함지뢰 공이

8) 해당 지역은 남고 북저의 지형으로서 물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만약 유실되었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흙이나 수목 등의 부산물에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음.



목함지뢰 설치 재현 모습



출입기자단 도발현장 방문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지뢰폭발 시 TOD채증 화면

통문 전·후방에 정교하게 매설되고 위장된 것으로 보아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월 10일 합동조사단은 지뢰폭발 사건을 '북한에 의한 도발'로 규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합참은 폭발 당시 열영상 감시장비(TOD)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였다.

8월 11일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관련 장성급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장교 회담을 제의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8월 1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심리전 방송에 대해 징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합참은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자행할 경우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 평가 |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에 대한 군의 초동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하였다. 현장부대가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조치하고, 열영상 감시장비(TOD)로 2차 폭발상황을 채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높은 수준의 부대 단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위기관리TF를 운용하고 통합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와 군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은 8월 5일 이후 합참의장·연합사령관 공조회의와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 운용을 통해 한미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공동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뢰도발이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을 국제사회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군은 8월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에서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획대로 실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현시하였다.

3.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 상황 |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8월 15일 이후부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 타격으로 초토화 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우리 군은 8월 4일부터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천명하고, GOP 인근 부대는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 주요 조치 | 8월 20일 15:53분경 우리 군은 대포병레이더를 통해 북한군 122밀리 방사포가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 우리 측 임진훈련장 방향으로 향하는 탄도궤적 1발을 포착하였다.

16:12분경 재차 폭음이 있었으며, 열영상 감시장비(TOD)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포연이 관측되었다. 열영상 감시장비(TOD) 영상 판독결과 북한군이 발사한 탄에 의한 포연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포격도발을 부인하면서 남북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천명한다는 내용의 당 중앙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을 발송하면서도 48시간 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과 방송 수단의 전면 철거를 요구하였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는 최후통첩 성격의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정부는 당일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9])에서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추가도발 시 즉각 대응할 것을 재천명하였다.


장병 전역연기

8월 21일 국방부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차 없이 단호히 응징하여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8월 22일 북한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여 18:30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있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많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였고, 그들의 결의와 애국심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온 국민을 한마음으로 단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8월 25일 정부는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2015년 8월)

9) National Security Council

남북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문점

| 평가 | 우리 군은 대포병탐지레이더, 열영상 감시장비(TOD)를 통해 북한군의 포탄과 포연을 정확히 탐지하고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현장 부대는 북한군의 도발에 상응한 대응사격을 통해 우리의 대응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미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격도발 시 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 간 10회의 공조통화와 한미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를 운용하여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한미 해상·공중 무력시위 등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최근 북 도발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국가와 군의 단호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군의 동향과 군이 시행중인 대응조치를 언론에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군은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준비단계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협상지원 전략을 구상하고, 군사 분야 협상방안과 예상 의제별 대응·보충 논리를 발전시켜 북한에 대한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남북 군사협상 경험이 있는 국방부 대표가 '남북 실무대표접촉'에 참여하여 우리 주도의 「8·25 합의」 체결에도 기여하였다.

4. 의의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포격도발에 이어 '무차별 타격전', '심리전 수단 초토화', '군 입대 100만 명 탄원활동', '전시·준전시 상태 결정' 등 각종 수사적 위협과 행동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불안감을 증대시켰다.

우리 정부는 강경하면서도 일관된 입장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보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군이 일관된 지향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과 군의 대비태세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공갈협박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결국 북한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서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립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연함, 부상 장병들의 확고한 군인정신과 결연함 등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부록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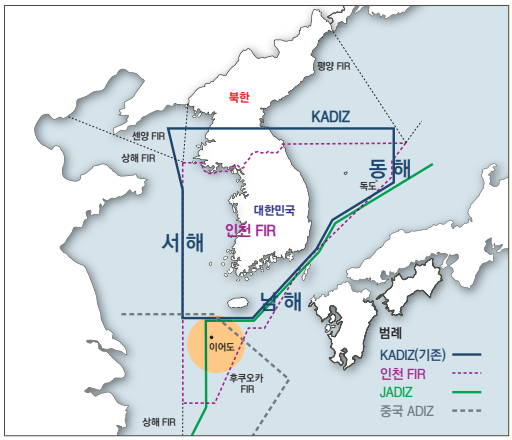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 및 조정 경과

한국방공식별구역[10](KADIZ[11])은 6·25전쟁 중 중공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한국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 설정한 구역으로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Nautical Mile)까지만 설정되어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1969년 9월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서쪽으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의 우리 비행정보구역(FIR)[12]에서 조난 사고 발생 시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색 구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마라도와 남해 홍도 남방의 우리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인천 비행정보구역(인천 FIR)과 일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한일 당사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협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노력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조정 전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인천 FIR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국익에 우선하고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2013년 11월 27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전 설명하였다. 이후 국가안보정책회의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정부안을 확정하여 12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5일 14시에 발효됨으로써 62년 만에 조정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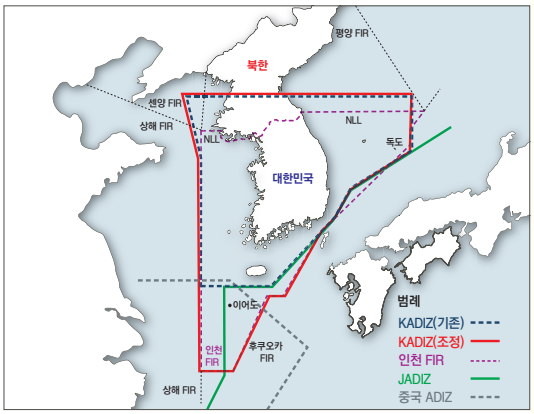
10)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약 30개 국가가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1)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1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 세계의 하늘을 분할하고 해당 국가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은 1963년 5월에 설정되었으며, 제주도 남방451km(이어도로부터 255km)까지를 포함하고 있다.(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조정 경과	
1951년 3월 22일	미국 태평양 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 설정
1969년 9월 1일	일본,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설정 (이어도 포함)
2008년 7월28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발효.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국내법적인 근거 마련
2013년 11월23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2013년 12월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발효

조정 후 한국방공식별구역



2.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의 의의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남해 홍도의 일부 영공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이 포함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조정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였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남쪽으로 확대됨으로써 제주도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보상황 변화에 국익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원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해결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이후 후속조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조정 이후 이를 유효화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내외에 유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12월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발표 이후 12월 10일 항공고시보에 게재하고, 12월 12일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록한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을 발간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조정되었음을 국내외에 알렸다.

둘째, 방공식별구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공식별구역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사작전 수행 및 주변국과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장거리 레이더 등 탐

지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데이터링크 원격 통신소를 재배치하는 등 확장된 남쪽 경계선까지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당지역에서는 항공통제기(E-737)의 운용횟수를 증가시키고, 탐색구조 훈련 등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사적 능력을 배가함으로써 확장된 구역에 대한 실효적 관리의지와 능력을 국내외에 인식시키고 있다.

넷째, 한·중·일의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4년 3월 양국 간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첩구역 진입 시 비행정보 교환방법과 중첩구역에서 미식별된 항공기에 대한 전술조치 절차에 합의하였고, 정기적인 국방협의 채널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상호 항적정보의 교환과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해·공군 간에는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등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및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역 : 북위 39°00′ 동경 123°30′ - 북위 39°00′ 동경 133°00
- 북위 37°17′ 동경 133°00′ - 북위 36°00 동경 130°30
- 북위 35°13′ 동경 129°48′ - 북위 34°43′ 동경 129°09′
- 북위 34°17′ 동경 128°52′ - 북위 32°30 동경 127°30
- 북위 32°30′ 동경 126°50′ - 북위 30°00′ 동경 125°25′
- 북위 30°00 동경 124°00 - 북위 37°00′ 동경 124°00′
- 시작점

나. 고도 : 지표 ~ 무한대

부칙 〈제2013-449호, 2013. 12. 1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5일 14시부터 시행한다.



제주 남방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공군 항공통제기(E-737)와 F-15K 전투기 편대



이어도 관할수역을 기동탐색 중인 해군 초계함과 P-3C 대잠초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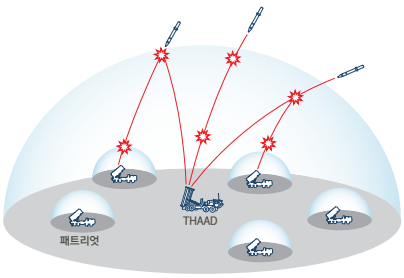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1. 사드체계란 ?

사드체계는 사거리 3천km급 이하의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40~150km 고도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이 20여 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이라면 사드는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한 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체계



패트리엇과 사드체계 방어범위 개념도

2. 사드체계 배치 및 부지결정 과정

| 사드체계 배치 결정 |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2월 2일 미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사드체계 배치 협의를 공식 건의하였고 한미는 2월 7일 공식협의 개시를 발표하였다. 3월 4일 한미공동실무단이 출범하였으며, 7월까지 선정된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과 현장실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한미 합동회의 및 각국 단독의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7월 4일 사드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배치부지 가용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7월 7일 한미안보협의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8일 한미가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사드 배치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2016년 3월)

| 부지 결정 | 7월 13일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지역을 건의하고 한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배치 지역을 발표하였다. 8월 22일 성주군이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 내 제3부지에 대한 가용성 검토를 공식요청 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은 해당지역과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지 가용성에 대해 평가하였고 9월 29일 성주 달마산(성주 CC)을 최종부지로 확정하였다.

3. 사드체계 배치 시 군사적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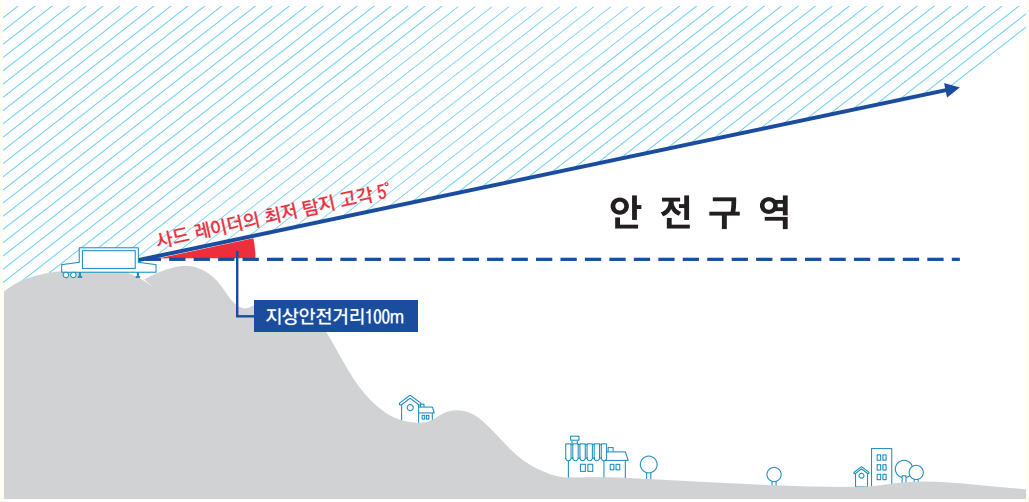
|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체계 | 사드 미사일은 2005년부터 미국에서 실시한 11차례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현존하는 미사일방어 체계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11회 중 8회가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3회가 노동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험으로 배치 목적에 맞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 북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 | 사드는 4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훨씬 더 넓은 지역(남한지역의 1/2에서 2/3 범위)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 패트리엇 증강을 통해 수도권 방어력 강화 | 특히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이며 현재 중부 이남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수도 있어 수도권 방어능력도 현재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

4. 사드 레이더 안전성

|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산 정상에 설치, 하늘 향해 빔 방사 |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지상 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의 레이더 빔은 기지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서 5도 이상의 각도 위로 방사되기 때문에 기지 밖의 주민들과 농작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밖 전자파 안전성은 여러 차례 입증 | 2013년 4월 사드체계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경우 사드 포대 앞쪽 약 2~3㎞ 지점에 세계적 관광 명소(코코팜 가드비치, 리티디안 비치)가 위치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자파 관련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괌 기지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결과 1.6㎞ 지점에서 측정된 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007%에 불과했으며, 인원통제 구역에서 측정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의 약 0.33~5.3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간의 군부대 운영에서 전자파 등의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사드체계 배치 이후에도 안전한 운영은 계속될 것이다.



사드체계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

5. 향후 추진

사드체계 배치는 성주 달마산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절차와 설계·시설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한미는 2017년 중에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하여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사드체계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들을 지키는 힘!
주한미군 사드배치

특별부록 5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의미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정하는 조약이다. 협정에는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는 경로, 교환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관의 자격, 교환된 정보의 용도, 보호 의무,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 체결 현황 |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13]을 체결하여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3개 국가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몽골을 포함한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현황(2016년 12월 기준)

체결 국가(33개 국가+1개 국제기구)		체결 추진 국가[14] (10개국)
협정(20개국)	약정(13개국+1개 기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일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북대서양조약기구(국제기구),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베트남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2. 추진 경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1989년에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계기로 양국 모두 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2011년 양국 국방부장관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내 협정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체결직전에 중단되었다.

13) 협정은 국가 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서의 조약에 해당하며, 약정은 정부기관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로서의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함(외교부 '알기쉬운 조약업무(2006. 3.)',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2007. 10.)' 참조)

14) 체결 추진 국가 중 독일·인도네시아와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국가 간 조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2016년 들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20여 발의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대응태세 보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우리 군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군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검토와 유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6년 10월 27일에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정부는 11월 1일과 11월 9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11월 14일 3차 협의에서 양국은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 11월 23일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후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되었다.

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이 협정은 양국 정부 간에 상호 제공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하며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제4조) 또한, 군사비밀을 제공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제공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제6조) 그 외에도 군사비밀을 전달할 경우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할 것(제9조), 군사비밀정보를 전달시 갖추어야 할 보안요건(제12조), 제공한 군사비밀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제17조) 등 협정 체결당사국 간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목 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비밀분류	각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 표시(한국 : 군사Ⅰ급비밀/군사Ⅱ급비밀, 일본 : 극비·특정비밀/비)
보호원칙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자격(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 공무원)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이행 등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하는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문서·매체, 장비,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 기	파기 방법 규정(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분쟁해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
개 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기간·종료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4. 협정체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북한은 핵 능력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하여[15]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분석하고 핵 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동해는 일본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16]할 수 있게 되어 북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사안별로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본과의 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다.

5. 향후 추진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15) 2016년 국방예산은 일본 5조 541억 엔(약 50조 2400만 원), 한국 38조 7,995억 원임.

16) 정부는 일본과의 정보 교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 체결된 한미/미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기반으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을 경유하여 한일 간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교류를 시행하였음.

특별부록 6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Mungyeong Korea 2015 6th CISM World Games)

1. 대회 소개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015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문경을 비롯한 포항, 김천 등 경상북도 8개 시·군[17]에서 개최되었다. 군인들의 평화의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18])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이며, '스포츠를 통한 우정(Friendship through Sport)' 이라는 정신 아래 4년 주기로 개최되는 134개국 군인들의 올림픽이다. 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에 이어 3번째로 큰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이다.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7개국, 7,045명이 24개 종목[19]에 출전하였다.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2015년 10월)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별 분산 개최에 따른 제약 요인들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본보기가 되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54명의 상이군인이 개회식에 함께 입장하고 양궁과 육상경기에 참여하였으며, 비회원국 15개 국가도 대회에 초청하여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참가국별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경기 중에는 응원을 하고 경기 막간에는 K-POP, 부채춤, 태권도 시범 등의 문화공연과 지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세계의 친한화(親韓化)와 한류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개회식 상이군인 동시 입장

2. 대회 준비

2011년 5월 제66차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2012년 1월 세계군인체육대회

17) 문경,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18)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19) 육군5종, 해군5종, 공군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 농구, 축구, 골프, 핸드볼, 배구, 양궁, 사이클, 마라톤, 근대5종, 요트, 사격, 수영, 육상, 트라이애슬론, 복싱, 유도, 태권도, 레슬링, 펜싱

조직위원회 창설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8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회 상징물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알차게! 멋지게! 일류명품으로!' 라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부합되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4년 10월 8일부터 8일 간 프레대회 개념으로 치러진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대회 개최 및 운용능력을 입증하였다.



대회 엠블럼



대회 마스코트



국무총리 현장점검(2015년 9월)

3. 성과와 의의

| 대회 결과 | 대한민국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4개 종목(일반종목 19, 군사종목 5) 에 참여하여 종합 4위로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하였다.

역대 세계군인체육대회 현황

회차	대회년도	개최국	개최지	참가국	종목	우승국
1	1995	이탈리아	로마	84	17	러시아
2	1999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80	18	러시아
3	2003	이탈리아	카타니아	81	11	중국
4	2007	인도	하이데라바드	101	15	러시아
5	201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13	20	브라질
6	2015	대한민국	경북 문경	117	24	러시아

* 역대 최다 신기록을 수립(CISM 신기록 49개, 한국 신기록 3개)하였고, 2016 리우 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162명) 하였음

무엇보다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마지막 분단국에서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대회는 약 1,09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가장 경제적인 국제 대회로 기록되었고, 인명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였으며 메르스 창궐지역 선수단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으로 청결한 대회로 치러졌다.

| 소도시에서 개최한 국제대회 | 인구 8만 명의 중소 도시인 문경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었다. 범도민 다짐대회, 통합 발대식, 경기장과 숙박시설의 통합 운영,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문경선수촌 개촌식

| 저비용·고효율의 효율적인 국제대회 모델을 제시 | 이번 대회 예산은 총 1,653억 원(국비 50%, 지방비 30%, 마케팅 수익 20%)이었으며 이는 제5회 브라질 대회 예산인 2조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다. 조직위원회는 시설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문경으로 이전한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문경 인근 경북지역 8개 도시로 개최지를 분산하여 신규시설을 전혀 짓지 않았다. 영천육군3사관학교와 괴산 학생군사학교 등을 선수촌으로 이용하고 캠핑카를 이용한 카라반을 활용하여 시설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캠핑카를 이용한 문경선수촌

| 선수단이 동참하는 개·폐회식 행사 |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의 어울림'이란 슬로건에 맞게 '보여주는 대회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대회'가 되도록 기획되었다. 우리의 전통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가락에 맞추어 군인 동작으로 고안된 '솔저댄스'를 정복을 입은 참가선수들과 관람객이 모두 함께 따라하고 각기 다른 군복을 입은 117개국의 선수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화의 울림으로 전해졌다.


개회식 '줄다리기' 행사

| 최첨단 IT 기술 활용 | 문경 인근 8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기록 계측 시스템(TNS-Time and Score) 등 IT 기술을 접목한 대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문경 인근 8개 도시 간 물리적 거리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는 매일 아침과 저녁 종합상황실에서, 경기장, 선수촌, 본부 호텔, 공항을 하나로 연결해 각 지역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대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입·출국 정보, 선수 참가 기록, 선수촌과 배차 관리 등 선수단 입국부터 출국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완벽한 대회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상황실

| 한류문화의 확산 |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 대회를 만든 데에는 서포터즈, 참가국 별 파견된 군인 인력,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크게 기여했다.

대회 처음으로 각 참가국별 100~200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예비역 장군이나 퇴직 외교관 등이 직접 단장을 맡아 각 나라 선수들에게 한국 도착에서부터 경기장 응원, 한국 문화 체험까지 머무는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번 대회에 파견된 서포터즈는 3만 3,800여 명[20], 군인 인력은 4,800여 명, 일반 자원 봉사자는 2,300여 명이었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환대에 만족함을 표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헌신으로 대회 내내 미담사례들이 이어졌다.



선수촌에서 개최된 한국문화 체험

곳곳에서 실시된 문화 행사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영천과 괴산, 문경 세 곳의 선수촌에서는 매일 저녁 K-POP, 부채춤, 태권도 공연 등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한국문화체험장과 CISM Club에서는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경북 지역을 비롯한 맞춤형 관광 체험도 선수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 지역주민 21,360명, 군 1,890명, 학생 7,900여 명, 기업 2,700여 명 등

주변국 군사력 현황

병력

단위 : 명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총병력	**1,381,250**	**798,000**	**2,333,000**	**247,150**
육군	509,450	240,000	1,600,000	151,000
해군	326,800	148,000	235,000	45,500
공군	319,950	145,000	398,000	47,100
기타	해병대 185,050 해안경비 40,000	공수 34,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151,000	로켓군 100,000	통막 3,550

육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사단/여단	10/45	4/89	23/128	9/6
전차(대)	5,884	20,200	6,540	687
보병전투차량(대)	6,559	13,900	3,950	68
정찰차(대)	1,900	2,200	650(경전차)	162
장갑차(대)	24,377	12,000	4,150	792
견인포(문)	1,242	13,165	6,140	422
자주포(문)	1,469	6,120	2,280	166
다련장포(문)	1,205	4,070	1,872	99
박격포(문)	2,483	4,130	2,586	1,103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512	SP 미상	SP 480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207	1,520	312	700
헬기(대)	4,200	1,278	760	412
항공기(대)	222	–	8	8

해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잠수함(척)		57	49	61	18
전략핵잠수함(척)		14	13	4	–
항공모함(척)		10	1	1	–
순양함(척)		22	6	–	–
구축함(척)		62	18	19	38
호위함(척)		4	10	54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7	89	199	6
소해함(척)		11	45	49	27
상륙함(척)		30	19	50	3
상륙정(척)		245	30	73	8
지원함(척)		71	625	171	28
전투기(대)		956	72	346	–
헬기(대)		720	195	111	131
해병 전력	해병사단(개)	3	여단 3	여단 2	–
	전차(대)	447	250	73	–
	정찰차량(대)	252	60	–	–
	상륙돌격장갑차(대)	1,311	1,000	–	–
	병력수송장갑차(대)	2,467	400	152	–
	야포(문)	1,506	365	40	–
	대전차미사일(기)	95	–	–	–
	UAV·ISR(대)	139	–	–	–
	항공기(대)	445	–	–	–
	헬기(대)	455	–	–	–

공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전략폭격기(대)	157	139	–	–
폭격기(대)	–	–	120	–
정찰기(대)	ISR·UAV·CISR 454	85	51	17
지휘기(대)	4	8	5	–
전투기(대)	FTR·FGR·ATK 1,890	872	1,468	348
수송기(대)	686	432	325	61
급유기(대)	461	15	11	5
조기경보기(대)	AWE&C·EW 45	18	8	17
훈련기(대)	1,128	204	950	245
헬기(대)	161	669	53	46
민간예비(대)	553	–	–	–
전자전기(대)	ELINT 33	32	13	3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년 2월), 「일본방위백서 2016」(2016년 8월)

일반부록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015년 기준

국 가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	병 력 (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대한민국	15,000	364	2.40	625	681
미 국	180,000	5,975	3.33	1,381	1,859
일 본	41,200	410	1.00	247	323
중 국	114,000	1,458	1.28	2,333	106
러시아	12,400	516	4.18	798	362
대 만	5,190	103	1.98	215	438
영 국	28,600	562	2.05	155	878
프랑스	24,200	468	1.93	209	702
독 일	33,700	367	1.09	179	454
이스라엘	2,990	186	6.22	177	2,310
이집트	3,000	64	2.13	439	72
사우디아라비아	6,320	819	12.95	227	2,949
호 주	12,400	228	1.83	57	1,001
터 키	7,220	83	1.16	511	105
말레이시아	3,130	47	1.51	109	155
태 국	3,740	54	1.44	361	79
싱가포르	2,940	97	3.29	73	1,705
캐나다	15,700	140	0.89	66	399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6년 2월) 등 관련자료 종합
* 병력은 2016년 기준

일반부록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 도	국방비(억원)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1980	2조 2,465	5.69	34.7	46.2
1981	2조 6,979	5.47	33.6	20.1
1982	3조 1,207	5.49	33.5	15.7
1983	3조 2,741	4.85	31.4	4.9
1984	3조 3,061	4.25	29.6	1.0
1985	3조 6,892	4.23	29.4	11.6
1986	4조 1,580	4.08	30.1	12.7
1987	4조 7,454	3.95	29.6	14.1
1988	5조 5,202	3.83	30.0	16.3
1989	6조 0,148	3.68	27.3	9.0
1990	6조 6,378	3.36	24.2	10.4
1991	7조 4,764	3.13	23.8	12.6
1992	8조 4,100	3.08	25.1	12.5
1993	9조 2,154	2.97	24.2	9.6
1994	10조 0,753	2.75	23.3	9.3
1995	11조 0,744	2.58	21.3	9.9
1996	12조 2,434	2.54	20.8	10.6
1997	13조 7,865	2.60	20.7	12.6
1998	13조 8,000	2.63	18.3	0.1
1999	13조 7,490	2.38	16.4	△0.4
2000	14조 4,774	2.28	16.3	5.3
2001	15조 3,884	2.24	15.5	6.3
2002	16조 3,640	2.15	14.9	6.3
2003	17조 5,148	2.16	14.8	7.0
2004	18조 9,412	2.16	15.8	8.1
2005	21조 1,026	2.29	15.6	11.4
2006	22조 5,129	2.33	15.3	6.7
2007	24조 4,972	2.35	15.7	8.8
2008	26조 6,490	2.41	14.8	8.8
2009	28조 9,803	2.52	14.2	8.7
2010	29조 5,627	2.34	14.7	2.0
2011	31조 4,031	2.36	15.0	6.2
2012	32조 9,576	2.39	14.8	5.0
2013	34조 4,970	2.41	14.3	4.7
2014	35조 7,056	2.40	14.4	3.5
2015	37조 5,550	2.41	14.3	5.2
2016	38조 8,421	2.40	13.9	3.4

* GDP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0년 기준으로 재계산, 추경예산 기준

* 2015년은 한국은행 명목 GDP 잠정치, 2016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예상치 기준

남북 군사력 현황

2016년 12월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평시)	육 군			49.0만여 명	110만여 명
	해 군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 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62.5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7
			사 단	43(해병대 포함)	82
			기동여단	15(해병대 포함)	74(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 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 포	5,7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200여 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1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6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5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9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밀리를 제외하고 산출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반부록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명목GNI(조 원)	1,490.8	1,565.8	34.2	34.5	43.7배	45.4배
1인당GNI(만 원)	2,956	3,094	139	139	21.3배	22.3배
경제성장률(%)	3.3	2.6	1.0	−1.1	–	–
무역총액(억 달러)	10,981.8	9,632.6	76.1	62.5	144.3배	154.1배
총인구(천 명)	50,424	50,617	24,662	24,779	2.0배	2.0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일반부록 6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014. 12. 1. ~ 2016. 12. 3.)

일 자	주요 내용
2015. 5. 20	•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다종화, 장거리미사일 정밀화" 등 주장
12. 10.	• 북 김정은, 핵보유국 및 수소탄 발언 –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 주장
2016. 1. 6.	• 4차 핵실험
3. 2.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 검색 의무화, 무기 금수(禁輸), 개인 및 단체 제재, 자원 수출입 금지, 금융제재
3. 8.	• 아 정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강화
3. 16.	• 미 정부,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 노동자 송출 금지, 각종 투자 금지, 각종 거래 금지, 개인 및 단체 추가 제재 등
9. 9.	• 5차 핵실험
11. 30.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 – 석탄수출 통제(4억 불/750만 톤), 교역·금융 차단, 개인·단체 제재대상 확대 등
12. 2.	• 아 정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기항 외국선박 입항조건 강화, 북한 방문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
12. 2.	• 미 정부(재무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 – 핵·미사일 관련 단체 16곳, 핵개발 의혹 인사 7명,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개발 경과(2014. 12. 1. ~ 2016.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5. 3. 2.	• SCUD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5. 8.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
2016. 1. 8.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
2. 7.	•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포동 2호, 북측 : 광명성 위성발사 주장)
3. 10.	• SCUD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3. 15.	• 재진입 기술(삭마기술) 모의시험 공개
3. 18.	• 노동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3. 25.	• 고체로켓 엔진시험 공개
4. 9.	• 동창리에서 신형 ICBM 엔진 지상분출 시험 공개
4. 15.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4. 24.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
4. 28.	• 무수단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실패)
5. 31.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6. 22.	• 무수단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1발 실패, 1발 부분 성공)
7. 19.	• SCUD 미사일 1발 및 노동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8. 3.	• 노동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8. 25.	•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공개(부분 성공)
9. 5.	• SCUD 계열 미사일 3발 동해로 발사
9. 20.	• 동창리에서 정지위성 엔진시험 공개
10. 15.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10. 20.	• 무수단 미사일 1발 동해로 발사(실패)

제원

구 분	SCUD-B	SCUD-C	SCUD-ER	노 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	300	500	1,000	1,300	3,000 이상	2,500	10,000 이상
탄두중량(㎏)	1,000	700	50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 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 발사	시험 발사

* SLBM, KN-08/14 : 개발중

일반부록 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구분	1695호 (2006. 7. 15.)	1718호 (2006. 10. 14.)	1874호 (2009. 6. 12.)	2087호 (2013. 1. 22.)	2094호 (2013. 3. 7.)	2270호 (2016. 3. 2.)	2321호 (2016. 11. 30.)
배경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 7. 5.)	北 1차 핵실험 (2006. 10. 9.)	北 2차 핵실험 (2009. 5. 25.)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 12. 12.)	北 3차 핵실험 (2013. 2. 12.)	北4차 핵실험 (2016. 1. 6.) /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 2. 7.)	北5차 핵실험 (2016. 9. 9.)
기본 입장	• 北 미사일 발사 규탄 • 미사일 모라토리움 위반에 심각한 우려	• 北 핵실험 규탄 • 비확산 및 평화·안정 위협에 우려 표명	• 北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 • 역내·외 긴장고조 우려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규탄	• 비확산과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핵실험 강력 규탄	• 北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강력규탄
WMD 활동 관련	•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중단 요구 •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움 재확인 요구	•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	•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 요구	•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 • 추가발사및 핵실험, 추가도발 중단 촉구	• 우라늄 농축 포함 핵실험·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중단 요구	• 핵·미사일 개발관련 교육훈련 금지 • WMD개발 사용가능 모든물자 차단 (Catch all)	• WMD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對中 석탄 수출 상한액·량 적용
무기 금수	• 미사일 관련 물품·기술 등이 북한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회원국에 요구	• 7대 무기류 및 WMD 관련 품목, 사치품목을 북한과 거래 금지 • 7대무기 : 전차,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 모든 무기관련 물질, 기술 등 북한과 거래 금지 • 모든 무기 수출 금지 • 소형무기 제외 모든 무기 수입 금지	• 결의위반 품목 압류 및 처분시 폐기 등 가용한 모든 처분 방법 허용	• 對北기술지원 금지, 제3국 수출입 중개 서비스에도 적용 • 우라늄농축 관련물자 금수	• 불법물품적재추정시 입항·영공통과 금지 • 소형·재래식무기 포함 北무기 수출·입 금지 • 무기생산 가능물품 거래불허	• 핵·WMD관련 연구·개발 분야 기술협력 금지 • 재래식무기 관련 이중용도품목 이전금지
화물 검색	-	• 금지품목을 적재한 북한 화물 검색	• 북한 향발 모든 화물을 검색	• 선박 검색 거부시 상황안내서 발간 지시	• 북한대리 개인·단체에 의해 중개·촉진된 모든 화물 검색 결정 • 검색불응 선박 입항 금지 및 제재위 보고 의무화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 광물, 항공유 등도 포함 • 북한에 항공기·선박 및 승무원 제공 금지	• 對北제재위에 의심 선박 입항금지, 자산 동결 등 권한부여
금융 제재	• 북한WMD관련 재정적 자원 이전을 금지하고, 관련행위 감시 요구	•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에 금융제재	• 모든 WMD 관련 금융제재 및 대북지원 금지	• 불법금융모니터링 • 제재대상의 대량현금 유통 등을 감시·통제	• 北은행의 지점설치 금지, 북한에 금융지점 설치 금지 • 공적 금융지원 금지 강화	• 핵·미사일 개발 연루 北 정부·노동당 자산 동결 • 北관련 공적·사적 금융 거래 금지 (은행지점폐쇄)	• 北외교관 금융계좌 數 제한 • 북한內 제3국 금융기관 전면폐쇄 및 對北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의미	• 유엔 차원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 권고적 성격	• 실질적인 대북제재 이행 의무화	• 대북제재 이행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북제재 대상 및 품목 확대, trigger 조항포함 • 추가발사·핵실험시 중대조치 예고	• 통치기반을 약화 가능 제재 마련, 제재이행 대상·범위 확대 • 사치품, 외교관면책특권 등	• 對北제재 결의에 '북한 인권' 문제 최초 거론	• 기존 결의안의 예외사항이던 석탄 등 民生 목적의 교역 범위 축소를 통해 허점 (루프홀) 감소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4. 12. 1. ~ 2016. 12. 3.)

북 측	일 자	남 측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보도, '애기봉 등탑 점등식' 관련 비난	2014. 12. 21.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소니 해킹' 부인	12. 27.	
	12. 29.	정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 남북대화 공식 제의 * 2015년 1월 중 서울이나 평양, 기타 편리한 장소
김정은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기존 주장 반복	2015. 1. 1.	통일부 성명,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의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람"
국방위 대변인 담화,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 요구	1. 7.	
조중통 보도, '연합훈련 임시 중단시 핵실험 임시 중단' 발표	1. 10.	
	1. 12.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남북대화 촉구 *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1. 13.	한미 연합해상훈련(~14. 동해)
유엔주재 차석대사,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시 선결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1. 14.	
	1. 19.	통일·외교·안보부처 연두업무보고 * 박대통령, "北 호응할 수 있는 대화여건 마련 노력해야"
정부·정당·단체 연합 호소문,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정책 전환 촉구 * 1월 21일 청와대, 국회, 대한적십자사, 정당 앞으로 전통문 전달	1. 20.	
국방위 정책국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1. 25.	통일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관련 유감 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4발 발사	2. 6.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2. 8.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당설립 및 해방 70주년 관련 결정서 채택 *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2. 10.	
	3. 1.	박대통령, 3·1절 경축사, '남북이산가족상봉' 촉구 및 '남북철도연결' 제안
서해 남포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담화, KR/FE 연습 비난	3. 2.	KR/FE 연습 시작(~4. 24.) 국방부 입장 발표,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조평통 성명, KR/FE 연습 비난 *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3. 3.	
동해로 지대공 미사일 7발 발사	3. 12.	

북 측	일 자	남 측
	3. 17.	정부합동수사단, 한수원 원전해킹 北 소행 발표 * 北 고유 악성코드 사용, 北 IP 접속 흔적 발견 등
전선부대 공개통고, "대북전단 살포시 화력타격" 위협	3. 22.	軍 입장 발표, "도발시 단호하게 대처" 경고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천안함 재조사, 5·24 조치 해제" 주장 * '천안함 피격사건'과 '5·24 조치' 에 대한 입장 발표	3. 24.	
판문점대표부 고발장, 천안함 5주기 관련 '美 책임론' 주장	3. 25.	
서해에서 남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4. 3.	
평남 평원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4. 7.	
	5. 1.	정부, 남북 민간교류 허용 확대 발표 * 문화·역사·스포츠 분야 공동사업 추진
조중통,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김정은 방문 보도 *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 오를 것"	5. 3.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 전통문, 我 해군함정 NLL 침범 주장 및 예고없는 직접조준타격 위협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	5. 8.	2함대사 명의 對北전통문 발송 * 심각한 유감 표명 및 도발적 언행 즉각 중단 엄중히 촉구
조중통, 'SLBM 시험발사 완전 성공' 보도 * 김정은 참관下 함남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북극성-1호 시험발사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 전통문,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 발사	5. 9.	
	5. 11.	통일부 대변인, "北 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 민간교류는 장려"
서해해상 야간사격훈련 * 對南전통문을 통해 사격계획 통보(5. 13. 15:00 ~ 5. 15. 24:00)	5. 13.	2함대사, "NLL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조성" 경고 및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경고
연평도 부근 함포 및 해안포 사격훈련	5. 14.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단계, 도전하지 말라"	5. 20.	
국방위 정책국 성명,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 조중통 대변인 성명, SLBM에 대한 국제제재 움직임에 '자위권 행사' 반발	5. 24.	통일부 입장 발표, "우리가 제안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 이 과정에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
	5. 30.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아시아 안보회의), '3각 공조 강화 방안' 논의
국방위 대변인 성명, 탄저균 관련 비난 및 '반미 성전' 촉구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대화 관련 대남 비난	6. 3.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전략군 대변인 담화, 我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VIP 원색적 비난	6. 4.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 14.	

북 측	일 자	남 측
공화국 정부 성명,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 체제통일 포기,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	6. 15.	통일부 대변인 성명, "대화에 전제조건 없어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비난	6. 2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단속정 1척 서해 NLL 침범	6. 30.	전군주요지휘관회의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북한군, 중부전선 MDL 침범	7. 11.	軍, 경고사격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관계 파탄 책임 전가 VIP 비난	7. 15.	
	7. 17.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 첫 초청 전통문 발송
조평통 서기국 보도, 서울안보대화 거부 시사 * "입으로만 줴쳐대는 대화타령은 조소와 비난만 받을 뿐"	7. 19.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서해해상사격훈련 비난 및 백령도 조준사격 위협	7. 25.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경북 문경 개최)' 불참 통보	7. 31.	정부, "북한이 외국주재 대사를 활용한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며, 대화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8. 5.	이희호 여사 방북(~8. 8.) 경원선 복원공사 착공
'평양시간' 발표 * 8. 15일부터 표준시간 30분 늦추기로 결정	8. 7.	
	8. 10.	합참, '北 DMZ 지뢰도발 사건(8. 4.)'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성명' 발표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17:00)
조평통 대변인 담화, "UFG 연습 강행시 군사적 보복" 위협	8. 12.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연습 비난	8. 13.	
국방위 정책국 담화, 'DMZ 지뢰도발' 부인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 공개담화, "민간단체 전단살포 보복" 위협	8. 14.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대북심리전 방송 무차별 타격" 위협 국방위 대변인 성명, UFG 연습 비난	8. 15.	
	8. 17.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등 관련 합의서 체결
연천지역에 포격 도발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 "8. 20. 17시부터 48시간내 심리전 방송 중지·철거 최후 통첩"	8. 20.	軍, 대응사격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발령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최고사령관 명령) 외무성 성명, 지뢰도발 부인 및 포격전 비난 김양건 당비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회담 제의 전통문	8. 21.	합참 명의 답신 전통문,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 국방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겠다"
	8. 22.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8. 24. 판문점) * 南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北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비서

북 측	일 자	남 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TV 출연,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를 '北의 일방적 승리'라고 선전	8. 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합의 * △당국회담 개최 △남측 군인 부상에 유감 표명 △확성기 방송 중단 △北 준전시상태 해제 △이산가족상봉 진행 △민간교류 활성화
국방위 대변인 담화, "고위당국자 접촉시 '유감' 표명은 사과 아니다"	9. 2.	
국가우주개발국장 기자문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시사 *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높이 날아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	9. 14.	
신설 위성관제종합지휘소 CNN에 최초 공개	9. 23.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 *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10. 10.	
	10. 16.	한미 정상, '2015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
	10. 20.	남북 이산가족 상봉(1차, ~10. 22. 금강산)
어선단속정 1척 NLL 침범	10. 24.	남북 이산가족 상봉(2차, ~10. 26. 금강산)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11. 2.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4D 작전계획' 승인
서남전선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我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계획 비난	11. 22.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계획된 사격훈련 정상 진행,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5주년,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 비난	11. 24.	
	11. 26.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 12. 11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 당국회담' 개최 합의
동해에서 SLBM 발사 시험	11. 28.	
	11. 30.	국방부, "北 SLBM 발사 시험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12. 11.	제1차 남북 당국회담, 합의 없이 종료(~12. 12.) * 北,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계 주장
조중통 보도, 남북 당국회담 결렬 책임 전가 *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회담 결실 없어"	12. 12.	
조평통 대변인 담화, "南, 남북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비난	12. 15.	
	12. 18.	유엔 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 회부' 결의안 채택
김정은 신년사, 핵 관련 미언급 *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2016. 1. 1.	정부,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
4차 핵실험(10:30) 정부 성명,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 2015. 12. 15. 김정은 명령 하달, 2016. 1. 3. 최종 명령서에 서명	1. 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北 핵실험 강력 규탄

북 측	일 자	남 측
	1. 7.	정부, 1. 8.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비정상적 사태' 적용)
조중TV, SLBM 사출 시험 영상 공개	1. 8.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12:00)
	1. 10.	美 B-52 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1. 12.	정부, 개성공단 출입 '필요 최소 인력'으로 제한 * 1일 800명 수준에서 600~700명 수준으로
我 수도권 지역에 대남 전단살포 我 1사단 도라산 관측소 부근 무인기 침범	1. 13.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할 것" 軍, 무인기 침투에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대응
외무성 대변인 담화, 對美 평화협정 체결 주장 및 확성기 방송 비난	1. 15.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국제기구에 통보 * 2. 8.~ 2. 25. 매일 07시~12시	2. 2.	
	2. 3.	정부 성명, "발사계획 즉각 철회" 촉구 및 "혹독한 대가" 엄중 경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간 수정 통보 * 기존 2. 8.~2. 25.에서 2. 7.~2. 14.로 변경	2. 6.	
장거리 미사일 발사(09:30) 특별 중대보도, '광명성 4호 성공적 발사' * "앞으로도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	2. 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및 정부 성명 발표 *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 국방부,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축소 발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2. 8.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2. 10.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조평통 성명, '개성공단 폐쇄' 발표 *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육로 차단, 군통신선·판문점연락채널 폐쇄, 남측 인원 추방	2. 11.	
	2. 13.	한미연합 잠수함훈련(~2. 15. 동해)
	2. 15.	경찰청장, 청와대 사칭 e메일(1. 13.~14.) 北 소행 발표 * 2014년 한수원 해킹때와 동일 계정 확인
	2. 17.	美 F-22 랩터 4대 오산기지 전개
조중통 논평, 사드배치 관련 비난 * "주변나라들의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것"	2. 19.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청와대·미본토 타격' 위협 *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통치기관, 2차 타격대상은 아태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본토"	2. 23.	
	2. 24.	합참 입장 발표, 도발적 행태 즉각 중단 촉구 *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할 것"
	3. 2.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6발 발사 * 김정은,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 강조	3. 3.	

북 측	일 자	남 측
정부 대변인 성명·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비난	3. 4.	
외무성 대변인 담화, KR/FE 연습 비난 *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	3. 6.	
국방위 성명, KR/FE 연습 비난 *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 위협 조평통 대변인 성명, KR/FE 연습 비난 * "만단의 선제타격태세에 진입한 상태" 위협	3. 7.	KR/FE 연습 시작(~4. 30.) 국방부 입장 발표 *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 즉각 중단" 경고
	3. 8.	정부, 독자적 對北제재 발표 * 개인·단체 금융제재, 외국선박 北 기항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 금지 등 국정원, "北,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 스마트 폰 해킹" 발표
노동신문, 핵탄두와 KN-08 사진 공개 * 김정은,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 "필요한 핵물질들을 꽝꽝 생산", "이미 실전배비한 핵타격 수단들도 부단히 갱신", "주저 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 등 위협	3. 9.	국방부 입장 발표, "북한은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김정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로 준비" 지시 조평통 대변인 담화, 我 독자적 대북제재에 반발 *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 무효, 남측 모든 자산 완전 청산 등	3. 10.	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주장 절대 수용 불가"
총참모부 성명, KR/FE 관련 '쌍룡훈련' 비난 *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남조선 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 타격전술에는 우리식의 초정밀 기습타격으로 대응"	3. 12.	한미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軍 입장 발표, "도발시 북한 정권의 최고지도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 경고
	3. 13.	美 핵항모(존 스테니스호) 부산 입항
조중통,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 시험에서 성공' 보도 * 김정은,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단행" 지시	3. 15.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KR/FE 2부연습 비난 * "전인민적인 소탕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될 것" 위협	3. 16.	
	3. 17.	軍,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보도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노동미사일로 추정, 1발은 공중 폭발	3. 18.	
조중통, 상륙 및 반상륙 방어연습 보도(김정은 참관)	3. 20.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김정은 참관) * "신형 대구경방사포 실전배치를 앞두고 최종시험사격"	3. 21.	공군, 北 핵심 군사시설 정밀타격훈련
조평통 중대보도, 정밀타격훈련 관련 비난 *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 위협	3. 23.	통일부 대변인 논평, "비열하고 천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북 측	일 자	남 측
조중통, '대출력 고체 로케트 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보도 * 김정은,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댈 수 있는 탄도로케트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주장	3. 24.	박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 *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지시 합참,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 개최 * "도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히 응징할 것"
조중통,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보도 * 김정은, "악의 소굴인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위협	3. 25.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 박대통령,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
국방위검열단 대변인 담화, '서해수호의 날' 비난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최후통첩장 * "최후통첩 불응시 청와대 선제타격" 위협	3. 26.	합참 작전본부, 北 최후통첩장 관련 軍 입장 발표 * "북한의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
조중TV, '청와대·서울 주요시설 타격 훈련' 동영상 공개	3. 27.	
원산 일대에서 내륙지방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3. 29.	
GPS 교란전파 최대출력 공격	3. 31.	수도권·강원지역 GPS 위기대응 '주의' 단계 발령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 김정은,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 참관' 보도	4. 1.	국방부, GPS 공격 관련 對北 경고성명 발표
'조선의 오늘', 장사정포로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 공격 영상 방영	4. 5.	국방부 입장 발표, 北 장사정포 공격 영상 공개 관련 對北 경고 * "북한의 도발적 언동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
조중통, '신형 ICBM 대출력엔진 지상분출시험' 보도 * 김정은, "핵공격 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맞서야" 강조	4. 9.	
조중통,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야간 실탄 사격훈련 보도	4. 12.	
동해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상승단계에서 공중폭발	4. 15.	
	4. 16.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
신포 앞바다에서 SLBM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 * 김정은,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 주장	4. 23.	
	4. 24.	유엔 안보리, 北 SLBM 시험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2발 발사 * 발사 수초 후 공중폭발	4. 28.	박대통령, 이란 방문(5. 1.~3.)前 NSC 소집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래는 없을 것"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한미연합훈련 비난 *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	4. 30.	
제7차 당대회 개막(~5. 9.) * 핵 보유국 주장下 남북대화와 협상 주장	5. 6.	
	5. 8.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이 거론한 대화와 협상은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

북 측	일 자	남 측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 김정은 통일방안 관철 주장 *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책임적이며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5. 16.	
국방위 공개서한, 남북군사회담 호응 촉구	5. 20.	국방부 입장 발표, '先비핵화 조치' 촉구
선전선동부장(김기남) 담화, 남북대화 촉구 * "관계개선 의사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인민무력부 전통문, 남북군사회담 실무접촉 제의 * 5월말 또는 6월초 편리한 날짜와 장소	5. 21.	
조평통 서기국 국장 담화, 군사회담 개최 촉구 * "핵포기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 그만두고 대화에 나와라"	5. 22.	
	5. 23.	국방부 對北전통문,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 "핵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회담 제안에 매우 유감"
인민무력부 전통문, 남북군사회담 재촉구	5. 24.	
어선·단속정 각 1척 서해 NLL 침범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我 경고사격 비난 * "보복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5. 27.	軍,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軍 입장 발표, "정상적인 작전활동에 北 억지주장"
총참모부 통첩장, "경고 없이 조준타격" 위협	5. 28.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	5. 31.	
조평통 성명, 남북대화 관련 대남협박 * "정당한 제의를 거부한다면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6. 2.	
인민무력부장(박영식) 담화,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문제 논의 비난 * "우리와 맞서려는 적대세력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 기관·정당·단체 연석회의,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	6. 9.	
	6. 10.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를 위해 민정경찰 투입
조중통, 한강하구 민정경찰 투입 비난 보도 * "대결과 충돌위험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행동"	6. 20.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2발 발사 * 1발은 실패로 추정	6. 22.	
조중통, 중장거리 전략탄도탄로케트(화성-10) 시험발사 성공 보도 * 김정은,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 하여야"	6. 23.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도발을 계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
국방위 정책국 상보, NLL 관련 비난 * "NLL은 불법무법, 명분없는 유령선"	6. 25.	
남·북·해외 연석회의 개최 제의 * "8. 15. 전후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	6. 2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개최 * 국무위원회 신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등	6. 29.	
조평통 대변인 성명, 무수단미사일 성공 주장下 대북정책전환 요구	6. 30.	

북 측	일 자	남 측
정부 대변인 성명, '한반도 비핵화' 관련 비난 *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 "남 핵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 포함"	7. 6.	
	7. 8.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 1발 발사 * 공중폭발 추정	7. 9.	軍 입장 발표,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 어떠한 도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사드배치 비난 * "물리적 대응조치가 시행될 것"	7. 11.	
	7. 13.	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결정
조평통 대변인 성명, 사드배치 비난 *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핵보검을 없애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	7. 14.	
	7. 15.	국방부 입장 발표, "오만방자한 위협적 언행 즉각 중단" 경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2발은 스커드미사일, 1발은 노동미사일 추정	7. 19.	
조중통,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케트 발사훈련 보도 *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 "핵탄두 폭발조종장치 특정 시험"	7. 20.	
	7. 24.	NLL 인근에 '인공어초' 설치 * 유엔사 군정위, 사전 對北통보
해군 서해함대 보도, NLL 인근 '인공어초' 설치 관련 비난 * "서해 열점수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는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진압해 버릴 것"	7. 25.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추정) 2발 발사 * 1발은 발사 직후 폭발, 1발은 1,000여 km 비행 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낙하	8. 3.	
외무성 대변인 담화, 美전략자산 전개 관련 비난 * "핵위협과 공갈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8. 17.	
조평통 대변인 성명, UFG 연습 비난 * "조선반도의 전략적 구도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 것을 엄숙히 경고"	8. 21.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UFG 연습 비난 *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인 결전태세 견지"	8. 22.	UFG 연습 시작(~9. 1.)
조평통 대변인 담화, '8·25 합의' 관련 비난 * "8월사태의 교훈을 망각하고 도발을 걸어온다면 조국통일대전으로 역적패당을 씨종자 없이 소탕"	8. 23.	
신포 앞바다에서 SLBM 1발 발사 * 약 500km 비행, 일본 방공식별구역내 낙하	8. 24.	
판문점 경무장 경고, "판문점에서 감행되는 도발행위는 즉시적인 반격을 면치 못할 것"	8. 27.	
판문점대표부 백서, UFG 연습 비난	9. 2.	
	9. 4.	'북한인권법' 발효·시행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추정) 3발 발사 * 약 1,000km 비행, 일본 방공식별구역내 낙하	9. 5.	

북 측	일 자	남 측
5차 핵실험(09:30) 핵무기연구소 성명,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	9. 9.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정부 성명, 北 핵실험 강력 규탄 합참,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 발표
조중통, 신형 고출력 미사일엔진 지상분출시험 보도 * 김정은, "몇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9. 20.	
	9. 21.	美 전략자산(B-1B) 2대 한반도 전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我 군사적 대응조치 비난 * "우리가 발사하는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 기관들이 있는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것"	9. 22.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 "핵무력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	9. 24.	
	9. 30.	사드, 경북 성주CC에 배치 결정
	10. 1.	박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권유
노동신문 논평, 我 VIP 국군의날 기념사 비난 *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	10. 3.	
	10. 10.	한미 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10. 15.)
평안북도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실패로 추정	10. 15.	
평안북도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 실패로 추정	10. 20.	
조중통, 我 심리전 수단 타격 위협 * "우리의 면전에서 함부로 설치지 말아야한다"	10. 29.	
조중통, 김정은 특수작전대대 방문 보도 *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의 인간 추물들 제거가 기본 임무"	11. 4.	한·미·영 연합 공중훈련 '무적의 방패'(~11. 10.)
조중통, 김정은 서해 갈리도·장재도 방문 보도 *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 승인"	11. 13.	軍 입장 발표, "도발시 강력 응징할 것"
아태위 대변인 담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비난	11. 17.	
	11. 2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비난	11. 25.	
	11. 30.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안보리 결의 비난 *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	12. 1.	
조중통, 김정은 전선포병부대 집중화력타격연습 참관 보도 *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의 군사 대상물과 반동통치기관들을 타격"	12. 2.	정부, 독자적 對北제재 발표 * 개인 36명, 기관·단체 35개 금융제재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 '南, 북침 전쟁도발 가능성' 주장 * "박00 퇴진운동을 억누르며 여론을 안보문제로 돌리기위한 교활한 술책"	12. 3.	

일반부록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 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94	405	1,340	406	228	222	241	220	26	6
침 투	1,977	386	1,011	311	167	63	16	21	2	0
국지도발	1,117	19	329	95	61	159	225	199	24	6

* 2016년은 11월 30일까지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4. 12. 1. ~ 2016.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4. 12. 5.	적 단속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2. 19.	북한 철선, 동해 독도 동방 NLL 침범
2015. 4. 21.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5. 16.	적 경비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6. 11.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6. 11.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북방 NLL 침범
6. 12.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남방 NLL 침범
6. 16.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 침범
6. 23.	적 단속정,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 침범
6. 30.	적 경비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7. 2.	적 병력, 강원 철원 지역 MDL 침범
7. 11.	적 병력, 강원 철원 지역 MDL 침범
8. 4.	적 병력, 경기 파주 지역 지뢰매설 도발
8. 20.	적 병력, MDL 이남 곡사포 및 직사화기 사격
8. 22.	적 소형무인기, 화천 전방지역 MDL 침범(2회)
8. 23.	적 소형무인기, 화천 전방지역 MDL 침범
8. 24.	적 소형무인기, 화천 전방지역 MDL 침범(2회)
8. 31.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동북방 NLL 침범
9. 8.	적 단속정, 서해 소청도 동남방 NLL 침범
9. 25.	적 단속정,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10. 24.	적 단속정, 서해 연평도 동북방 NLL 침범
11. 30.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북방 NLL 침범

일 자	주요 내용
12. 14.	북한 어선,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12. 14.	적 경비정, 서해 백령도 북방 NLL 침범
2016. 1. 13.	적 소형무인기, 경기 문산 전방지역 MDL 침범
2. 8.	북한 예인선,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2. 8.	적 경비정, 서해 소청도 동남방 NLL 침범
4. 10.	북한 어선,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5. 27.	적 단속정 및 어선, 서해 연평도 서방 NLL 침범
6. 8.	북한 어선, 동해 거진 동방 NLL 침범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구 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94**	**405**	**1,340**	**406**	**228**	**222**	**241**	**220**	**26**	**6**
침투 도발	직접침투	1,759	381	990	300	38	50	0	0	0	0
	간접침투	179	0	0	0	127	13	16	21	2	0
	월북·납북자 간첩 남파	39	5	21	11	2	0	0	0	0	0
	소 계	**1,977**	**386**	**1,011**	**311**	**167**	**63**	**16**	**21**	**2**	**0**
국지 도발	접적지역 도발	507	7	300	51	45	51	42	7	4	0
	접적해역 도발	559	2	22	28	12	107	180	188	15	5
	공중 도발	51	10	7	16	4	1	3	4	5	1
	소 계	**1,117**	**19**	**329**	**95**	**61**	**159**	**225**	**199**	**24**	**6**

일반부록 1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 현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절차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 한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지휘관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KR/FE)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 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 합참 주도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협을 대비한 작전수행 절차 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 합동작전수행 및 전력운용능력 배양	• 국지도발 및 전면전 관련 작계시행훈련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수행절차 적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 침투·국지도발 대비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작전

일반부록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 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4개국

2016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인도네시아	1995. 10.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루마니아	1997. 11.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베트남	2001. 8.
네덜란드	1999. 6.	터키	1999. 11.	베네수엘라	1999. 12.	파키스탄	2006. 5.
호주	2001. 8.	방글라데시	2004. 1.	인도	2005. 9.	에콰도르	2010. 1.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노르웨이	2010. 9.
우즈베키스탄	2010. 2.	페루	2010. 6.	UAE	2010. 9.	체코	2015. 8.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프랑스	2016. 8.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 체결 현황

2016년 12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협정 (12개국)	품질보증협정 (23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네시아, 싱가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반부록 1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5년 11월 2일, 서울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 정상회담 계기 「한미 관계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국방통합협의체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5월 8일(한국 시간) 북한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관련 수중 사출 시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5메가와트 흑연감속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건설과 같은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

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이후 추가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군사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한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가상실무연습(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달성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평시 연합 참모단 운용과 전시 한미 연합사단 편성을 완료한 것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 경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레바논과 남수단 평화유지활동,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부가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공병부대의 파견과 아프리카 지역 평화유지활동 관련 레벨 2급 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유엔 활동에 참여하는 미군 장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군수 지원, 건설사업 시행과 유엔의 능력 제고를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슬람국가(ISIL) 격퇴 노력 등을 통해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상황인식, 가상실무연습(TTX)를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영자 훈련에 대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양국의 군사적 사이버공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군이 사이버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심화하고,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의 공동사이버 훈련,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10. 양 장관은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한미 군사위원회(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도전 요인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난 해 12월 한미일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정보공유약정과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

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방부·외교부, 미.국방부·국무부가 공동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카터 장관은 한민구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과 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일반부록 14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1.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6년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2015년 한·미정상회담 계기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KIDD가 MCM 및 SCM과 같은 현존 위기협조 및 결심수립 매커니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KIDD 관련약정(TOR)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3. 양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제4·5차 핵실험과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지역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4·5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여,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

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카터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후 美 전략자산의 수차례 한반도 전개, 올해 초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美측의 B-52, 지상기반요격체(GBI) 발사시설,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현 등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킬 4D 작전개념 이행지침(CPIG, Concepts and Principles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서명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 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 배치절차의 지체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THAAD, 패트리어트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9. 양 장관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고 참모협조를 강화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카터장관은 세계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2억 5천 5백만 달러의 아프간 군경 역량강화와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여 공약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ISIL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카터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공약한 것을 평가하였다. 더불어, 카터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CPWG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1.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보장 강화, 우주상황인식, 우주협력 TTX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노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위해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정례적인 양자회의를 통해 이 연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을 통해 한·미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3.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14.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부대 이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올 해 첫 번째 美 전투부대가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에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 사령부본부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해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3국이 2016년 6월에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행위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3국간 외교 및 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국 장관은 지난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DTSCG를 통해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8. 한민구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8차 SCM과 제41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을 2017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일반부록 15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1)]

2016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독일	1994. 5.	우즈베키스탄	2008. 6.	페루	2011. 12.	체코	2015. 2.
캐나다	1995. 5.	일본	2009. 4.	호주	2011. 12.	콜롬비아	2015. 3.
이스라엘	1995. 8.	스웨덴	2009. 7.	태국	2012. 3.	불가리아	2015. 5.
러시아	1996. 11.	요르단(조약)	2009. 10.	중국	2012. 7.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터키	1999. 11.	싱가포르	2009. 12.	사우디(조약)	2013. 2.	파라과이	2016. 1.
몽골	1999. 12.	리투아니아	2010. 2.	인니(조약)	2013. 10.	에티오피아	2016. 5.
쿠웨이트	2004. 11.	인도	2010. 9.	필리핀	2013. 10.	우간다	2016. 5.
브라질(조약)	2006. 3.	카자흐스탄	2010. 9.	폴란드(조약)	2013. 10.	에콰도르	2016. 7.
우크라이나	2006. 9.	베트남	2010. 10.	아제르바이잔	2013. 12.		
UAE(조약)	2006. 11.	루마니아	2010. 10.	뉴질랜드	2014. 5.		
스페인	2006. 12.	가봉	2011. 10.	카타르(조약)	2014. 11.		

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발생 등) 등

일반부록 16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16년 11월 기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UN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 10.)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유엔총회 6개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 안보 관련 의제 토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 1.)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군축·비확산 주요 이슈 3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유엔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62. 3.)	한국 (1996. 6.) 북한 (1996. 6.)	•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 무 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1개국 (1970. 3.)	한국 (1975. 4.) 북한 (1985. 12.) * 2003. 1. 탈퇴	•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68개국 (1957. 7.)	한국 (1957. 8.) 북한 (1974. 6.) * 1994. 6. 탈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협력 수행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3개국 (미발효)	한국 (1999. 9.)	•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 수중, 대기,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 핵실험 금지
미 사 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8개국 (2002. 11.)	한국 (2002. 11.)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국제 규범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탄도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 금지
생물 화학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75개국 (1975. 3.)	한국 (1987. 6.) 북한 (1987. 3.)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을 전면 금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 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2개국 (1997. 4.)	한국 (1997. 4.)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규정 *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2개국 (1997. 5.)	한국 (1997. 4.)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의 확인 및 사찰을 위한 집행 기구
재 래 식 무 기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30개국 (2013. 6.)	한국 (2013. 6.)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3개국 (1983. 12.)	한국 1,2의정서 (2001. 5.) 5의정서 (2008. 1.)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 12.)	한국 (1993. 3.)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다 자 수 출 통 제 체 제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 8.)	한국 (1995. 10.)	• 핵확산금지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물질, 장비의 수출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 1.)	한국 (1996. 10.)	• 핵물질, 장비, 기술의 수출통제체제 • NPT 회원국이 아니라도 가입 가능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2개국 (1985. 4.)	한국 (1996. 10.)	• 화학·생물무기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 4.)	한국 (2001. 3.)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 기술의 수출·이전을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1개국 (1996. 7.)	한국 (1996. 7.)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5개국 (2003. 6.)	한국 (2009. 5.)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일반부록 17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3개국 1,104명

2016년 11월 30일 기준

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29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93	보르	2013. 3.	
	개인 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1994. 11.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 7.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2009. 6.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1	아비장	2009. 7.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윤	2009. 7.	
	소 계			**647**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청해부대		302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2009. 3.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 1.	1년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2003. 12.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2001. 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트트가르트	2016. 3.	
	소 계			**311**			
국방교류 협력 활동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6	알 아인	2011. 1.	8개월
	소 계			**146**			
총 계				**1,104**			

병사 봉급 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73년	동 결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75년	동 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1981년	동 결			
1982년	4,200	3,700	3,300	3,0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1984년	동 결			
1985년	4,600	4,000	3,600	3,3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 결			
1999년	동 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2009년	동 결			
2010년	동 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 출처 : – 1983~2016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일반부록 19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복무 형태		복무 기간	기본자격	복무 분야	수요부서/ 복무기관	설치 근거
전환 복무	의무경찰	21개월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중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	각종 치안업무 보조	기동대, 의경대, 검문소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	23개월		해상치안업무 보조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의무소방원	23개월		소방업무 보조	시도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사회 복무 요원	• 사회서비스업무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행정업무지원	24개월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처분자 – 질병 등 보충역 처분자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환자구호 업무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환경 보호지원 등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역법」
예술·체육 요원	예술	34개월	– 국제대회 2위 이상 – 국내대회 1위 – 5년 이상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예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병역법」
	체육		– 올림픽 3위 이상 – 아시아게임 1위 입상	체육 분야		
산업 기능 요원	현역	34개월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공업, 광업, 게임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분야	지정업체, 방위산업업체	「병역법」
	보충역	26개월				
전문 연구 요원	현역	36개월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지정 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학문·기술연구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자연계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	「병역법」
	보충역	26개월				
공중보건의사		36개월	– 현역대상자 중 의무(법무, 수의) 분야 현역장교 미 편입자 – 의무(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중 해당분야 현역장교 미편입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농어촌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판정전담의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병무청	「병역법」
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법무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방역업무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

국방기구도

국방 조직



국 방 부

소속기관(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개별법상 조직(3)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 합동참모본부
- 육군
- 해군
- 공군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국직부대·기관(27)

(* 가나다순)

- 계룡대근무지원단
- 고등군사법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기무사령부
- 국군복지단
- 국군사이버사령부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심리전단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인쇄창
-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체육부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방대학교
- 국방부검찰단
-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근무지원단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국방부조사본부
- 국방시설본부
- 국방전비태세검열단
- 국방정보본부
- 국방정신전력원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행사 실시 • 참배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통신망, 전산장비 등의 획득·운영 • 신 정보기술의 연구, 습득, 전파 및 관리 •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 지원단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그 밖에 지뢰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 운영 • 전쟁 및 군사 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 전역예정군인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 전역예정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14. 11. 1. ~ 2016. 11. 30.)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계
47	76	59	182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제12901호(2014. 12. 30.)	국방·군사시설이전의 정의에 "단일 주둔지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통합·조정"을 포함하고 세입 대상 재산을 특별회계 재산으로 귀속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903호(2014. 12. 30.)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감항인증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2904호(2014. 12. 30.)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2905호(2014. 12. 30.)	국가가 환수금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납입고지·독촉 등에 의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제12908호(2014. 12. 30.)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으로서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2909호(2014. 12. 30.)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3214호(2015. 3. 11.)	질병·부상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공상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3242호(2015. 3. 27.)	군 관사가 부족하여 대기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입주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237호(2015. 3. 27.)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제13241호(2015. 3. 27.)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을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포함시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의 민간주택 전세 대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244호(2015. 3. 27.)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 활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그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제13239호(2015. 3. 27.)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 근거 마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제13240호(2015. 3. 27.)	비군사화가 필요한 탄약 중 화약류 및 자탄류의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폐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제13238호(2015. 3. 27.)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3352호(2015. 6. 2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3396호(2015. 7. 20.)	군인공제회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395호(2015. 7. 20.)	현행법의 단속항목에 피아식별띠를 추가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우리 군 작전상 문제점을 보완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3505호(2015. 9. 1.)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3504호(2015. 9.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 등은 허가 등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상담을 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3500호(2015. 9. 1.)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 연령 기준을 사관학교의 기준과 동일하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조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3501호(2015. 9. 1.)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502호(2015. 9. 1.)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군 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제13503호(2015. 9. 1.)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기밀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3506호(2015. 9. 1.)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해당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3507호(2015. 9. 1.)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3567호(2015. 12. 15.)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보장 관련 규정 마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3630호(2015. 12. 29.)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 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제13631호(2015. 12. 29.)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국방부장관이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려는 것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제13632호(2015. 12. 29.)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00호(2015. 12. 31.)	귀환 국군포로에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3722호(2016. 1. 6.)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의 구성방식을 개편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4호(2016. 1. 19.)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의 비행계획 제출의무 및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식별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2호(2016. 1. 19.)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자가 원활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3773호(2016. 1. 19.)	현행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기준이 합참규정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심의결과의 투명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3775호(2016. 1. 19.)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0호(2016. 1. 19.)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
6·25전쟁 중 적후방 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괄폐지 제13769호(2016. 1. 19.)	폐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6호(2016. 1. 19.)	현행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 사유에 상급 기관·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다른 기관·부대와 통합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3777호(2016. 1. 19.)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779호(2016. 1. 19.)	보상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로 연장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훈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상대상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3780호(2016. 1. 19.)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포함하여 수령의 편의를 도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4081호(2016. 3. 22.)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4180호(2016. 5. 29.)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보류자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함
군형법	일부개정 제14181호(2016. 5. 29.)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4182호(2016. 5. 29.)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4184호(2016. 5. 29.)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법 제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설치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685호(2014. 11. 4.)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5686호(2014. 11. 4.)	합동참모본부의 임무 중 군사력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을 소요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32호(2014. 11. 19.)	병영생활 전문담당관이 되려는 제대군인은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97호(2014. 12. 3.)	주거지원을 받는 국군포로가 거주를 이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변동한 경우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98호(2014. 12. 3.)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 제25822호(2014. 12. 9.)	국방전직교육원의 당연직 이사 및 수입에 필요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25823호(2014. 12. 9.)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상한을 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25824호(2014. 12. 9.)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합동참모대학의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863호(2014. 12. 22.)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외에 있는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신고대상을 외국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그 범위를 축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905호(2014. 12. 3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군무원 교수에 대한 면직 근거를 마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906호(2014. 12. 30.)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신기술을 실험하는 데 필요한 군 시설·장비의 이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 제25907호(2014. 12. 30.)	군인복지기금의 학자금대부계정에 따른 학자금 대부 업무에 국군재정관리단의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부 업무를 국군복지단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정 제25908호(2014. 12. 30.)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수중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잠수함 부대의 임무 확대 및 잠수함 전력 증강을 위하여 잠수함사령부를 설치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5948호(2014. 12. 31.)	국방보안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신설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964호(2015. 1. 6.)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44호(2015. 1. 12.)	탄약의 수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약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군견 또는 군마 등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84호(2015. 2. 3.)	해외파병 관련 교육 및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평화활동센터를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090호(2015. 2. 10.)	해외체류자 등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6102호(2015. 2. 16.)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사이버작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101호(2015. 2. 16.)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49호(2015. 3. 17.)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군인자녀에 대하여도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68호(2015. 3. 30.)	국방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비 장교후보생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95호(2015. 4. 14.)	전문연구기관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제출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그 연구과제를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194호(2015. 4. 14.)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상한을 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6193호(2015. 4. 14.)	지뢰사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절차와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289호(2015. 6. 1.)	법무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347호(2015. 6. 3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및 자료의 범위 구체화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 제26394호(2015. 7. 13.)	군인이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고충사항 해결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393호(2015. 7. 13.)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심사사항 중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26392호(2015. 7. 13.)	작전 및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엄사령부 운영처를 작전처와 정보처로 세분화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개정 제26407호(2015. 7. 20.)	5년제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3학년 재학 중에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함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490호(2015. 8. 19.)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의 병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6511호(2015. 9. 8.)	해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두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5호(2015. 9. 2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금의 지급항목을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하고, 그 항목별 지급금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의 여비에 준하여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8호(2015. 9. 2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7호(2015. 9. 22.)	전사자 등의 구분기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36호(2015. 9. 22.)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동시에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병을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포함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 제26554호(2015. 9. 25.)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교육감이 수립하여 공고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08호(2015. 10. 29.)	전상자 또는 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36호(2015. 11. 13.)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39호(2015. 11. 18.)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고시설, 축사·가축시설 등과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72호(2015. 11. 30.)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73호(2015. 11.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674호(2015. 11. 30.)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의 비중을 높이고 경력비중을 낮춰 적용함으로써 군무원의 능력위주 인사관리를 보장
야전군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734호(2015. 12. 22.)	재해 등에 있어서 병력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736호(2015. 12. 22.)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을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정함
해병사단령	일부개정 제26735호(2015. 12. 22.)	해병대의 예하부대인 해병사단의 사단장 및 부사단장을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하던 것을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함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정 제26772호(2015. 12. 3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및 공군북부전투사령부의 직할 또는 예하의 수송기·정찰기·훈련기 전력 중심의 비행부대를 통합하여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설치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공군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6773호(2015. 12. 30.)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역중심으로 설치된 공군남부전투사령부와 공군북부전투사령부를 전력의 유형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투기 전력 중심의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설치
국방정신전력원령안	제정 제26771호(2015. 12. 30.)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방정신전력원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분리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6857호(2016. 1. 6.)	공군본부의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880호(2016. 1. 12.)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에 보직해임된 준사관 및 부사관을 추가하고,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심의를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설치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26881호(2016. 1. 12.)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에 대한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캄보디아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증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02호(2016. 1. 19.)	3등급 귀환 국군포로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변경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 제26939호(2016. 2. 3.)	육군교육사령부 및 합동군사대학교 등 각각의 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행하던 출입관리 및 경호·경비 등의 근무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7호(2016. 2. 29.)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제26996호(2016. 2. 29.)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계급장의 제식(制式)에서 무궁화 표지 부분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여 장교 계급장의 무궁화 표지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개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5호(2016. 2. 29.)	군무원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4호(2016. 2. 29.)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정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93호(2016. 2. 29.)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담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060호(2016. 3. 29.)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절차와 재요양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079호(2016. 3. 3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자체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제품생산을 위한 계약의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함
6·25전쟁 중 적후방 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폐지 제27084호(2016. 4. 5.)	폐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제27083호(2016. 4. 5.)	서식 용어를 구비서류에서 첨부서류로 순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7096호(2016. 4.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117호(2016. 5.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무상 대부 또는 양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27264호(2016. 6. 28.)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제27263호(2016. 6 .28.)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군인의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등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7342호(2016. 7. 19.)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344호(2016. 7. 19.)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을 추가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중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343호(2016. 7. 19.)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27480호(2016. 9. 5.)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역자·퇴역자 및 예비역이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562호(2016. 11. 1.)	부동산, 권리 및 비소모품 동산인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의 보상기준을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면서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까지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591호(2016. 11. 2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의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618호(2016. 11. 29.)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619호(2016. 11. 29.)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0호(2014. 11. 3.)	서신 미봉함 제출 및 서신 내용 검열 대상인 군수용자를 마약류 군수용자, 조직폭력 군수용자 및 관심대상 군수용자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구체적으로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1호(2014. 11. 7.)	유해물질의 안전에 관련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규격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거쳐 해당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군수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3호(2014. 11. 10.)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력조정평가과의 소관 업무로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신전력과를 정신전력정책과로, 인력관리과를 인력정책과로 변경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35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 제836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7호(2014. 11. 19.)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 반영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8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39호(2014. 11. 19.)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
군인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 제840호(2014. 12.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이 있는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1호(2014. 12. 9.)	국방홍보원의 국방일보 인쇄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인력 2명을 감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42호(2014. 12. 10.)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국방대학교의 입학정원을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으로 나누어 규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3호(2014. 12. 12.)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 정도에 따라서 1배부터 5배까지 사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함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4호(2014. 12. 31.)	군장학생의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5호(2014. 12. 31.)	상이등급 판정 방법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등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9호(2015. 1. 6.)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관리운영직군 10명을 기술직군 등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49호(2015. 1. 6.)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관리운영직군 10명을 기술직군 등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50호(2015. 1. 19.)	불용결정 된 군수품의 대여조건을 완화하여 그 대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용결정 된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여기간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851호(2015. 1. 21.)	정신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도 근시·원시·난시에 관한 사항을 보충역 판정기준에 추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52호(2015. 2. 6.)	전력자원관리실 소속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53호(2015. 2. 2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및 해산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854호(2015. 2. 27.)	필기시험 과목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필기시험 배점을 50점에서 40점으로, 현역복무실적 관련 평가점수를 50점에서 60점으로 조정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55호(2015. 3. 5.)	의무·수의 장교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의무·수의 장교의 합격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56호(2015. 3. 26.)	방산원가 항목 중퇴직급여에 대한 원가 반영 하한액 삭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857호(2015. 4. 1.)	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군 장려금 반환 대상에 추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58호(2015. 4. 16.)	징계부가금 등에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0호(2015. 5. 26.)	국립서울현충원의 일반직공무원 복수직렬 범위에 전산 직렬 추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63호(2015. 7. 6.)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4호(2015. 7. 22.)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중 병기고를 삭제하고, 병영생활지도에 필요한 내무지도실을 추가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개정 제865호(2015. 8. 4.)	학군무관후보생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66호(2015. 8. 4.)	군종장교로서의 성품·기본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선발과정에 인성검사를 추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8호(2015. 8. 11.)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일부 조직 개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69호(2015. 9. 2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에 관한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0호(2015. 9. 25.)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872호(2015. 10. 19.)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강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3호(2015. 10. 26.)	관련 서식 정비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4호(2015. 11. 3.)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77호(2015. 12. 28.)	예비군 훈련의 보류 대상자에서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제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0호(2016. 1. 6.)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1호(2016. 2. 4.)	병영문화를 혁신하고 자질이 부족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조기 퇴출을 위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대상을,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전체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3호(2016. 2. 29.)	능력위주의 군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4호(2016. 2.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6호(2016. 3. 22.)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8호(2016. 3. 29.)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군인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에 다시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요양 승인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89호(2016. 3. 31.)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등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등 입찰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정비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90호(2016. 3. 31.)	방위사업검증계획의 수립 및 사업검증에 관한 승인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제891호(2016. 4. 1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94호(2016. 5. 25.)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나 제대 후 1년 이내인 제대군인을 조종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종준사관을 적시에 확보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893호(2016. 5. 30.)	「군인사법 시행령」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96호(2016. 6. 17.)	군장학생 반납의 면제사유에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제898호(2016. 6. 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서식 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제897호(2016. 6. 28.)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기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세부사항, 군기문란 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군인고충심사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0호(2016. 7. 20.)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서약서 서식을 정하고,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1호(2016. 7. 20.)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보고하는 시간 간격을 조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99호(2016. 7. 2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 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4호(2016. 11. 29.)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변경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5호(2016. 11. 29.)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의 평균 평정점으로 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육훈련 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성적 평정 산정 방법을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6호(2016. 11. 29.)	국방분야 국가자격 중 헬기정비사를 기체, 기관 및 전자·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심해잠수사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며, 항공장구관리사를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는 한편, 수중발파사를 신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09호(2016. 11. 30.)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기 위해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10호(2016. 11. 30.)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기 위해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 박철규	1급 성석호

위원장



김영우(67년생, 경기 포천시가평군)
3선(18·19·20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YTN 기자, (전)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제1사무부총장

본관 421호
O) 784-1364
788-2721
F) 788-3685

입법조사관

4급 김태규
4급 이현종
4급 성소미
4급 이상묵
5급 이상홍
5급 최미경

2016년 12월 8일 기준

새누리당



간사

경대수(58년생,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재선(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회관 941호
O) 784-3978
788-2009
F) 788-0110



김학용(61년생, 경기 안성시)
3선(18·19·20대)
중앙대 경제학과,
예결특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회관 427호
O) 784-3861
788-2028
F) 788-0168



백승주(61년생, 경북 구미시갑)
초선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방부차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회관 830호
O) 784-6731
788-2304
F) 788-0199



이정현(58년생, 전남 순천시)
3선(18·19·20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전)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홍보수석,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현)새누리당 대표

회관 519호
O) 784-5031
788-2586
F) 788-0133



이종명(59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9기), 육군장교(대령 전역),
(현)이종명 리더십 사관학교 대표,
(현)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회관 337호
O) 784-2175
788-2252
F) 788-0383



정진석(60년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선(16·17·18·20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사무총장, (현)새누리당 원내대표,
(현)국회운영위원장

본관 238호
O) 784-5071
788-2706
F) 788-0340

정의당



김종대(66년생, 비례대표)
초선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현)정의당 원내대변인

회관 549호
O) 784-7612
788-2381
F) 788-0212

무소속



서영교(64년생, 서울 중랑구갑)
재선(19·20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동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회관 928호
O) 784-8490
788-2427
F) 788-0227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64년생, 비례대표)
초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회관 923호
O) 784-5081
788-2754
F) 788-0147



김병기(61년생, 서울 동작구갑)
초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

회관 721호
O) 784-1323
788-2004
F) 788-0101



김진표(47년생, 경기 수원시무)
4선(17·18·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현)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회관 744호
O) 784-3808
788-2008
F) 788-0109



우상호(62년생, 서울 서대문구갑)
3선(17·19·20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 총학생회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관 413호
본관 202호
O) 784-3071
788-2514
F) 788-0261



이종걸(57년생, 경기 안양시만안구)
5선(16·17·18·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공법학과), 변호사, 대한농구협회 회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회관 504호
O) 784-2783
788-2694
F) 788-0320



진 영(50년생, 서울 용산구)
4선(17·18·19·20대)
서울대 법학과,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IPU 집행위원 및 부회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회관 622호
O) 784-4087
788-2925
F) 788-0372

국민의당



간사

김중로(50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0기), 서울대 사범대 졸,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보병 제70사단장,
동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국민의당 중앙위원회 의장, 제2정책조정위원장

회관 922호
O) 784-9161
788-2465
F) 788-0238



김동철(55년생, 광주 광산구갑)
4선(17·18·19·20대)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토위원장,
(현)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회관 613호
O) 784-3174
788-2695
F) 788-0126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4. 9. 1. ~ 2016. 11. 18.)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29회 정기회 (2014. 9. 1.~12. 9.)	2014. 10. 7.~10. 27.	• 국정감사(국방부 등 63개 기관)
	2014. 10. 10.	• 국방부 현안보고(모 사단장 여군부하 성추행 사건 수사경과)
	2014. 10. 20.	• 국방부 현안보고(북한 경비정 NLL 침범관련, MDL 상황 등)
	2014. 10. 29	• 국방부 현안보고(2015~2019국방중기계획)
	2014. 11. 12.	•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4. 11. 18.	• 병역사항 집중관리 관련 법률안 공청회 •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 관련 법률안 공청회
	2014. 11. 20.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30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2014. 12. 1.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계속)
	2014. 12. 9.	•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30회 임시국회 (2014. 12. 15.~ 2015. 1. 13.)	2014. 12. 29.	• 현안보고(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관련)
제331회 임시국회 (2015. 2. 2.~3. 3.)	2015. 2. 11.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 군용폭발물처리 제대군인 인도적 지뢰제거 활동에 관한 청원
	2015. 2. 24.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 2014년 국정감사 및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제332회 임시국회 (2015. 4. 7. ~5. 6.)	2015. 4. 2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등 3건 • 현안보고(북한상황 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 방위사업청 반부패 대책 등)
	2015. 4. 21.	•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제332회 임시국회 (2015. 4. 7.~5. 6.)	2015. 4. 22.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5. 4. 2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제333회 임시국회 (2015. 5. 11.~5. 29.)	2015. 5. 11.	• 긴급 현안보고(북한 SLBM 발사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제334회 임시국회 (2015. 6. 8.~7. 7.)	2015. 6. 1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 • 현안보고(북한 상황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최근 국방외교·협력 성과 등)
	2015. 7. 1.	•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년 국정감사 및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2015. 7. 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국방부 소관)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35회 임시국회 (2015. 7. 8.~8. 6.)	2015. 7. 13.	•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국방부 소관)
	2015. 7. 14.	• 현안보고(기무사 기밀유출 관련)
제336회 임시국회 (2015. 8. 7.~8. 31.)	2015. 8. 12.	• 현안보고(북한의 DMZ 지뢰도발,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 •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015. 8. 26.	• 현안보고(최근 북한의 DMZ 지뢰·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및 향후 조치)
제337회 정기회 (2015. 9. 1.~12. 9.)	2015. 9. 10.~10. 8.	• 국정감사(국방부 등 60개 기관)
	2015. 10. 5.	•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이순진) 인사청문회 •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이순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 10. 30.	• 현안보고(KF-X 사업관련)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5. 11. 17.	•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공청회
	2015. 11. 1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2015. 11. 25.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7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계속) • 군 급식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337회 정기회 (2015. 9. 1.~12. 9.)	2015. 11. 26.	•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제338회 임시국회 (2015. 12. 10.~ 2016. 1. 8.)	2016. 1. 7.	• 현안보고(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339회 임시국회 (2016. 1. 9.~2. 7.)	2016. 2. 7.	• 긴급 현안보고(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340회 임시국회 (2016. 2. 10.~3. 10.)	2016. 2. 15.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2016. 2. 2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
제342회 임시국회 (2016. 4. 21.~5. 20.)	2016. 5. 3.	• 현안보고(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제343회 임시국회 (2016. 6. 7.~7. 6.)	2016. 6. 29.	•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2016년 국방정책, 국방중기계획 등)
	2016. 6. 30.	• 업무보고(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현안보고(Kill Chain 및 KAMD 보고)
제343회 임시국회 폐회중	2016. 7. 11.	• 현안보고(사드(THAAD) 관련)
제344회 임시국회 폐회중	2016. 8. 8.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방위사업청 소관)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45회 임시국회 (2016. 8. 16.~8. 31.)	2016. 8. 29.	• 현안보고(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추진 경과)
제346회 정기회 (2016. 9. 1.~12. 9.)	2016. 9. 9.	• 긴급현안보고(북한 5차 핵실험 상황평가 및 대책) •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 9. 29.~10. 14.	• 국정감사(국방부 등 60개 기관)
	2016. 10. 28.	• 현안보고(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2016. 11. 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2016. 11. 14. 2016. 11. 1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ㄱ

감염병 10, 11, 33, 62, 158, 187, 188, 190, 191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166
고농축 우라늄 27
공동육아나눔터 87, 185
공세기동전 91
공세적 통합작전 41, 87, 89, 94
공수/특수작전 훈련 78
과학화 경계시스템 46
과학화 전투훈련 75
국가군사전략 14
국가비전 32, 35
국가안보목표 32
국가안보전략 14, 17, 32, 33, 35, 4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45
국군외상센터 93, 114, 187, 189, 190
국군의학연구소 190
국군포로 168, 169, 170
국무위원회 18, 23, 24
국방 목표 34
국방3.0 206
국방개혁 17, 37, 51, 86, 87, 97, 109, 110, 112, 114, 115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114
국방고등기술원 101
국방과학연구소 93, 101, 102
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 51
국방규격관리체계
국방규제개선 201, 202
국방기술거래장터 103
국방동원정보체계 50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6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94
국방비 95, 96, 101, 109, 110, 111
국방비전 34, 35, 36, 118, 135
국방사이버안보전략서 66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131
국방실험사업 118
국방연구개발 37, 86, 99, 101, 102, 103, 112
국방예산 12, 98, 99, 109, 101, 102, 109, 111, 115, 116
국방우주력 63
국방우주협력 63, 130
국방운영 4대 중점 36
국방인권모니터단 177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114
국방전직교육원 192
국방정보화기본계획 118
국방정보화표준 120
국방정신전력원 82
국방정책 34, 35, 36, 98
국방중기계획 98, 99, 111, 112, 113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 74
국방헬프콜센터 177
국정기조 32, 33, 35
국제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 11
국제군수협력 126
국제연합 15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158
국제평화유지활동 12, 15, 37, 130, 138, 139, 142, 146, 150, 158, 159, 160, 161
국제평화활동센터 159, 160, 161
국제해양방위산업전 104
국지도발 대비훈련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4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187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 177
군 책임운영기관 87, 115
군비통제검증단 167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36, 139, 142
군사시설 보호구역 203, 204
군수통합정보체계 121, 124
군수혁신 121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104
군인복지 기본계획 179
군인상호간 폭행·협박 처벌 특례 177
군인연금 193, 194
군인연금법 191, 194
권역화 동원지정제도 50
근접항공지원 43, 78
글로벌 재난경보·조정 시스템 11
글로벌보건안보구상 11
기동군단 89
기뢰작전 42

ㄴ

나라사랑 카드 180
나진·하산 프로젝트 22
남북 공동 유해 발굴 168, 170
남북 군 통신선 165, 169
남북 불가침 합의서 165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165
남북고위급군사회담 164
남북기본합의서 46
남북당국회담 164, 165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통합작전 91
네트워크 중심전 119

ㄷ

다국적 연합전술훈련 78
다련장 41, 44, 46, 91, 94, 96, 97
다자간 연합훈련 77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 78
대량살상무기 11, 18, 23, 34, 56, 145, 147, 148, 14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148, 149
대량응징보복 36, 60, 61, 92
대륙간 탄도미사일 20
대북제재 결의안 11, 21, 166

찾아보기

대잠작전 42
대테러 군사동맹 11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70, 158
대함작전 42
독립국가연합 140
독수리 훈련 81
동명부대 150, 151, 152, 159
동미참훈련 199, 200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33
동북아협력대화 147
동원지정시스템 50
동원훈련 199, 200

ㅁ

마일즈 장비 50, 75, 111
메르스 10, 11, 62, 69, 70, 190, 206
모성보호제도 185
모집병 제도 198
무기거래조약 148
물류혁신 121, 122
미래사령부 88, 133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47, 148, 167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57
미일 방위협력지침 14, 15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53, 80
민·군기술협력사업 102
민간개방 기본계획 116, 117
민간조리원 113, 117, 181

ㅂ

방산수출 104, 105, 106, 127, 157
방어제공훈련 78
방위력개선비 95, 96, 111, 112
방위력개선사업 98, 99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34
방위비분담금 133, 134
방위사업 37, 98, 101, 106, 107, 108, 206
방위사업 혁신 106, 107
방위사업법 98, 99
방위사업청 98, 99, 100, 106, 107, 108
방위협력확대협정 14
배타적경제수역 21
배합작전 25
병무청 심리검사 175
병역 판정검사체계 199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98
병영문화 혁신 110, 119, 174
병영문화쉼터 87, 177, 18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93, 175
부대 정신교육 82
부사관 학군단 72
북대서양조약기구 141, 142
북방한계선 19, 20, 24, 46, 47, 77, 97, 164
불가침부속합의서 46
비무장지대 20, 25, 164, 166, 168
비상근 복무제도 50, 87
비세그라드 142, 145, 146

ㅅ

사드체계(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21, 61, 62
사이버공격 8, 10, 18, 33, 34, 48, 65, 67
사이버안보 66, 140, 142
사이버위협 10, 11, 15, 54, 65, 66, 67, 94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 15
사회적 관심자원 198
상호군수지원협정 126, 127
상호운용성 45, 60, 77, 87, 94, 119, 120
생물무기금지협약 147
생활밀착형 피복류 180
서북도서방위사령부 42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 104
서울안보대화 66, 67, 136, 141, 143, 144, 145, 146
성과기반군수지원 52, 116, 117, 121, 123
성분훈련 76
성실수행 인정제도 107, 108
세계군인체육대회 66, 137, 143
셰겐 협정 8
소요검증 제도 99
수리부속 운용혁신 122
수색 및 구조훈련 77, 137
순항훈련 77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200, 201
스톡홀름 합의 22
시설편제 관리체계 115
시차별부대전개제원 44
시험평가 98, 100, 125
신속대응부대 42, 48, 65
신속억제방안 44
신속획득제도 115
신형대국관계 8, 12
쌍룡훈련 79

ㅇ

아라우부대 156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1, 21, 144, 147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11, 66, 71, 144, 146, 160
아시아 안보회의 142, 144, 146
아시아 패러독스 12, 13, 33
아크부대 157, 159
아태 재균형 전략 8, 12
야외기동훈련 20, 80, 81
양성평등담당관 178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82
에볼라 10, 158, 190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 78
연합토지관리계획 133

연합훈련 76, 77, 78, 79, 80, 126, 130, 139, 141, 157, 165
예비군훈련 199, 201, 202, 206
예비군훈련대 51, 200
예비전력관리기구 51
오쉬노부대 154, 159
온누리부대 159
외래검진센터 190
용산기지이전계획 133
우주상황인식 63
원격진료체계 88, 114, 188
원스톱 군 물류지원체계 92
유라시아경제연합 12
유럽연합 8, 9, 141, 142
유엔 남수단 임무단 152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51
유엔군사령부(유엔사) 82, 168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49, 50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62, 63, 81, 131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9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 78
임무형 지휘 76
임무형 훈련 76, 77

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8, 18, 20, 28, 97, 114, 166
장거리 미사일 8, 11, 18, 20, 21, 22, 26, 28, 45, 86, 94, 131, 165
장거리타격폭격기 15
장병 사랑 캠페인 207
장병사랑 재능기부은행 17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68
적극적 평화주의 12, 15
적정 국방비 109, 110, 111
전략군 24, 27
전력소요검증위원회 99
전력운영비 111
전력증강 94, 95, 96, 97, 98, 112, 115
전력지원체계 120, 125, 126
전문연구기관 99, 101, 126
전문학위교육 73
전사자 유해발굴 194, 195
전사자종합정보체계 195
전술정보통신체계 96, 97, 112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51
전시작전 대비훈련 78
전시작전통제권 37, 41, 88, 13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1, 88, 132
전우사랑보험 제도 180
전투지휘훈련 75, 76, 79
전환·대체 복무 197
정부3.0 206
정비지원 혁신 122, 123
정신건강증진센터 175
정신교육 72, 74, 82, 83
정전협정 46, 150, 153, 165
정찰용 무인항공기 41, 45, 58, 91, 95, 96, 97, 112
정찰위성 45, 58, 91, 94
제공작전 43
제한보호구역 203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132
종말단계 하층방어 59
주한미군지위협정 62, 134
주한미군사령부 43, 44, 133, 134, 135
중국군 유해 송환 170, 17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53
지뢰도발 207
지상작전사령부 15, 89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53, 54
지역군단 89
지원예비군 50
지카 바이러스 10, 11
집단적 자위권 행사 12, 15

ㅊ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196
창조국방 86, 87, 207
청해부대 154, 155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8, 10, 33, 34, 36, 37, 65, 158
총수명주기체계관리 121, 125
충무훈련 80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198

ㅋ

칸퀘스트(Khaan Quest) 훈련 141
키리졸브 연습 81
킬체인 36, 58, 59, 60, 92, 97, 112, 114, 133

ㅌ

타우러스 58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59
태극연습 80
테러 대비태세 65
통제보호구역 203
통합방위본부 53, 54, 80
통합방위사태 49, 53, 54
통합방위지원본부 53, 54
통합방위태세 53, 54, 80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24
통합화력 격멸훈련 76

ㅍ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50
포괄적 전략동맹 130
폭력적 극단주의 9, 10, 11, 65
플루토늄 27

ㅎ

찾아보기

한·뉴질랜드 국방협력약정 139
한미 지역모의센터 81
한국형 3축체계 36, 56, 58
한국형미사일방어 59, 60, 92, 97, 112, 114, 133
한국형전투기 92, 94, 96, 97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 138
한미 국방사이버정책 실무협의회 67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63, 130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36, 56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126
한미 상호방위조약 44, 56
한미 생물방어 특별팀 63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57
한미 연합사단 131
한미 연합훈련 77, 78, 165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7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 126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합의각서 126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57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 79
한미공동대응체계 45
한미군사위원회회의 131, 132, 133
한미군수협력위원회 126
한미사이버실무협의체 131
한미안보협의회의 56, 57, 88, 126, 131, 132, 133, 195
한미통합국방협의체 13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2, 33, 35
한빛부대 150, 152, 153, 159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136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36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137
함정손상통제 훈련 78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81
합동참모본부 40, 87, 88
합참 테러 대비 종합발전계획 48
항공차단작전 43
항공차단훈련 78
해외긴급구호대 70, 71, 158
해외파병 상비부대 158
핵안보정상회의 148, 171
핵우산 56, 57
핵확산금지조약 10, 147, 167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144
향방기본훈련 199, 200
호국훈련 80
화랑훈련 80
화전양면전술 18, 19, 21
화학무기금지기구 145, 147
화학무기금지협약 147, 167
확장억제 56, 57, 132
확장억제정책위원회 57
환태평양훈련 77, 79
희망준비금 제도 180

숫자

2·29 미·북 합의 21
4D 작전개념 57, 58
5·24 조치 168
8·25 합의 20, 165, 166

A

ADEX 104, 140
ADMM-Plus 11, 66, 71, 144, 146, 160
ARF 11, 71, 144, 147
ASS 142, 144, 146
ATT 148

B

BCTP 76
BSC 81
BWC 147

C

C4I 24, 48, 54, 65
CAS 43
CCWG 67, 131
CIS 140
CMCC 57
CNAP 15
CTIIC 15
CWC 147, 167

D

DMZ 20, 164, 165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164, 165
DPKO 159
DQ마크 인증 104
DRIS 51
DSC 57

E

EDPC 57
EDSCG 57
EEZ 21
EMP 95
EU 8, 141

F

Fast-Track 67, 93, 115
FDO 44
FE 20, 80, 131
FTX 81
F-X 43, 92, 94, 96, 97

G

GDACS 11
GHSA 11

H
HEU 28
HUAV 58

I
IA/CND SOP 67
ICBM 17, 28
ICT 37, 87, 107, 206
ISIL 9, 10, 11, 14, 65

J
JAM-GC 14
JCPOA 11
JDAM 58
JSTARS 78
JTS 81
JWSC 81

K
KAMD 36, 59, 92, 133
KF-X 43, 92, 94, 96, 97
KIDD 57, 131
Kill Chain 36, 58, 92, 133
KMEP 79
KMPR 36, 60, 92
KR 20, 80, 81, 131

L
LPP 133
L-SAM 62, 59

M
Max Thunder 78
MCM 131
MDL 47
MILES 75
M-MOOC 74
M-SAM 59, 62
MTCR 147, 148, 167

N
NATO 17, 141
NCW 119
NEACD 144, 147
NLL 19, 46, 47
NPT 10, 147, 167

O
OPCW 145, 147

P
PBL 52, 116, 117, 121, 123
PCA 8
PKO 12, 15, 138, 139, 146, 159, 160
PSI 148

R
Red Flag-Alaska 78
RIMPAC 77, 79

S
SAM 26, 59, 62
SAREX 77, 137
SCM 56, 88, 131, 195
SCWG 130
SDD 67, 144
SLBM 8, 97, 166
Soaring Eagle 78
SOFA 62, 134

T
THAAD 61
TICN 96, 97, 112
TPFDD 44

U
UAV 45, 91
UFG 63, 81, 131
UNIFIL 151
UNTSO 150

W
WMD 23, 34, 36, 57, 76, 86, 94, 111, 132, 148, 149

Y
YRP 133

QR코드 찾아보기


대한민국 국군
p40


육군
p41


해군
p42


해병대
p42


공군
p43


독도
p46


중부전선 최전선
비무장지대
경계근무
p46


최전방 철책 155마일
오늘도 이상없다
p46


한민구 국방부장관
연평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p46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p57


우리들을 지키는 힘!
주한미군 사드배치
p61, p224


해병대 1사단
특별경호대
대테러사격
p66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p68


무적의 전사들(여군)
p73


육군의 화력
p75


육군 특수전사령부
고공강하 훈련
p76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p77


해군 대공·대함·
대잠 사격훈련
p77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혹한기 훈련
p77


2016 다국적
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p78


2016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p78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p79


해군·해병대
합동상륙훈련
p79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
p79


호국훈련
(남한강 도하작전)
p80


2016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에어쇼
p104


서울 ADEX 2015
p104


미 B-1B 장거리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p132


국방 교류협력
p136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p141


2016 서울안보대화
p145


해외파병
p151


청해부대
무사트 훈련
p155


아크부대
특수작전 훈련
p157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
p164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국방부 브리핑
p166


경계부대
휴일면회
p177


국군 외상센터
설립 필요성
p189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p194


Thank you! Soldiers!
(지뢰도발 부상장병 격려)
p207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대표전화 : 02)748-1111 민원안내 : 02)748-6891 Fax : 02)748-6895
www.mnd.go.kr